

신종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신종 및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권일남(명지대학교 · 교수)

주동범(한국해양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최선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법상에 제시된 유해업소의 법률적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둘째, 신종 및 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고용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대한 구조적, 내용적 특성에 따른 공통적인 유해성을 분석하며, 셋째,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적 접근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현장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장조사는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조사대상지역은 대도시(서울, 부산), 중도시(창원, 구미)의 유해업소 집중지역(중심상업지구)을 중심으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는 유해업소에 고용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 30명(여20명, 남10명)을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형태와 내용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하였다.

2) 주요내용

-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념적 분류체계 및 분류유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업소의 유해성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써 크게 3가지를 제시한다. 그 3가지는 첫째는 1차적 유해요인으로 그 특성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유해한 것, 둘째는 2차적 유해요인으로 그 특성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유해하지는 않지만 1차적인 유해요인을 쉽게 매개하거나 강화

시키는 요인, 셋째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내용으로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 분류체계>

분류체계		주요 내용	
1차적 (주요) 유해 요인	물리적 유해요인	실체가 명확한 유해요인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 물건 등	
	내용적 유해요인	실체의 내용이 유해한 요인 - 음란 비디오물, 폭력 비디오물, 선정 만화 등	
	행위적 유해요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조장시키거나 동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요인 - 음란행위, 호객행위, 성적 접대행위 등	
2차적 유해요인		청소년에게 유해업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유해요인과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유해행동을 매개 또는 강화하는 요인 - 밀실(칸막이), 심야영업,接客서비스 등)	
청소년 문제 유발 가능성	이용도	업소를 청소년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정도(경험)	
	접근성	업소의 위치가 청소년 생활환경과의 물리적 거리 (밀접도)	
	유해강도	업소의 유해성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도	
		중독성	업소의 유해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유지되 는 정도
		음란성	업소에서 영업내용이 외설적이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정도
			업소에서 폭력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정도
		정신적· 신체적 건 강침해성	업소의 활동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
반윤리성	업소의 영업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도		

위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 유형은 아래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유형”과 같다.

<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유형 >

구 분	직접유해요인 (1차적 유해요인)		간접 유해요인 (2차적 유해요인)		청소년의 문제 유발 가능성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유형 1	●		●		●	
유형 2	●		●			●
유형 3	●			●	●	
유형 4	●			●		●
유형 5		●	●		●	
유형 6		●	●			●
유형 7		●		●	●	
유형 8		●		●		●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형1은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도 높은 업종이다.
- ② 유형2는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은 낮은 업종이다.
- ③ 유형3은 1차적 유해요인은 많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적는데 비해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은 높은 업종이다.
- ④ 유형4는 1차적 유해요인은 많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적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도 낮은 업종이다.
- ⑤ 유형5는 1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많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 ⑥ 유형6은 1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많고, 청소년문제 유발성은 낮은 업종이다.

- ⑦ 유형7은 1차적 유인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청소년문제 유발가능성은 높은 업종이다.
- ⑧ 유형8은 1차적 유인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은 적고, 청소년문제 유발가능성도 적은 업종이다.

둘째, 신중 및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① 1차적 유해요인으로 위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술, 담배 등 유해물질을 제공하거나 성 접촉 또는 유사 성행위 제공, 그리고 성인매체물 접촉 및 감상 등 유해매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2차적 유해요인으로 이것은 1차적 유해요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과 1차적 유해요인을 매개하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유해요인으로 밀실(칸막이) 등 개인 및 소집단 단위 영업, 심야 또는 24시간 영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성에 의한接客서비스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해업소별 구조 및 서비스내용에 따른 유해 요인>

업소명	시설 및 설비 구조	서비스 내용
호스트바	5~30인용 밀실, 전용화장실, 특수조명(싸이키, 나이트, 서포트라이트 등)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쇼, 신체 접촉, 요구에 따라 2차 성매수 가능
나이트클럽	노래방 시설이 갖춰진 밀실, 어두운 조명 및 특수 조명, 홀상황 중계 모니터	심야영업, 술, 담배, 남녀 고객 만남 주선
티켓다방	일반적 커피숍 분위기, 은은한 조명과 음악	심야영업, 전화 예약 고객에 찾아가 차배달, 잔심부름, 2차 성매수 가능 등
대딸방	1인용 밀실, 욕실, 간이침대, 다양한 조명	심야영업, 담배, 성기기구나 신체접촉 성서비스(삽입제외)

단란주점	5~30인용 밀실, 전용화장실, 특수조명(싸이키, 나이트, 서포트라이트 등)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쇼, 신체 접촉, 요구에 따라 2차 성매매
안마시술소	1인용 밀실, 직간접 조명 목욕 및 샤워시설, 간이침대	심야영업, 담배, 안마, 성과트너 / (신중) '술상' 서비스
보도방	5~30인용 밀실, 노래방 시설, 특수조명, 음향장비 이동수단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신체 접촉, 요구에 따라 2차 성매매
일반음식점	일반적 음식점 분위기, 은은한 조명과 음악/개인 밀실(일반 가정집 방), 같은 건물에 모텔	변종의 경우 심야영업, 담배, 전화 예약 고객에 찾아가 죽 배달, 성과트너/홀서빙, 노래, 춤, 성매매
성인 전용 비디오방	1인 전용 노래방 시설, 유리 너머 또 하나의 밀실, 어두운 조명, 붉은 조명	심야영업, 담배, 성적 흥분행위를 보여주어 자위를 도움
여인숙	숙박시설, 샤워실, 어두운 조명, 간접 조명	심야영업, 술, 담배, 직접적 성행위
남 성 전 용 휴게텔	숙박시설, 샤워실, 어두운 조명, 스탠드	심야영업, 술, 담배, 흥분제, 포르노 비디오, 성서비스
비디오방 + 만화방 + 체험방	개인 밀실, 유리 칸막이 방	심야영업, 음란대화, 성인물접촉 가능, 여성 나체를 보며 자위
프리존	원룸형 밀실, 컴퓨터, DVD	심야영업, 애무 및 유사 성행위, 성인매체물 접촉 및 관람가능, 성관계 가능
대딸방 - 하드방	칸막이로 구분, 방음 대신 잔잔한 음악	심야영업, 마사지, 자위를 돕는 '핸즈 서비스', 성매매
유리방	1평 남짓한 2개의 방(유리로 구분)	심야영업, 성인영화, 성적 흥분행위를 보여주어 자위 도움, 실제 성매매
남성티켓 다방	일반 카페	심야영업, 차 배달, 심부름, 성매매
남성전용뷰티샵	룸형태, 대기실, 샤워실, 대형 거울, 아로마 향로, 간접조명	심야영업, 성관련 대화, 유사 성행위 서비스, 성행위

성인 PC 체험방	밀실, 컴퓨터	심야영업, 성관련 대화, 포르노 감상, 유사성행위(자위도움)
누드바	20~25개 테이블, 업소 중간 무대, 붉은 조명	심야영업, 스트립쇼, 유사 성행위, 요구 시 2차 성매매
멀티방	밀실, 방송, DVD	심야영업, 음란 동영상, 성행위
호래방	노래방 밀실, 조명	심야영업, 남자종업원, 술, 춤, 노래
인형체험방	3평 정도 밀실, 샤워시설,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 유사성기	심야영업, 리얼돌 이용 자위도움, 음란 동영상
플스텔	모텔형 밀실, 욕실, 게임기	심야영업, 음란 동영상, 술, 담배, 성행위
핑크살롱	부쓰타입 좌석, 어두운 카페같은 분위기	심야영업, 술, 유사성행위, 구강성교
페티시클럽	밀실, 지하철, 사무실 등 사실적 세트	심야영업, 역할극, 유사성행위, 룸살롱형태
여성전용애무방	오피스텔	심야영업, 마사지, 성매매
애인대행(스폰 등)	인터넷 교제 사이트 이용	성행위, '스폰'의 경우, 지속적 성행위
스트립방	1평 남짓 밀실, 붉은색 조명	심야영업, 자위 도움, '홀딱쇼', 성행위쇼 연출
성인폰팅업소 전화방	1평 크기 밀실, 전화기, 재택가능	심야영업, '폰섹스' 제공
비키니이발소	마사지 침대, 기구	심야영업, 구강성교, 유사성행위
여관바리업	밀실, 대형 거울, 대기실	심야영업, 성매매
여성전용증기탕	일부 가정집 내부(빌라)	심야영업, 픽업 서비스, 호스트가 성적 서비스 제공
누드카페	기존 카페 활용	심야영업, 술, 신체 접촉 및 유사 성행위, 파티 및 게임
노래연습장	노래방 밀실	심야영업, 도우미 알선, 술, 담배,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

비디오감상실	밀실, 어두운 조명	심야영업, 성행위, 성인용 비디오물 시청
사행행위영업	게임설비	도박, 사행행위 영업
유흥주점	노래방시설, 춤 위한 무대, 밀실	심야영업, 홀딱쇼, 유사 성행위, 요구시 2차 성매매
PC방	컴퓨터, 밀실	심야영업, 여성도우미의 유사 성행위, 사행행위
만화대여업	만화책, 일반 상점 구조	청소년 이용불가 만화 대여
비디오물 소극장업	어두운 조명	심야영업, 성인용 비디오물 감상, 성행위
소주방	일반 음식점 구조, 어두운 조명	심야영업, 술, 담배
이용업	밀실, 샤워시설	심야영업, 성매매 알선, 성매매
카페	칸막이 시설, 은은한 조명	심야영업, 유사 성행위, 술, 담배
호프집	일반 음식점 구조	심야영업, 술, 담배, 불건전 이성 만남 주선

셋째는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유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별 유해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분석에 따른 업소별 유해정도>

구분	업소종류	1차적 유해요인				2차적 유해요인			종합 건수
		유해 약물	유해 물건	유해 매체	유해 행위	밀실	심야 영업	접객서비스	
1	단란주점	1		1	1	1	1	1	7
2	유흥주점	1		1	1	1	1	1	6
3	비디오감상실업			1	1	1	1		4
4	노래연습장	1		1	1	1	1	1	6
5	무도학원업								-
6	무도장업								-

7	사행행위영업		1				1		2
8	음성대화(성인폰팅 업소-전화방)	1			1	1	1		4
9	화상대화	1		1	1	1			4
10	퇴폐적안마 (안마시술소)	1	1		1	1	1	1	6
11	티켓다방(남여)				1		1	1	3
12	소주방	1				1	1	1	4
13	호프	1				1	1	1	4
14	카페	1			1	1	1	1	5
15	숙박업(여인숙)			1		1	1	1	4
16	이용업	1			1	1	1	1	5
17	비디오물소극장업	1		1	1	1	1	1	6
18	만화대여업 (만화방)			1			1		2
19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PC방)	1		1	1	1	1		5
20	증기탕	1			1	1	1	1	5
21	영화상영관			1			1		2
22	프리즌			1	1	1	1	1	5
23	대딸방	1	1		1	1	1	1	6
24	유리방	1		1	1	1	1	1	6
25	남성전용뷰티샵	1			1	1	1	1	5
26	성인 PC 체험방	1		1	1	1	1	1	6
27	누드바	1			1		1	1	4
28	멀티방	1		1	1	1	1	1	6
29	호래방	1		1	1	1	1	1	6
30	인형체험방		1	1	1	1	1		5
31	플스텔	1		1	1	1	1		5
32	페티시클럽	1	1	1	1	1	1	1	7
33	핑크살롱	1			1	1	1	1	5
34	비키니이발소	1	1		1	1	1	1	6
35	여성전용 애무방	1			1	1	1	1	5
36	애인대행 알바				1		1	1	3

	(신중 보도방)								
37	스트립방	1			1	1	1		4
38	여관바리업	1		1	1	1	1	1	6
39	여성전용증기탕	1			1	1	1	1	5
40	누드카페	1			1		1	1	4
41	보도방				1		1	1	3
42	호스트바	1			1	1	1	1	5
43	나이트클럽	1			1	1	1	1	5
44	성인 전용 비디오방	1			1	1	1	1	5
45	남성전용 휴게텔	1		1	1	1	1	1	6
업소평균 유해요인 보유수준									4.6

위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별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의 보유 수준은 평균 4.6개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생활환경 주변의 유해업소의 서비스 내용이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일본사례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는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공안위원회 운영과 조직,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법, 그리고 지방중심의 청소년문제심의회의 운영과 그 내용 및 지방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3) 정책제언

● 신중·변종 유해업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류기준 마련

본 연구결과에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상의 분류기준인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행위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의 분류 기준은 변화하는 청소년 주변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위에 제시된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화를 중

심으로 유해업소의 유해등급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출입/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유해업소의 등급화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유용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제유발성 즉, 유해요인항목과 청소년문제유발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수행이 시급히 요구되며, 주관부서인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위의 분류유형과 판단기준을 통하여 신중·변종 및 청소년생활환경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심의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한다.

● 신중유해업소에 대한 제도적 체계 구축 방안

위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업소의 유해정도를 심의, 의결, 고시할 자칭 ‘유해업소 심의위원회’를 국가차원에서 운영토록 해야한다.

이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제시되듯이 민간전문가와 기관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유해업소에 대해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점검사항이 위생, 소방, 건축, 전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유해행위에 대한 심의 및 단속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위의 연구결과와 추가 연구를 청소년보호법에 중앙 및 지방의 청소년업무담당자가 청소년유해성을 판단하여 이를 단속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의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그 유해성을 판단하고 이것의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을 심의 판단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생활구역(학교정화구역, 주거지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등록 금지 및 취소 방안 마련

본 연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등급화 함으로써 청소년 생활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유

해업소의 유해수준과 유해등급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별 청소년 유해업소의 허가·등록 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제 실시

본 연구 결과 유해업소의 유해관련 영업행위나 청소년의 이용접근이 대부분 심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소주방, 호프집, 여관, PC방, 노래방등에서 심야업소의 경우 대부분 유해물질이나 유해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야간 10시이후와 12시이후부터 오전 5시 또는 6시까지 청소년통행금지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청소년은 물론 부모도 청소년보호감독 소홀에 따른 교육 및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 성인업소와 청소년(가족)이용 업소의 구분 필요

유해업소 중에서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등은 공간분할을 통하여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실질적으로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가족) 전용업소와 성인전용 업소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8
5.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13
2. 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 체계	26
3.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류 기준	35
III.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 분석	
1. 개관	55
2.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령 및 실태분석	56
3.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분석	96
4.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분석 결과	127
IV. 일본의 청소년 유해업소 정책 사례 분석	
1. 서론	135
2. 유해환경의 정의 및 개관	136
3. 일본의 유해환경(업소) 현황	149
4.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규제	178
5. 청소년 보호조례에 의한 유해물 단속	196
6. 유해환경의 규제를 위한 관련조직 등	206
7. 소결	230

V.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 1. 연구결과 237
- 2. 정책 제언245

참고문헌249

표 목 차

<표 II-1> 유해업소의 유형과 청소년출입여부	19
<표 II-2> 유해환경의 분류	27
<표 II-3> 유해환경의 유형분류	28
<표 II-4> 신문지상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유해환경 이용실태	32
<표 II-5> 유해요인 및 유해업소 분류	40
<표 II-6> 유해요인의 분류	41
<표 II-7> 유해성의 분류	41
<표 II-8> 유해요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유형	42
<표 II-9>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 분류체계(안)	49
<표 II-10> 유해성 분류체계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류 유형	50
<표 III-1> 단란주점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58
<표 III-2> 유흥주점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59
<표 III-3> 비디오감상실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0
<표 III-4> 노래연습장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1
<표 III-5> 무도학원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3
<표 III-6> 무도장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3
<표 III-7> 사행행위영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4
<표 III-8> 음성대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6
<표 III-9> 화상대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6
<표 III-10> 성인용매체물유통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7
<표 III-11> 심신발달장애우려 영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7
<표 III-12> 유흥접객행위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8
<표 III-13> 퇴폐적안마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69
<표 III-14> 성관련신체부위의 노출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70
<표 III-15> 담배판매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71
<표 III-16>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72
<표 III-17> 마약류판매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74

<표 III-18>	주류판매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79
<표 III-19>	환각물질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0
<표 III-20>	티켓다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1
<표 III-21>	소주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2
<표 III-22>	호프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2
<표 III-23>	카페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3
<표 III-24>	숙박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4
<표 III-25>	이용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5
<표 III-26>	안마실,객실구분목욕장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사항	86
<표 III-27>	비디오물소극장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8
<표 III-28>	게임제공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88
<표 III-2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91
<표 III-30>	만화대여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93
<표 III-31>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93
<표 III-32>	증기탕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95
<표 III-33>	영화상영관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96
<표 III-34>	프리존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99
<표 III-35>	대딸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00
<표 III-36>	남성티켓다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02
<표 III-37>	유리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03
<표 III-38>	남성 전용 뷰티샵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04
<표 III-39>	성인 PC 체험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06
<표 III-40>	누드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07
<표 III-41>	멀티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08
<표 III-42>	호래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09
<표 III-43>	인형 체험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10
<표 III-44>	플스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11
<표 III-45>	페티시클럽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12
<표 III-46>	핑크살롱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13
<표 III-47>	비키니이발소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14
<표 III-48>	여성전용 애무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15
<표 III-49>	에인대행 알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116

그림 목 차

[그림 II-1] 파슨스의 환경과 행위 도식	14
[그림 II-2] 유해업소 이용률(일반청소년)	30
[그림 II-3] 유해업소 이용률(위기청소년)	3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5. 용어의 정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의 세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환경 영역들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작용하는 효과 면에서 모두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정 및 학교환경은 부모나 교사들에 의해 혹은 다양한 훈육과 규칙을 통한 계획적인 통제가 가능한 생활공간인 반면, 사회적 환경은 그러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공간적 차원에서 사회적 환경은 가정 및 학교환경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요인들이 편재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가정 및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적 환경은 가정 및 학교 환경에 비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사회적 환경에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접근은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레빈은 장이론에서 청소년의 행동과 발달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환경으로는 유인가의 종류, 강도, 분포를 제시하고 있고(박명기, 2003), 사회 학습 이론에서 인간은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융통성이 있으며, 가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기초한 차별적 접촉이론에서는 비행행위는 집단적인 산물이며, 비행적 사고가 개개인의 친교집단으로부터 학습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이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 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사회 환경에 편재해 있는 청소년의 위험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일 역시 간단치 않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환경에 편재하는 청소년 관련 유해환경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 왔다.

청소년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당하고 있음을 안 때는 이를 제지 및 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의 유통,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은 2005년 현재 746,217개소로서 청소년인구 1,000명당 약 65개소에 이르고 있다(김영한, 2005. 이춘화, 2006). 특히, 오늘날 청소년 유해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매체가 추가되면서 과거 청소년 유해환경이 단순한 기능이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구성을 추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포괄적인 기능수행과 다양한 목적에 부합되는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법이나 정책만으로는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유해업소와 성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법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적 방안으로써 각종 신종 유해업소나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연구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사회에 편재된 청소년 유해환경,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현장실태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법상에 제시된 유해업소의 법률적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유해업소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유해업소의 물리적, 내용적 특성에 근거하여 진단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파생되어 있는 신종·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고용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하여 업소의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장치를 확인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종·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정책의 제도적 수단과 장치의 문제점과 제한점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연구가 다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유해업소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

청소년 유해환경 대한 개념화를 위해 이와 관련하여 사회학, 교육학 및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념화를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고용·출입금지업소를 중심으로 단위 유해업소별 법적사항과 내용적 사항을 분석한다.

둘째, 유해업소의 유해요인 현장조사를 통한 업소의 유해성 제시 및 유해업소 분류기준 제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법률적 분석, 현장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파악하고, 단위 유해업소별 물리적인 유해요인과 내용적인 유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업소의 직접적 유해요인과 간접적 유해요인에 대한 공통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류기준을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체계화한다.

셋째, 신종 및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 분석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고용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유해업소의 물리적 형태와 유해한 서비스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유해업소의 성격과 그 유해성을 제시한다.

넷째, 일본사례분석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업소와 이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일본의 유해업소와 제도적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신종·변종청소년 유해업소는 일본의 유해업소를 그대로 수입하여 재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도 일본의 경우는 일정부분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의 제도적인 대응책과 정책 수단들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류체계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회학, 교육학 및 사회심리학에 이르는 다 학문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단위유해업소별 법률적 제도적 기준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이의 관련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2) 현장조사

신종 유해업소 및 변종 청소년 이용 업소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 및 그 설치물의 배치 등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행위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창출을 위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서울, 부산), 중도시(창원, 구미)의 유해업소 집중지역(중심상업지구)을 중심으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3)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남 10명, 여 20명을 대상으로 8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으로는 유해업소의 물리적 구조 및 배치시설 분야와 업소의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4)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총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시기는 연구실행계획서, 중간성과검토시, 그리고 최종보고 전 정책대안의 구체화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종 및 변종유해업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해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업소를 직접 방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첫째는 청소년보호법 2조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과 금지업소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용어의 정의에 따라 직접적인 유해요인과 간접적인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둘째는 유해업소가 집중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역(서울, 부산, 창원, 구미)에 한해서 일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는 신문·방송 등의 미디어자료 등 간접자료로 대체하였기에 제시된 자료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5.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의를 크게 법률적 차원과 이론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는 다방, 카페, 룸싸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와 더불어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까지를 모두 포괄한다(김문조·김선업, 199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의를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말하며,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에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종·변종 유해업소를 포함한다. 즉, 본 연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란 영업장에서 1차적인 유해요인(직접적 유해요인: 유해한 물질 이용가능, 유해한 매체 활용 가능, 유해한 행위 접촉 가능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1차적 유해요인을 매개하거나 강화시키는 2차적 요인(간접적 유해요인: 심야영업, 밀실 영업, 신체를 이용한接客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업소로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정의한다.

2)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 신종 유해업소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유해업소로서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의로 볼 때 1차적(직접) 유해요인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를 매개하거나 강화하는 2차적(간접) 유해요인을 갖고 있거나 제공하고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3)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란 업소가 영업장 허가·등록시 제시된 법률적 기준에 명시된 영업내용이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위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에 비추어 1차적(직접적) 유해요인을 제공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2차적(간접적)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 업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여 현재 법령상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금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소의 업무구조, 업무기능, 서비스내용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2. 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 체계
3.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류 기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화

1) 청소년과 환경

환경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적, 비물적 요소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과 해석의 유형에 따라 그 개념이 각기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특히 환경의 유해성을 규정할 때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유해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는 그 환경을 이용하는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피해와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타인에게 극단적인 영향과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인간발달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Bloom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환경은 인간의 특성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한다. 즉 환경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그 방향과 질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인간발달과정 중에서 가장 급격한 발달을 가져오는 시기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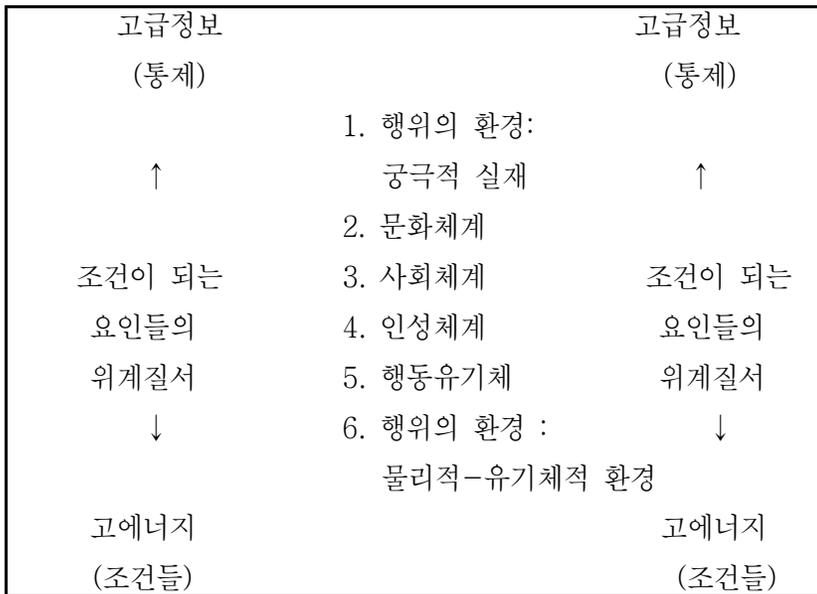
셋째,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경 중에서 인생초기의 제반 환경은 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환경은 원천적으로 개인에게 변별적으로 작용하게 되나 환경 중에서 그것이 지니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 환경에 접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환경이 작용하여 일으키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즉 환경의 작

용이 발달과정의 초기에는 보다 강력한 작용을 하지만 그 작용의 정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며 별로 작용을 하지 못한다(이상섭, 1991).

환경은 <그림 II-1>과 같이 (Georg Ritzer, Sociology Theory. McGraw-Hill. 2004) 인간신체의 비상징적인 측면들, 즉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측면을 포함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인 궁극적인 실재(ultimate reality)는 “형이상학적인 느낌”을 주지만 오히려 사회를 조직화하는 의미체계에 도전하는 인간존재의 불확실성들, 걱정거리들, 비극들을 상징적으로 다루려는 사회의 보편적인 성향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II-1> 파슨스의 환경과 행위 도식

※ 자료 : Parsons, 1937.

특히 미성숙의 존재가 성숙의 과정으로 이행되는 청소년은 끊임없이 발달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가능성을 보이는 존재이기에 환경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미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의 변화를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성은 개별행위자의 행위에서 있어서 지향과 동기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인성의 기본적인 요소는 “욕구-성향”이다. 그래서 “욕구-성향”을 “행위동기의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Parsons and Shils, 1951). 욕구성향을 타고난 성향인 “충동-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생리적 에너지로 구분하면서 충동은 생물학적 유기체의 부분으로서 잘 이해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욕구-성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행위과정의 자체를 통해 습득되는 이러한 비슷한 성향들로 규정할 수 있다(Parsons and Shils, 1951).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성향은 사회 환경에 의해 형성된 충동이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의 인성은 사회체계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고 행위자는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알맞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한편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Lewin은 장이론에서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속해 있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박재호역, 1987).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에서 Bandura는 사회 환경이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모델링, 모방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환경적 요인 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 이외에 물리적 상황 그 자체도 중요성을 갖는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을 접촉하고 이용하는 것은 유해환경이 물리적으로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불법 약물사용과 관련된 “가용성이론(availability proneness theory)”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가용성’이란 일종의 시장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약물 사용을 촉발하는 주된 결정요인으로 본다. ‘가용성’이란 약물을 구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거나 반대로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 전부를 포함한다(이명숙, 1999).

사회 환경은 청소년의 유해행위 실행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유해행위 자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신념,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하여 유해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사회환경의 영향력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그 유해성은 성장과정에 있는 개인에게 더욱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2) 유해환경의 개념

유해환경의 개념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지금까지 유해환경을 정의해온 입장들을 통해 여실히 알 수 있다.

우선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개념적 연구를 시작한 것은 점차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부터인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환경이 건전하지 못하여 도리어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 내지 침해함으로써 건전육성을 방해하는 생활환경”을 유해환경으로 정의하거나 “청소년을 교육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유인하고 강요하는 유의성을 지닌 물리적 또는 심리적 환경”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르고, 비뚤어지고, 거짓되고, 추한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환경의 총체”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권이중, 1999).

특히 환경과의 관련성이 점증하는 차원에서 환경은 인간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정신세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영향을 준 경험적 외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사정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 인간이 범 죄행위를 할 당시에 존재했던 외부적 사정을 의미하는 환경을 범인성 행위 환경이라 하고, 인격형성 및 발달과정을 통하여 주변의 외부적 조건을 뜻하는 환경을 범인성 인격환경 또는 범인성 행위자환경으로 분류하기도 하

였다(정영석, 1998).

다른 한편으로서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분류함으로써 정의되기도 하였는데 첫째,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둘째, 학교주변 향락업소 셋째, 유해 저질영상매체 넷째, 유해저질 출판물 등이 청소년 유해환경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유수현, 1989).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청소년의 인격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 환경요인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즉 영향과 반응관계의 총화로 간주하면서 “청소년의 정신적, 정서적 성장에 비교육적인 힘을 발휘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공해”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도중수, 1990).

이외에도 법리적 관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으로 정의하고 그 범주에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매스컴 등의 대중매체,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영화 및 유선방송, 불량출판물 등을 포함하기도 하였다(서울YMCA, 1990).

기본적으로 유해환경이란 상대적 의미를 함유한 개념으로서 이는 그 자체가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불건전한 행위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예컨대, 퇴폐마사지실이나 섹스샵 등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유해하다고 할 수 있으나 디스크장이나 게임센터 등은 그 자체가 유해한 환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명숙, 1997).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환경은 그 자체로 유해한 환경적 요소 이외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매체, 물건, 장소, 기회, 행위 등을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류, 흥행 등의 경우에는 ‘성적 감정 자극’ 또는 ‘청소년 범죄 유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저해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며, 완구류의 경우에는 ‘성적 감정 자극’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미치거나 청소년의 범죄를 유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불건전한 행위를 매개하는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구조적인 모든 요소로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 조건,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도미향, 2002).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관련성에 대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유해업소가 주는 유해적 요소로 인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도중수 외, 1990; 이현희, 1994; 김준호 외, 1996; 김문조 외, 2000), 이에 따라 주로 유해시설을 규제하거나 유해시설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유해환경관련 정책 또는 입법 시에는 주로 유해업소, 약물과 물건 등의 물리적 사회 환경과 방송, 영화, 만화, 잡지, 컴퓨터 등의 매체물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도미향, 2002). 그 이유는 청소년 정책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규제와 지원이라는 시각으로 양분되어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원보다는 규제적 관점에서 언급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청소년과 그러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유해한 영향의 결과’에 따라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이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김영한 등 (2005)은 유해환경에 대한 분류체계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기존의 연구들이 유해업소의 존재나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이나 접촉이라는 직접적 행위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일종의 유해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유해성의 형태가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매개영향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분류하였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표Ⅱ-1>에서와 같이 직접적 유해요인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 유해요인이 존재하는지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이러한 모든 요인을 모두 갖춘 형태의 유형으로 유해업소를 차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유해성의 요소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유진이 외, 2005).

<표 II-1> 유해업소의 유형과 청소년출입여부

구 분		직접적 유해요인 ○	직접적 유해요인 ×
유해업소 유형	간접적 유해요인 ○	유해업소 유형 1	유해업소 유형 3
	간접적 유해요인 ×	유해업소 유형 2	유해업소 ×
청소년출입 여부	간접적 유해요인 ○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유해업소 유형 1)	청소년이용가능업소 (유해업소 유형 3)
	간접적 유해요인 ×	청소년이용가능업소 (유해업소 유형 2)	청소년이용가능업소 (유해업소 ×)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 분류에 기초한 유해업소의 유형에 따라서 청소년출입가능이나 출입금지 등의 적용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업주의 교육이나 출입금지 등 대책의 방안이 다르게 제시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물리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와 청소년의 내외적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의 관계로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유해환경의 개념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다. 특히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구분이나 분류는 학자의 개인적 견해에 근거한 것들으로써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유해환경의 개념과 분류방식을 통합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유해환경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해 환경이 미성숙하고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환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유해 및 유해성의 개념화

사전적으로 ‘유해한 것’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와 정신에 해로움을 입히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유해한 것’이라는 말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사물이든 비사물이든 ‘유해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유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부른다. 다시 말하여 ‘유해 속성’은 사물 또는 비사물의 해로운 특성을 말한다. 그리고 ‘유해 속성’은 일반적으로 ‘유해성’의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유해한 것’은 그 의미상 ‘유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다시 ‘유해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유해성을 지닌 어떤 사물 또는 비사물이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유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해로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유해의 개념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어떤 형태로든 인간에게 해로움’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는 해로움, 즉 유해를 입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는 술, 담배, 마약 등과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신체와 정신 또는 심리에 직접적으로 해로움을 입힐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 등과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나 신체와 정신 또는 심리에 간접적으로 해로움을 입힐 수 있는 것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해’라는 용어는 불법, 불건전 또는 불온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지만 불법은 법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 즉 금지된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유해,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아직 인성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행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최인섭·강석구·김혜경, 2005). 이 경우 “유해”한 어떠한 것은 제작, 생성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거나 행위가 가능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유통, 제공, 행위 할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것들이다(이호용, 2002:64).

한편 ‘유해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무엇을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유해성의 유무 판단 기준, 무엇이 유해성이 높고 또는 낮고 하는 유해성의 정도 판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유해성의 유무 판단 기준이나 유해성의 정도 판단 기준 등은 의학적으로 규정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심리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유해성의 유무 판단이나 유해성의 정도 판단 등이 더욱 어려운 경우는 사회적·심리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때이다. 왜냐하면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해성의 개념은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해성에 대한 개념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수준에서의 유해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해의 개념이 어느 범주까지이고 그 개념의 상대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여부에 따라서 유해성 판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청소년의 유해성 판단의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환경의 유해성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향후에 이들에 대한 부적 영향을 억제하고 정책적 과제를 추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여 유해성의 범주와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통제대상과 규제대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환경의 영향력을 유해성의 판단준거로 활용하면서도 주로 규제정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 따라서 아무리 환경의 부적 영향력이 강하게 대두되더라도 실제로 환경의 외적 요소와 유해성의 판단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준거 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주로 규제적 차원에서의 시각이 환경의 유해성을 결정짓게 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는 그간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국가 정책적 차원의 편향된 시각도 한몫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즉,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의 구현이나 국민의 보편적 인식 속에서 문제행동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보호적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해환경도 대부분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지위에 근거하여 규제와 제한을 하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초기의 청소년정책이 문제와 보호적 개념에서 출발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청소년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담겨져 오면서 기성세대의 관념세계에 각인되었으며, 그 결과 비행 문제 요인중심으로 보려는 성향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에는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적 시각이 반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의 유해성이 청소년들의 부정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반영한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유해성의 기준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성장함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물리적 위해요소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해행위로 인한 피해까지도 유해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유해성에 대한 기준으로 보는 시각도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청소년들의 성적 흥분을 자극하거나,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거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문학적·예술적·정치적·교육적·과학적 가치를 결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본다(이명숙, 1997).

이처럼 법적 개념의 확대해석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해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심의기능이나 위원회의 시각이 유해성판단의 중요한 준거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 규정하는 유해성의 심의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서 유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 제7조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의 범

1) 청소년보호법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2005.3.24, 2006.4.28>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

위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하는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 제10조)²⁾으로는 음란성, 폭력성, 포악성, 근친상간, 저속표현, 비윤리성, 선정성, 혐오감, 사행성, 반사회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10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
- 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2. 삭제 <2001.5.24>
 3.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 2)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같다(최인섭 외, 2005:21-27 요약정리)

(1) 성적 욕구 자극하는 선정성과 음란성

음란성과 선정성은 인간존엄내지는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을 의미하며 오직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학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8. 3. 40, 95헌가 16).

그런데 음란성은 제조자나 판매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이의 해석은 당시의 문화나 사상과도 관련하여 판단해야 하는 측면에서 그 사회의 풍속이나 윤리, 종교 등과도 포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수간이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선정성과 유해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개념의 모호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정성은 음란한 자태를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매춘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등이다.

(2) 포악성이나 범죄충동성

포악적이고 범죄충동성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소식에 따라 모방범죄 등 범죄의 충동유인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범죄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나 범죄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개연성을 일컫는다.

(3) 성폭력 행사와 약물남용

청소년에게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4) 청소년에의 반사회적·비윤리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반사회성은 국가사회의 공동적 질서나 일반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윤리성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으로 존속상해·폭행·살인 등이나 사행심조장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5)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해성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위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속한 언어나 대사,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이나 조장행위, 청소년의 불건전한 교제의 조장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의 유해성의 판정기준은 주로 사회적 통념에 반하여 청소년에게 위대한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유해하다고 판정을 하였고 대부분의 유해성의 기준도 이러한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는 과거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던 단계에서는 사회적 분화가 크지 않았고 동시에 기성세대와의 가치 의식이나 사회적 통념도 차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해환경의 구분이 상당한 수준에서 명료하게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구조내에서 개인들의 활동환경이 제약을 받고 일정한 행동양식을 보여주었던 관점에서는 주로 대중매체의 유해성과 향락업소중심의 물리적 환경을 유해성의 대표적 공간으로 인식하였었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 체계

유해환경을 분류할 때에는 유해성의 판정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하나 이러한 기준은 매우 상대적 이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해환경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청소년육성국민회의, 1985:11-12 요약정리).

첫째로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행위, 물품 등 사회적 실체별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청소년유해환경은 ① 유해행위, ② 유해물품, ③ 유해시설, ④ 그 자체는 유해환경은 아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등으로 분류된다.

둘째로는 유해환경과 청소년비행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해환경이 직접 비행의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나 성인 영화, 포르노잡지 등을 통해 성적 자극을 받아 강간 및 성폭행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들 수 있으며 다른 경우는 유해환경이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청소년들이 비디오방 및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흡연 음주 등과 같이 상호 연계되면서 비행과 상관성을 갖고 비행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형태 등을 포괄하는 다소 넓은 개념으로서 유해환경을 인식하는 경우이다.

다만 유해환경을 분류할 때 그 분류기준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류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은 포괄적 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표Ⅱ-2>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II-2> 유해환경의 분류

구분	사회심리적 유해환경	사회제도적 유해환경	물리적 유해환경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불화 ○ 부적절한 양육태도 ○ 애정결핍된 부모 - 자녀관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조상의 유해환경(가족제도의 변화, 가족해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결손가정 ○ 불량주거공간 ○ 애정결핍가정 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위주 교육풍토 ○ 교사-학생간의 부정적 상호작용 ○ 학생 상호간의 부정적 상호작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제도에서 비롯된 유해환경(교육구조의 병리, 입시제도의 병리적 현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대·과밀학교 ○ 실내외 환경요소 ○ 주변의 불량환경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들의 유해행동 ○ 성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 비행성 또래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해체현상 ○ 사회문화적 가치의 상실(정치, 경제, 종교, 윤리의 상실 등) ○ 세대간의 갈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매체물(인쇄, 영상 매체) ○ 유해약물(물질) ○ 유해업소(시설, 장소)

※ 자료 : 이도영 (2000).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 등의 지지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밖으로 내모는 요소(push factor)도 청소년에게 새로이 나타나는 유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 때 가정의 경우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 내모는 요소역시 유해환경의 분류나 구분을 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유해환경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배제하고자 한다.

대체로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대부분 유인요인(pull factor)에 의한 분류체계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따라서 실제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는 시설과 매체 등과 같은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기존의 유해환경 분류를 보면 주로 물리적 조건에 맞추어서 분류한 형태가 많은데 이러한 유형은 <표 II-3>과 같다.

<표 11-3> 유해환경의 유형분류

구분	개념	종류
유해매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인쇄, 영상매체 ○ 청소년의 성적 감정, 폭력성 조장, 범죄유발 경향성이 포함된 매체 ○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유해매체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과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TV방송, 라디오, 유선방송과 간행물,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만화, 도서류, 전자출판물
유해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심신 훼손 우려 약물 ○ 정신기능장애 초래할 약물 ○ 신체발육장애를 초래할 약물 ○ 청소년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 히로뽕, 엑스터시, LSD, 야바, GHD, 마약(양귀비,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대마), 환각물질(본드, 신나, 헤어스프레이, 부탄가스)
유해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 ○ 선정적 음란물-건전 심신발달장애유발 	음란, 폭력, 잔인, 사행성 조장 완구 류, 음란한 행위조장 성기구
유해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청소년들과의 교제, 문제행동유발기회 제공업소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자료 : 김창우(2005).

이러한 유형분류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시설의 규제와 제재를 목적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개념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분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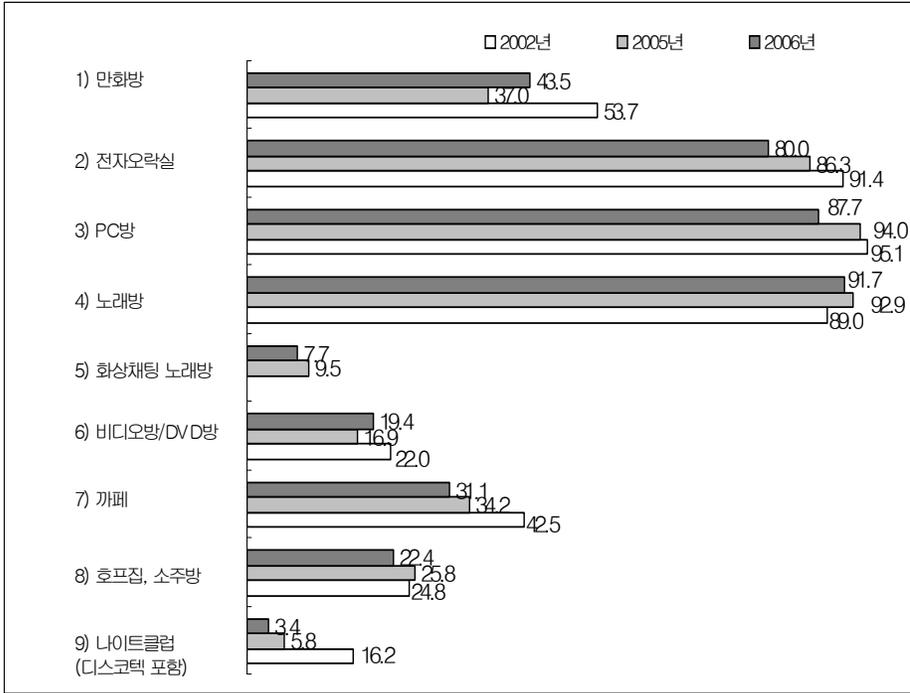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의 분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 제2조 3항의 가, 나목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품(청소년보호법 제2조 4항의 가목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된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기타 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보호법 제2조 4항의 나목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에게 음락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물건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의 가(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나(청소년고용금지업소)목에 해당하는 업소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것), 유통금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6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유포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행위), 청소년폭력금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7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피해를 받아 유해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에서 유해환경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유해환경의 특성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문제는 지금껏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더욱 퇴폐적이면서도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유해환경의 변화를 보면 지난 2000년대 이후 어떠한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곳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률은 노래방(91.7%), PC방(87.7%), 전자오락실(80.0%)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만화방(43.5%), 카페(31.1%), 호프집/소주방(22.4%), 비디오/DVD방(19.4%), 화상채팅노래방(7.7%), 나이트클럽(3.4%) 순으로 나타났는데 만화방(6.5%)과 비디오/DVD방(2.5%)은 2005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업소 이용률은 모두 감소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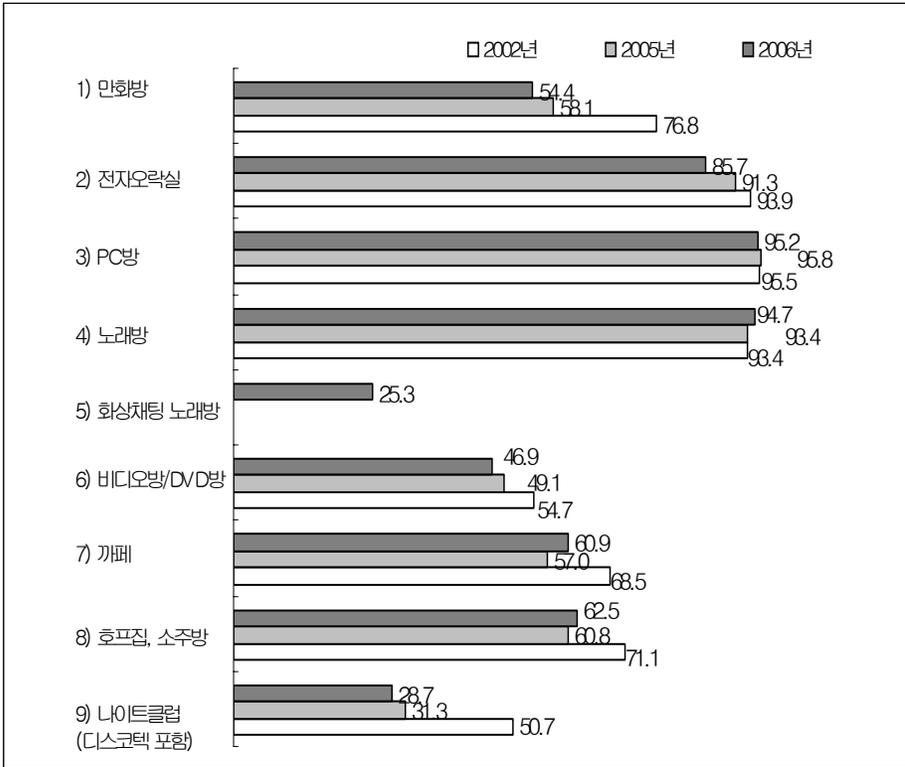
(단위: %)

<그림 11-2> 유해업소 이용률³⁾(일반청소년)

※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462.

동시에 위기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률은 PC방(95.2%), 노래방(94.7%), 전자오락실(85.7%)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호프집/소주방(62.5%), 카페(60.9%), 만화방(54.4%), 비디오/DVD방(46.9%), 나이트클럽(28.7%), 화상채팅노래방(25.3%) 순으로 나타났고 노래방(1.3%), 호프집/소주방(1.7%)은 2005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업소 이용률은 모두 감소하였다.

3) 유해업소 이용률은 유해업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임



(단위: %)

<그림 II-3> 유해업소 이용률(위기청소년)

※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463.

이러한 응답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이용추세가 과거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점차 인터넷이나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2007년까지 신문지상에서 언급되었던 청소년의 유해환경 이용과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언급한 내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이용실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 신문지상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유해환경 이용실태

신문 명	유해환경 이용형태(보도일시)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폭력 청소년망친다(2003. 2.3) ○ 스펀메일에 노출된 청소년(2003. 5.15) ○ 청소년다방취업 막을 장치를(2003. 9.21) ○ 성매매사이트에 청소년 기웃(2003. 9. 26) ○ 리니지 II 청소년이용불가 판정(2003. 10.10) ○ 죽음의 연기로부터 청소년을 구해내자(2003. 11.7) ○ 인터넷 청소년유해물 차단은 합헌(2004. 1.30) ○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청소년은 못사(2004. 2.23) ○ 게임산업발전·청소년보호, 함께 발 맞춰(2004. 6. 27) ○ 청소년에 2회 이상 성범죄자 얼굴 내년부터 공개(2004. 7. 14) ○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 효력정지(2004. 7.20) ○ 아르바이트 청소년 18%가 인권침해 경험(2004. 10.14)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착취’ 여전(2004. 11.10) ○ 청소년들 즐겨찾는 인터넷 노래방 ‘아찔’ (2005. 3.13) ○ 유해성 ‘킬러폰션’ 청소년에 못판다(2005. 5.30) ○ 청소년 짬질방 출입 저녁 10시 이후 제한(2005. 7.25) ○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왜 청소년거리에(2006. 6.20) ○ 게임 청소년 수십만 전과자 될 판..(2006. 9.13) ○ 청소년흡연은 중학교때 가장 많아((2006. 12.14) ○ 청소년 성매매 인터넷이 주무대((2007. 1.10) ○ 맥의 자녀 휴대전화는 안전합니까?(2007. 2.8) ○ 청소년 14% 인터넷중독 치료상담 필요(2007. 2.14) ○ 음란 동영상 UCC 누구나 손쉽게(2007. 3.19) ○ 인터넷 바다에 빠진 아이들...메신저 대화명까지 테크(2007. 3.25)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폭탄사이트 청소년 앓아간다(2001. 2.8) ○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대책 시급...청소년모방범죄 부추겨((2001. 3.7) ○ 게임장-노래방 복합운영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2001. 8.21) ○ 후불식 전화결제 청소년남용막는다((2002. 7.2) ○ 청소년에 담배파는 곳 아직도 많아..(2004.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매년 10만명 집나와 방황(2004. 5.12) ○ 심야노래방 청소년 출입제한 안 지켜(2004. 12.8) ○ 온라인 유통영상물 사전등급제 시행(2005. 6.14) ○ 본드풍선 청소년대상 판매금지(2005. 6.30) ○ 성인용품판매사이트 35% 청소년 접근무방비(2005.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생 10명중 남9-여8 '음란물 본적 있다' ○ 은둔형 외톨이 위험 고교생 4만 3천명 선 ○ 술·담배 문지마 판매 여전 ○ 요즘 TV '술피요...음주장면 노출 심각' ○ 성경험 여고생 26.9% 낙태 ○ 청소년10명중 1명 휴대전화 중독 ○ 자살카페 동해 청소년에 독극물 판매 ○ 청소년성매매 95.8% 인터넷 이용 ○ 청소년 절반 인터넷과 TV 시청으로 여가보내 ○ 청소년고용업체 69% 근로조건 위반 ○ 미성년자 성매매시킨 다방업주 검거 ○ 노래방은 남녀 청소년을 업주가 부킹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서 유해업소들은 새롭고 더욱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청소년들이 이용한 유해환경을 보면 앞으로는 점차 온라인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적 환경 분류체계에 더 탄력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요소는 개인적 측면의 성향이 강한 것과 집단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도 직접적 유해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한(2005)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출입관리체계를 구분하면서 청소년에게 직접 유해한 경향이 존재하면 청소년출입금지업소(성인PC방/

비디오/DVD방, 여관, 술집 등)로 규정하였고 약간의 유해성향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유해성이 클 경우는 이를 청소년이용가능업소(슈퍼/마트/편의점, PC방, 오락실, 카페/식당, 찜질방, 노래방, 당구장 등)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규정은 청소년에게 이용되는 시설의 유해성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잠재적 유해성까지도 존재하느냐에 따라 분류에 대한 초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환경의 유해성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법적 측면에서 제시되는 유해성 판단준거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할 때 잠재적 성향과 직접적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때론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해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와 시설로 판정하고 있는 유해매체 및 시설이 다른 형태로 변종되었거나 유해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신중유해환경으로 판정할 필요가 대두된다.

3.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류기준

1)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퇴폐·향락 산업의 번창은 무책임한 영업행위와 부도덕한 상업주의를 만연시켰고, 업주들은 학생들에게 비행장소를 제공하거나 묵인하는 범죄문화의 온실 역할을 하고 있다. 향락산업의 번창과 성인문화의 노출은 학생들을 자극하고 있으며, 불량만화·비디오방, 오락실, 유흥·숙박업소 등이 학교주변까지 침범하여 민감한 학생들을 쉽게 유혹하고 있다.

유진이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를 크게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 ‘법적 접근’과 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4) 삭제 <2004·1·29>
-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한편, 기능적 접근은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해성에 근거하여 유해업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문조·김선업(1992)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는 다방, 카페, 룬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

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를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기능적 접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또한 업소 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김준호·박정선(1995)은 유해업소를 크게 오락성 업소와 성인용 업소로 나누고, 각각을 5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오락성 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오락실(성인 오락실,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가게(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 등의 다섯 유형의 업소이다. 이에 비해 성인용 업소에 포함되는 업소들은 술집(스탠드바, 룸살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 등), 포장마차, 디스코장(디스코 나이트클럽, 락 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숙박업소(여관, 여인숙, 호텔), 매춘업소(사창가, 퇴폐이발소) 등의 다섯 유형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및 유형에 대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는 포괄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는 다소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다방, 카페, 룸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고 출입은 허용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지칭하며, 법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업소에서 제공되는 내용이나 서비스 등과 같은 요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모두 청소년 유해업소라 지칭할 수 있다.

2)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류체계

(1) 선행연구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제한된 몇몇 연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김문조·김선

업, 1992; 김준호·박정선, 1995; 김영한 외, 2005; 유진이 외, 2005; 최인섭·강석구·김혜경, 2005). 김문조·김선업(1992)의 연구에서는 다방, 카페, 룸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 모두를 포괄하여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말 대신에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업소의 성격과 법, 업소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업소의 성격과 법에 의하면 업소의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를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가 아니나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를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김준호·박정선(1995)의 연구에서는 유해업소를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오락성과 성인용을 이용하고 있다. 오락성 체계에 의하여 오락실(예: 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가게(예: 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을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고, 성인용 체계에 의하여 술집(예: 스탠드바, 룸살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 등), 포장마차, 디스코장(예: 디스코 나이트클럽, 락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숙박업소(예: 여관, 여인숙, 호텔), 매춘업소(예: 사창가, 퇴폐이발소)를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는 2가지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유해업소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각 유형에 속하는 유해업소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2가지 분류체계가 객관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만화·비디오가게나 롤러스케이트와 같은 유형이 오락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진이 외(2005)의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업소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을 도출하였는데 크게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들과의 만남, 폐쇄적 공간(밀실) 이용, 심야영업이용이라는 유해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각 유해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로서 음주나 흡연과 관계된 술집이나 슈퍼/마트 등과 같이 유해물질의 구입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소들은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둘째, 각종 음란물/폭력물 등과 같은 유해매체로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와 접촉하는 비디오방/비디오대여점 등은 업소 내에서 각종 음란물/폭력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셋째, 문제친구와의 만남으로서 청소년들은 폭행/금품갈취 등의 문제행동을 혼자서 행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행동은 문제친구들과 함께 행하게 되는데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은 이러한 문제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업소이다.

넷째, 폐쇄적인 공간(밀실) 이용으로서 청소년들이 이성간의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이나 어른들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노래방, 비디오방 등은 이러한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업소이다.

다섯째, 심야영업으로서 청소년들이 업소에서 늦은 밤(오후 10시 이후) 청소년들을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것은 무단외박/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실제로 PC방, 술집, 찜질방, 비디오방 등은 늦은 시간까지 심야영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업소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I-5>과 같다. <표 II-5>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해성의 소지가 있는 요인을 추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업소를 분류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유해요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의 연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유해업소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표 II-5> 유해요인 및 유해업소 분류

유해업소	유해요인
① 구입: 슈퍼/마트/편의점, 기타 담배판매점 ② 소비(음주/흡연): 술집(호프/소주방/민속주점/포장마차), 노래방, 카페, PC방, 비디오방/DVD방, 당구장, 오락실, 식당	유해물질
① 대여: 도서대여점, 비디오/DVD 대여점 ② 관람:(성인)PC방, 비디오방/DVD방, 노래방	유해매체
① 폭행: 오락실, 노래방 ② 금품갈취/절도: 오락실, 노래방	문제친구와의 만남
① 성적접촉: 노래방, 비디오방 ② 성관계: 여관	폐쇄적 공간(밀실) 이용
① 심야귀가: PC방, 술집, ② 무단외박/가출: 찜질방, PC방, 비디오방, 술집, 여관	심야영업이용

※ 출처: 유진이 외(2005). 재인용, p.45.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유해요인을 업소의 영업내용에 따라 직접적 유해요인과 간접적 유해요인으로 나누고 있다(표 II-6 참조). 이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 유해요인이란 업소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유해요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술집은 술을 파는 것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술’이라는 ‘유해물질’은 직접적 유해요인이 된다.

반면 간접적 유해요인이란 업소 측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식적인 영업내용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간접적으로) 제공하

는 서비스가 유해요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방에서 비디오관람을 위해 제공하는 폐쇄적인 공간(밀실)은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인 유해요인이 된다.

<표 II-6> 유해요인의 분류

유해요인	상세 내용
직접적 유해요인	① 유해물질접촉 ② 유해매체접촉
간접적 유해요인	① 문제친구와의 만남 ② 폐쇄적인 공간(밀실) 이용 ③ 심야영업이용

※ 출처: 유진이 외(2005). 재인용. p.47.

그리고 이 연구는 유해성을 잠재적 유해성과 실제적 유해성으로 나누었다(표 II-7 참조). 잠재적 유해성이란 업소가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직 청소년이 접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실제적 유해성이란 청소년이 유해요인을 접촉하여 발현된 경우를 말한다.

<표 II-7> 유해성의 분류

잠재적 유해성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적 유해성	업소가 보유한 유해요인에 청소년들이 접촉한 경우

※ 출처: 유진이 외(2005). 재인용. p.48.

이러한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해업소의 유형을 유해요인에 따른 유형과 유해성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해요인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유해업소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표 II-8 참조) 첫째, 직접적 유해요인과 간접적 유해요인을 함께 갖추고 있는 유형인 유해업소 유형 1, 둘째, 직접적 유해요인을 갖추고 있지만 간접적 유해요인은 없는 유형인 유해업소 유형 2, 셋째, 직접적 유해요인은 없으나 간접적 유해요인을 갖추고 있는 유형인 유해업소 유형 3이다.

<표 II-8> 유해요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유형

	직접적 유해요인○	직접적 유해요인×
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업소 유형 1	유해업소 유형 3
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업소 유형 2	유해업소×

※ 출처: 유진이 외(2005). 재인용. p.49.

유해업소 1에 속하는 업소로는 술집,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성인PC방, 비디오/DVD방이며 이들 업소들은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음란물과 같은 직업적인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공간(밀실), 심야영업 등의 간접적이 유해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유해업소 2에 속하는 업소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슈퍼, 마트, 편의점, 카페, 식당 등과 함께 음란물을 빌려 보는 도서/비디오/DVD 대여점 등이며 이 업소들은 직접적 유해요인을 갖추고 있지만 간접적 유해요인은 없는 업소이다. 주로 유해물질/유해매체 등을 제공하지만 업소 내에 폐쇄적인 공간(밀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머무를 수 없는 장소이다.

유해업소 3에 속하는 업소로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 오락실, PC방, 당구장 등이며 업소의 영업내용 자체가 유해물질이나 유해매체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들이다. 그러나 업소 내에 폐쇄적인 공간(밀실)을 갖추고 있거나 심야영업 등과 같은 간접적인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다.

유해성에 따라 크게 2가지의 유해업소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표 4 참조) 첫째, 잠재적 유해성과 실제적 유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유형인 실제적 유해업소, 둘째, 잠재적 유해성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 유해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유형인 잠재적 유해업소이다. 실제적 유해업소란 잠재적 유해업소 중 업주 측의 관리 소홀이나 청소년들의 불법적인 노력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한 업소를 의미하며, 잠재적 유해업소란 유해요인을 보유한 업소를 의미한다.

한편, 최인섭·강석구·김혜경(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보호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업소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업소 자체가 직접적·객관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로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영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업종 자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지만 비행에의 노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비디오감상실업, 노래방, 무도학원, 당구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연구마다 유해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업소의 유해함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업소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작동함을 시사한다.

(2)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 분류체계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많은 업소들 중 어느 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무해한지를 분류하는 일은 자칫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업소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왜 자기 업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 분류체계를 수립하려고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유해성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전에 몇 가지 논의할 점

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유해성 분류체계의 수립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업소의 유해성을 분류하는 일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 ‘유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검토이다. 사실 ‘유해성’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로움으로 해석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때 무엇이 해로운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유해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유해요인’이라는 용어가 더 분명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업소가 ‘유해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특정 업소의 ‘무엇이 유해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유해성’의 개념은 ‘유해요인’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 ‘유해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문제이다. 사실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업소가 성인에게는 유해하지 않은 업소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는 업소는 연령에 관계없이 폭넓게 이용하는 업소이며 일반적으로 유해업소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업소가 술, 담배 등과 같은 유해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으나 성인에게 이를 판매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바로 유해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한편,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유해성이냐’라는 점이다. 즉, ‘유해성의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유해요인의 내용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유흥업소와 같은 업소의 경우 업소에서 판매하는 내용이나 서비스가 술, 담배 등과 같이 눈으로 직접 관찰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명백히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대여점이나 만화대여점과 같은 업소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비디오 내용이나 만화 내용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비디오 내용이나 만화 내용이 음

란성이 높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를 청소년에게 대여할 경우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유해요인이나 유해내용으로는 볼 수 없으나, 쉽게 유해요인과 결합되거나 접근가능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매개 요인이 있다. 매개요인은 그 자체로는 나쁘다 좋다, 라는 가치를 갖지 않으나 매개요인이 있음으로써 업소들이 유해요인을 쉽게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업소접근을 강화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이러한 매개요인은 유해요인과 결합하여 업소의 유해성을 은닉 하도록 하여 불법적 유해행위가 가능토록 조장하는 강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업소의 유해성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써 크게 3가지를 제시한다. 그 3가지는 첫째는 1차적 유해요인으로 그 특성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유해한 것, 둘째는 2차적 유해요인으로 그 특성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유해하지는 않지만 1차적인 유해요인을 쉽게 매개하거나 강화 시키는 요인, 셋째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내용으로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이다.

① 1차적 유해요인

첫 번째 체계는 특정 업소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업소가 가지고 있는 유해요인의 본질을 의미한다. 유해요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법적 근거란 청소년보호법을 위시한 각종 법에 적시해 놓은 법령에 근거하여 유해요인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근거, 직접적 근거, 1차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근거란 청소년보호법을 위시한 각종 법에 적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사회 통념과 실제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유해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요인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물질 등(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이 있다. 사회 통념의 근거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요인에는 유해요인의 실체보다는 유해요인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의거하여

유해요인의 음란성, 폭력성, 포악성, 근친상간, 저속표현, 비윤리성, 선정성, 혐오감, 사행성, 반사회성 등을 지닌 유해요인이 있다. 이것은 유해성의 내용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볼 때 유해요인은 크게 물리적 유해요인, 내용적 유해요인, 행위적 유해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첫째, 물리적 유해요인은 실체가 명확하게 유해한 요인을 말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물건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내용적 유해요인은 실체가 명확하게 유해하다기보다는 실체의 내용이 유해한 요인을 말한다. 음란 비디오물, 폭력 비디오물, 선정 만화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행위적 유해요인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조장시키거나 동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요인을 말한다. 음란행위, 호객행위, 성적접대행위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② 2차적 유해요인(간접요인)

유해업소에서의 2차적 유해요인인 간접요인에 대해 유진이(2005) 연구에 따르면 유해물질 접촉 경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서 유해업소 접촉경로로 밀실과 심야영업이 유의미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밀실과 심야영업에 따른 유해업소 관리자의 관리 소홀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밀실과 심야영업이 있을 경우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업소 관리자는 관리 소홀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해업소의 매개요인과 강화요인은 유해요인과의 결합을 보다 쉽게 하고 청소년문제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기준의 핵심적 요인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

③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유해성의 내용)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이란 유해성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소를 청소년 이용 할 때 어느 정도 유해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해성의 내용은 유해성의 정도와 업소에 대한 청소년이용과 업소의 성격과 관련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유해요인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청소년 문제 유발가능성에서 유해성의 내용은 유해의 개념을 어느 범위까지 포괄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해 개념의 상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 유해성의 내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유해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아직 인성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행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해 또는 유해성의 개념을 음란성, 폭력성, 잔학성 등 불법의 개념에 근접하게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최인섭·강석구·김혜경, 2005).

업소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로서 유해성의 내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예를 들면 성인용품점은 유해한 내용 그 자체가 유해한 것이지만 심야음식점, 오락장 등은 그 자체가 유해하다기 보다는 이러한 업소가 비행으로의 접근을 조장·촉진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흥업소와 같은 업소의 경우 업소에서 판매하는 내용이나 서비스가 술, 담배 등과 같이 눈으로 직접 관찰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명백히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대여점이나 만화대여점과 같은 업소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비디오 내용이나 만화 내용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비디오 내용이나 만화 내용이 음란성이 높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를 청소년에게 대여할 경우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의 판정 기준이자 관련 처벌법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유해성의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음란성, 폭력성, 포악성, 근친상간, 저속표현, 비윤리성, 선정성, 혐오감, 사행성, 반사회성 등이 유해성 판단의 이유로 설명된다(최인섭·강석구·김혜경, 2005).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과 청소년위원회 고시 등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문제 유발가능성으로서 유해성의 내용을 청소년이용도와 접근성, 그리고 업소의 유해강도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청소년이용도란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또는 고용경험을 말하며, 접근성이란 유해업소의 위치가 청소년의 중심생활구역(학교 및 가정(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또한 유해강도는 업소의 업무 유해성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여, 여기에는 업무 내용의 중독성, 음란성, 폭력성, 반윤리성, 정신적·육체적 건강 침해성 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중독성은 업소의 영업내용이 청소년의 중독성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며, 음란성은 업소의 영업내용이 외설적이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수준을 말하며, 폭력성은 업소에서 폭력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침해성은 업소의 활동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이며, 반윤리성은 업소의 영업사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체계(안)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모든 업소를 분류기준에 맞추어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분류기준은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관련 문헌 등에 기초하여 개념적으로 수립된 <표 II-9>과 같다.

<표 II-9>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 분류체계(안)

분류체계		주요 내용	
1차적 (주요) 유해요인	물리적 유해요인	실체가 명확한 유해요인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등	
	내용적 유해요인	실체의 내용이 유해한 요인 - 음란 비디오물, 폭력 비디오물, 선정 만화 등	
	행위적 유해요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조장시키거나 동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요인 - 음란행위, 호객행위, 성적 접대행위 등	
2차적 유해요인	청소년에게 유해업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하거나 유해요인과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유해행동을 매개 또는 강화하는 요인 - 밀실(칸막이), 심야영업, 접객서비스 등)		
청소년 문제 유발 가능성	이용도	업소를 청소년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정도(경험)	
	접근성	업소의 위치가 청소년 생활환경과의 물리적 거리 (밀접도)	
	유해강도		업소의 유해성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도
		중독성	업소의 유해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정도
		음란성	업소에서 영업내용이 외설적이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정도
			업소에서 폭력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정도
		정신적·신체적 건강침해성	업소의 활동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
반윤리성	업소의 영업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도		

<표 II-9> 유해성 분류체계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념적 분류 유형은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유해성 분류체계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유형

구 분	직접유해요인 (1차적 유해요인)		간접 유해요인 (2차적 유해요인)		청소년의 문제 유발 가능성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유형 1	●		●		●	
유형 2	●		●			●
유형 3	●			●	●	
유형 4	●			●		●
유형 5		●	●		●	
유형 6		●	●			●
유형 7		●		●	●	
유형 8		●		●		●

위의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형1은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도 높은 업종이다.
- ② 유형2는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은 낮은 업종이다.
- ③ 유형3은 1차적 유해요인은 많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적는데 비해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은 높은 업종이다.
- ④ 유형4는 1차적 유해요인은 많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적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도 낮은 업종이다.
- ⑤ 유형5는 1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많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은 업종이다.
- ⑥ 유형6은 1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많고, 청소년문제 유발성은 낮은 업종이다.
- ⑦ 유형7은 1차적 유인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청소년문제 유발가능성은 높은 업종이다.
- ⑧ 유형8은 1차적 유인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은 적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도 적은 업종이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유형은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 그리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업소를 등급화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등급기준은 위의 <표 II-10>에 따라 유해성이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되, 청소년문제 유발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재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유해1등급은 유형1과 유형3과 유형5에 해당하는 유해업소로서 유해요인인 2개 이상 높은 것으로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둘째, 유해2등급은 유형2와 유형7로서 유해요인이 2개 이상 높거나, 1차, 2차 유해요인이 낮더라도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셋째는 유해3등급은 유형4와 유형6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유해요인이 1개 이상 높으나 청소년문제유발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다.

넷째는 유해4등급은 유해요인이 모두 낮고 청소년문제유발성도 낮은 업종으로 분류 하였다.

Ⅲ.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 분석

1. 개관
2.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령 및 실태
3.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 분석
4.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분석 결과

Ⅲ.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 분석

1. 개관

청소년 유해업소의 고용 또는 출입 제한은 청소년이 각종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유해업소에 관한 시각도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다소 달라지고 있다. 예컨대 과거 직접적 유해업소로 분류하였던 당구장의 경우,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은 유치원과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⁴⁾ 내에 당구장의 설치만을 금지하고(동법 제6조),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과거 직접적 유해성을 인정하였던 업소에 대하여 간접적 유해성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구장이 청소년비행의 온상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이라고 보았던 과거와의 시각 차이를 나타낸다(김문조·이성식, 1994).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고용이 금지된 업소와 고용뿐만 아니라 출입까지도 금지된 업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업소의 구분은 당해 업소가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등을 실제로 하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곳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참조)

2.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령 및 실태 분석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비디오감상실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매체물유통업, 유해매체가 심신발달장애업, 심신발달장애우려영업, 유흥접객행위, 유흥주점, 유흥행위, 음성대화, 퇴폐적 안마, 화상대화, 성관련신체부위의 노출업, 유해한근로행위, 담배판매업, 담배자판기, 마약류판매업, 주류판매업, 환각물질 등이 있다.⁵⁾

5)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 (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2001·8·25]

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유흥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법 제2조제5호 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 장에서는 위의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법률적 규제 및 허용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현장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에 따른 변종영업사항을 제시한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한다.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⑥법 제2조제5호 나목(3)에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8·25, 2004.4.24, 2005.11.11, 2006.10.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0.27 제19717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6.10.29]]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⑦법 제2조제5호 나목(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6.3.29] [[시행일 2006.3.30]]

⑧법 제2조제5호 나목(7)의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표 III-1> 단란주점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단란주점
법적 분류 업종	식품접객업/유흥접객영업/단란주점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해당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8호 다목
변종 영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조직, 삐끼조직에 의한 청소년 유인 불법 고용, 접대 및 윤락 행위 강요,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방조, 밀실영업, 업주 또는 종사자 성폭행만연, 주민등록증이나 보건증 위조, 손님이나 취객 상대로 바가지요금 씌우거나 폭력 동원한 협박, 자정 이후 영업, 2차 성매매 연계, 유사성교 제공, 애무 제공, 훌딱 쇼 등의 음란 퇴폐 행위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4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영업. 한 달 3백만 원 현금 선 지급으로 청소년 고용. 고용인들이 모텔에서 단체 숙식. 술, 담배 제공. 주로 여러 명(5인~30인)이 어울리는 밀실에서 도우미에 의한 노래와 춤, 술시중 제공. 고객이 2차를 원할 경우 성매매. 신체 접촉 요구 시 애무 및 유사 성행위 제공, 훌딱 쇼 등 누드 쇼 제공. 노래방 기계 화면에 성인용 영화를 보여줌. 밀실에 전용 화장실과 다양한 특수조명 구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지속적 접촉 및 서비스 제공 가능.

<표 III-2> 유흥주점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유흥주점
법적 분류 업종	유흥주점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해당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
변종 영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트클럽의 경우, 청소년 출입은 물론 흡연 및 음주 가능. 불건전한 이성 접촉 주선(부킹 등)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트클럽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영업. 학교에 다니면서 저녁에 일당을 받으며 청소년 고용. 술, 담배 제공. 여러 명이 이용 가능한 밀실 형태의 노래방 구비. 불건전한 이성 접촉 주선. 단골고객 접대용 비아그라, 또는 슈퍼콘돔 등 제공. 춤, 노래 등의接客행위. - 호스트바의 경우, 한 달 삼백만원 선 지급 후 고용인들이 단체로 모텔에서 숙식해결, 오후 4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영업. 술, 담배 이용. 여성고객 술시중 및 노래 불러주기, 고객 요구 시, 쇼와 신체접촉, 애무, 유사 성행위 및 2차 성매매 가능. 특수조명, 전용화장실이 딸린 밀실에 5인~30인 가량이 주로 단체 이용. 노래방 기계 화면에 성인용 영화 상영. - 파티시클럽의 경우,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구비한 지하철, 사무실 등 세트를 설치한 밀실 제공. 여성종사자가 역할극 등을 진행하며, 각종 유사성행위 서비스 제공.

<표 III-3> 비디오감상실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비디오감상실업
법적 분류 업종	비디오물감상실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p> <p>3.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p>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p> <p>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p> <p>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p> <p>4.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p>
해당 법령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 가목</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호, 제4호</p>
변종 영업 사항	<p>- 청소년 출입 및 성인용 비디오물의 시청, 흡연 및 음주, 약물 등의 유해물질 사용, 밀실 제공, 성적 행위 가능, 가출·비행 청소년의 잠자리로 이용 가능, 아르바이트 형 청소년 고용(카운터, 빼끼 등)</p>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p>- 성인전용 비디오방의 경우, 누울 수 있는 의자가 갖추어진 1인용 밀실 안에 유리 칸막이가 있음. 칸막이 너머로 여성이 들어와 성적 흥분행위를 제공. 남성이 성적 자극으로 자위할 수 있도록 유도. 사정 1회시 5만원. 여성과 성적 대화 가능. 얼굴을 드러나지 않고, 몸을 중심으로 비추는 조명. 담배 구입 가능.</p> <p>- 멀티방의 경우, 침대 기능을 하는 널찍한 2인용 소파가 구비된 밀실, 일부는 샤워실 구비. 흡시어터 설비와 화상 카메라 부착 PC1대씩. 음란 동영상 감상 및 폭력성 높은</p>

	게임 가능. 노래방, DVD방, PC방이 결합되어 1인당 1시간에 5000원에 방 이용.
--	---

<표 III-4> 노래연습장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노래연습장
법적 분류 업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p> <p>제9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p> <p>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별표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법령	<p>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제 2조 11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3</p> <p>■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1</p>
변종 영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판매, 주류 반입 묵인, 노래방 도우미 알선, ‘나체쇼’ 등 성관련 매매 행위 - 화상기기를 통한 다른 노래연습장이나 다른 룸과 연결하여 음란한 행위 연출 - 노래연습장내 배경화면의 성인용 영상을 상영 - 청소년실의 완전밀실화 운영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방의 경우, 침대 기능을 하는 널찍한 2인용 소파가 구비된 밀실. 일부는 샤워실 구비. 홈시어터 설비와 화상카메라 부착 PC1대씩. 음란 동영상 감상 및 폭력성 높은 게임 가능. 노래방, DVD방, PC방이 결합되어 1인당 1시간에 5000원에 방 이용. 유사 성행위 및 실제 성행위 가능. - 호레방의 경우, 호스트바와 노래방을 줄여 합성한 단어로, 남녀 접대부를 손님 성별에 따라 방(밀실 구조)별로 제공하여接客행위(춤, 노래 등) 제공. 사실상 단란주점에 가까운 영업형태로 보도방에서 도우미 제공받아 영업. 오후부터 새벽까지 심야 영업. 술 제공.

<표 III-5> 무도학원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무도학원업
법적 분류 업종	무도학원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나. 무도학원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과정을 교습하는 영업(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을 제외한다)
해당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4호 나목(삭제)
변종 영업 사항	- 문란한 복장과 이성과의 접촉 가능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주로 최근 유행하는 댄스교습소로 활용

<표 III-6> 무도장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무도장업
법적 분류 업종	무도장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다. 무도장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
해당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4호 다목(삭제)
변종 영업 사항	- 음란한 신체적 접촉 및 복장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주로 성인용 무대댄스 교습, 2차적인 만남 주선, 현장실습을 주로 성인용 나이트클럽 방문

<표 III-7> 사행행위영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사행행위영업
법적 분류 업종	사행행위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p> <p>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p> <p>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p> <p>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p> <p>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p>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p> <p>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p> <p>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p>

	<p>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본조신설 94·7·23]</p> <p>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영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사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영업시간등에 관한 제한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2·5, 99·3·31, 2001·5·24, 2006.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안에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하게 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94·8·3] 6.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다.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해당 법령	<p>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2호/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 제1조의2</p> <p>■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2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 제8조제2호다목</p>
변종 영업 사항	<p>- 경품취급 기준 위반, 불법 개조 및 변조, 도박과 사행행위 영업</p>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p>- 빙고게임, 물품경매 등을 통한 대박상품 제시</p> <p>-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경품 제시</p> <p>- 문화상품권 번호를 통한 경매참가 허락 등</p>

<표 III-8> 음성대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음성대화
법적 분류 업종	전화방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2.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해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호
변종 영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성매매 및 알선 - 음란한 대화유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용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폰팅업소의 경우, 전화를 통한 유사성행위 제공. 일부는 원조교제로 이어져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짐. - 휴대기기를 통한 무분별한 음성이용 음란한 홍보 문자, 사진 등 발송

<표 III-9> 화상대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화상대화
법적 분류 업종	화상대화방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2.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해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호
변종 영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한 행위에 대한 요구 및 유사 성매매 - 인터넷을 통한 동시다발적인 접속을 통한 음란영상 배포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화상 행위 및 대화 -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배포 - 2차 만남을 통한 원조교제

<표 III-10> 성인용매체물유통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성인용매체물유통업
법적 분류 업종	성인용매체물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해당 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변종 영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용 영상물 상영 -接客서비스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용 동영상 및 비디오물 유통 - 성인용 게임

<표 III-11> 심신발달장애우려 영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심신발달장애우려 영업
법적 분류 업종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p> <p>(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p>

해당 법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3항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
변종 영업 사항	- 성인용 미디어물 유통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청소년용 만화, 영상물, 게임물 제작 유통

<표 III-12> 유흥접객행위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유흥접객행위
법적 분류 업종	유흥접객행위 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해당 법령	청소년보호법 제3조3항2호,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변종 영업 사항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에서의接客행위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고용 및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조장 -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을 통한 접대도우미 공급 및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조장 - 일반음식점에서 식사接客후 음주가무 제공 및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조장

<표 III-13> 퇴폐적안마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퇴폐적안마
법적 분류 업종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p>
해당 법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3항
변종 영업 사항	- 밀실제공, 직접적인 성행위, 유사 성행위 서비스 제공, 성매매 알선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p>-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영업. 일반상가 건물에 안마시술소라는 간판으로, 내부는 일반 모텔과 비슷. 술, 담배, 콘돔 제공. 안마, 직간접 애무 및 성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욕실이 갖추어진 1인 밀실에서 일대일 서비스.</p> <p>- 남성전용안마시술소의 경우, 숙박업소와 유사한 1인용 밀실에 안마 서비스 5만원, 풀서비스(성매매 포함) 15만원에 제공. 찜질방 시설과 유사한 설비로 입구에서 가운과 수건을 제공하나, 목욕시설은 없음.</p> <p>- 신중 안마시술소의 경우, 예전 성매매 업소들에서 제공했던 일명 '술상' 서비스, 성매매 알선 및 실제 성매매 행위.</p>

<표 III-14> 성관련신체부위의 노출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성관련신체부위의 노출업
법적 분류 업종	성적접대행위우려영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p>
해당 법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3항
변종 영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업종 중 대탈방, 유리방 등 신종업종과 나이트클럽에서의 쇼걸, 안마실 영업 등 간접적인 신체노출의 서비스 제공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점객행위 영업 등에서 신체노출 등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페에서 적극적인 신체노출 표현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 이용업에서 노골적인 신체노출 및 성접대 행위

<표 III-15> 담배판매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담배판매업
법적 분류 업종	
법적 개념	<p>제6조의2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p>
해당 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변종 영업 사항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및 담배를 날개로 판매함

<표 III-16>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담배자동판매기
법적 분류 업종	
법적 개념	<p>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4.7, 2002.1.19.]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29.]</p> <p>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의2 (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p>

	<p>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p> <p>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p> <p>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p> <p>[본조신설 2004.7.29]</p>
해당 법령	<p>■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p>
변종 영업 사항	<p>-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가능</p>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p>- 자판기의 설치후 관리감독 소홀</p> <p>- 자판기 설치위치가 보도상에 있어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음</p>

<표 III-17> 마약류판매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마약류판매업
법적 분류 업종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4.1.20] [[시행일 2004.7.20]]</p> <p>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p> <p>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p> <p>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p> <p>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함유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p> <p>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p> <p>3. 제2호 가목의 양귀비·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슴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 게름 디·시를 말한다.</p> <p>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p>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닐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p>

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6.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p>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의 수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나.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 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 한다.</p> <p>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p> <p>라.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를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p> <p>마.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도매업자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바.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 성의약품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p> <p>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p> <p>아.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 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 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 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p>
--	--

	<p>는 자를 말한다.</p> <p>7.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8. "원료물질취급자"라 함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p> <p>9. "군수용마약류"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p> <p>10.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p> <hr/> <p>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①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	---

	<p>②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④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1]]</p>
해당 법령	<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p> <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p>
변종 영업 사항	- 청소년에 마약 판매, 관리 및 유통 과정에서의 청소년 이용 및 참여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미조사

<표 III-18> 주류판매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주류판매업
법적 분류 업종	주류판매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接客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p> <p>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p> <p>④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해당 법령	주세법 제8조
변종 영업 사항	- 청소년에 주류 판매 및 음주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주류판매업소 아르바이트, 주류배달 등

<표 III-19> 환각물질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환각물질
법적 분류 업종	
법적 개념	<p>제43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6조 (환각물질)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해당 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1항/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변종 영업 사항	- 미조사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소주방, 숙박업, 안마실, 객실구분목욕장업, 유독물을 직접사용하지 않는 업소에서 취급, 이용업, 카페, 티켓다방, 호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증기탕이 있으며, 그 유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0> 티켓다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티켓다방
법적 분류 업종	다방 - 휴게음식점영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④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해당 법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4항
변종 영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윤락 행위와 같은 불법 접대 행위(티켓 영업), 청소년 고용하여 임금 착취, 직업소개소의 개입으로 종업원들이 빚에 팔려다니는 신중 인신매매, 보건증 또는 주민등록증 위조 사용 - 다방의 경우, 청소년 흡연 방관, 주류 제공 행위, 단란주점 접객에 접객원을 조달하는 보도하우스 조직의 대기 장소로 활용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백만원의 월급을 먼저 지급받은 후, 모텔에서 감시인과 함께 동거생활. 정해진 업무 시간이 없고, 고용주가 부르는 시간에 가서 업무 수행. 고객이 고용주의 가게에 전화로 예약 후, 고객이 있는 장소(보통 모텔 등 밀실)로 찾아가 도박 중 잔심부름, 차 배달, 거래처 손님 접대용으로 말상대, 성파트너 등의 서비스 제공. 업소 자체는 일반적 커피숍 분위기이나 담배, 콘돔 제공. 고객과 2차를 갈 경우 노래, 춤 등 장소에 따라 요구하는 접객행위 제공. - 남성티켓다방의 경우,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영업. 커피를 주문하면서 '티켓' 을 끊게 되는데, 이 때 커피는 4천원, 티켓비용은 시간당 2만 5천원 정도. 성매매 비용은 10만원 정도. 주로 원룸 등의 밀실

	로 배달 방문. 집안 일 및 심부름, 애무 서비스, 유사 성 행위 등 제공.
--	---

<표 III-21> 소주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소주방
법적 분류 업종	일반음식점영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일반 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 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 태로 운영되는 영업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당 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8호 나목/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 조4항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1)
변종 영업 사항	- 청소년 출입 및 흡연, 음주 가능, 아르바이트로 중학생까 지 고용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청소년고용 및 새벽 2-4시까지 심야영업 - 개방형 공간과 밀실의 혼재 및 인근주택가 주변에 위치 - 청소년 출입을 통한 흡연, 음주 습관화 - 성인과의 만남 및 원조교제

<표 III-22> 호프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호프집, 맥주집
법적 분류 업종	일반음식점영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p> <p>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p>
해당 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8호/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변종 영업 사항	- 접대행위 제공,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가능, 불건전한 이성의 만남 주선, 부킹 주선 등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p>- 자연스럽운 음주참여가 가능토록 되어있음</p> <p>- 학교앞 또는 주택가에 밀착되어 있어서 성인의 음주모습을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출</p> <p>-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및 2차 성접대행위 권유</p>

<표 III-23> 카페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카페
법적 분류 업종	일반음식점영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p> <p>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p>
해당 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8호나목/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변종 영업 사항	<p>- 칸막이 시설 제공, 애무 가능,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가능</p> <p>- 락카페의 경우,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가능, 애무 가능, 노예 판매·현장 부킹·체인징 파트너 등의 변칙 프로그램 영업, 아르바이트형 청소년 고용(서비스 및 빠끼 등)</p>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누드카페의 경우, 술 제공. 누드 파티를 마련하여 여성접대부를 고용, 신체 접촉 및 유사 성행위 서비스 제공. 술, 담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가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저질스런 게임 프로그램 운영 - 개방공간과 밀실형 공간이 혼재하게 구성되며, 조명은 중앙의 화려한조명과 밀실의 은밀한 조명 - 청소년 고용을 통한 원조교제 가능토록함
--	---

<표 III-24> 숙박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숙박업
법적 분류 업종	공중위생영업/숙박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호,2호
변종 영업 사항	- 성행위, 유사 성행위 제공, 또는 알선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인숙의 경우, 일반 숙박 시설과 같은 밀실 구조의 칸막이 방에서 a, b, c등 급수에 따라 3만원부터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유사 성행위 및 실제 성행위 제공. 술, 담배 제공. 콘돔을 사용한 직접적 성행위, 구강성교 제공(1회 사정시까지) - 인형체험방의 경우, 샤워시설이 딸린 밀실 구조. 각종 성인용품 및 리얼돌, 탈부착 유사성기 비치. 리얼돌 이용한 자위행위 등 유사 성행위 가능.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관바리업의 경우, 대형 거울이 설치된 밀실에서 2부제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 성행위 및 실제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 - 무인여관 운영을 통한 주민증 등 확인 절차 무시, 여관복도에 성인비디오물 제공, 여관내 성인케이블 방송시청 및 인터넷과 DVD를 통한 성인매체물을 손쉽게 이용
--	---

<표 III-25> 이용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이용업
법적 분류 업종	이용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해당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4호
변종 영업 사항	- 성매매, 밀실제공, 샤워시설 제공, 성매매 알선, 애무 및 성적 서비스 제공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전용 밀실에 마사지 침대 및 기구를 구비, 마사지와 인조성기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등 제공. 구강성교 제공. 여성 종업원이 비키니, 또는 알몸으로 서비스 제공. - 24시간 남성전용 공간으로 제공되며, 밀실제공과 별도의 샤워실이나 마사지실 운영을 통한 성매매 성행

<표 III-26> 안마실,객실구분목욕장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안마실,객실구분목욕장업
법적 분류 업종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별표 1] <신설 2003.9.16, 2004.12.30>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제6조관련)</p> <hr/> <p>1. 안마시술소 가. 연면적은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실이 5개 이상 설치된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는 안마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10인 이하로 하고,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은 안마사 수의 2분의 1로 한다.</p> <p>2. 안마원 가. 연면적은 11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의 부속기관으로 안마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원의 내부에는 남녀 피술자(피술자)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외에 별도의 안마실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외부에는 안마원의 명칭외에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보조 자극요법"을 표기할 수 있다.</p>

	<p>다.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은 2인 이하로 한다.</p> <p>/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p> <p>나.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p>
해당 법령	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 별표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3호
변종 영업 사항	- 밀실제공, 직접적인 성행위, 유사 성행위 서비스 제공, 성매매 알선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p>-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영업. 일반상가 건물에 안마시술소라는 간판으로, 내부는 일반 모텔과 비슷. 술, 담배, 콘돔 제공. 안마, 직간접 애무 및 성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욕실이 갖추어진 1인 밀실에서 일대일 서비스.</p> <p>- 남성전용안마시술소의 경우, 숙박업소와 유사한 1인용 밀실에 안마 서비스 5만원, 풀서비스(성매매 포함) 15만원에 제공. 찜질방 시설과 유사한 설비로 입구에서 가운과 수건을 제공하나, 목욕시설은 없음.</p> <p>- 신중 안마시술소의 경우, 예전 성매매 업소들에서 제공했던 일명 '술상' 서비스, 성매매 알선 및 실제 성매매 행위.</p>

<표 III-27> 비디오물소극장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비디오물소극장업
법적 분류 업종	비디오물소극장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p> <p>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해당 법령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 나목</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호</p>
변종 영업 사항	- 성인용 비디오 대여, 감상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성인용 비디오 관리 감독 미흡, 밀실형 구조, 흡연 가능

<표 III-28> 게임제공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게임제공업
법적 분류 업종	게임제공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p>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p> <p>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p> <p>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p> <p>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p> <p>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비디오물 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 (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p>
--	---

	<p>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별표 1의2] <신설 2007.5.16></p> <p>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p>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	---

	<p>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p> <p>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해당 법령	<p>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제 2조 9호</p> <p>■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제 32조, 제38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p>
변종 영업 사항	<p>- 청소년 출입시간 외 보호자 동반 없는 청소년 출입,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이용, 청소년 이용불가 음란물 이용, 밀실이나 밀폐와 유사한 공간 설치, 사행행위나 도박 등의 행위, 성관련 채팅, 또는 성매매 알선을 위한 인터넷 이용, 밀실 내 성적 행위 목인</p>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p>- 개인용 밀실. 여성도우미가 유사 성행위 서비스 제공. 여성 여러 명이 번갈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여성과 함께 성인용 동영상 감상, 성관련 대화. 특별한 시간 제약은 없으나 보통 1~2시간 이용.</p> <p>- 멀티방의 경우, 침대 기능을 하는 널찍한 2인용 소파가 구비된 밀실, 일부는 샤워실 구비. 홈시어터 설비와 화상 카메라 부착 PC1대씩. 음란 동영상 감상 및 폭력성 높은 게임 가능. 노래방, DVD방, PC방이 결합되어 1인당 1시간에 5000원에 방 이용.</p>

<표 III-2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법적 분류 업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

<p>법적 개념</p>	<p>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p> <hr/> <p>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16]</p> <p>1. 영업시간</p> <p>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2. 청소년의 출입시간</p> <p>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p> <p>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p>해당 법령</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p>
<p>변종 영업 사항</p>	<p>- 불법 CD를 이용한 게임,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알선,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문구류를 경품으로 나눠준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 등), 청소년에 이용불가 게임 제공</p>
<p>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p>	<p>- 개인용 밀실. 여성도우미가 유사 성행위 서비스 제공. 여성 여러 명이 번갈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여성과 함께 성인용 동영상 감상, 성관련 대화. 특별한 시간 제약은 없으나 보통 1~2시간 이용.</p>

	- 멀티방의 경우, 침대 기능을 하는 널찍한 2인용 소파가 구비된 밀실, 일부는 샤워실 구비. 홈시어터 설비와 화상 카메라 부착 PC1대씩. 음란 동영상 감상 및 폭력성 높은 게임 가능. 노래방, DVD방, PC방이 결합되어 1인당 1시간에 5000원에 방 이용.
--	---

<표 III-30> 만화대여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만화대여업
법적 분류 업종	만화대여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가. 만화대여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 제4조 (영업시간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자는 법 제3조제7호 및 영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간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 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4호 가목(삭제)
변종 영업 사항	- 청소년이용불가 만화 이용 및 대여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성인용 만화와 청소년용 만화 공간 구분 미흡 - 성인용만화 및 도서 대여 가능 - 성인 잡지 대여

<표 III-31>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법적 분류 업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p>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p> <p>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p> <p>1. 영업시간</p> <p>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채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2. 청소년의 출입시간</p> <p>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p> <p>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해당 법령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p>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p>
변종 영업 사항	<p>- 불법 CD를 이용한 게임,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알선,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문구류를 경품으로 나눠준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 등), 청소년에 이용불가 게임 제공</p>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p>- 개인용 밀실. 여성도우미가 유사 성행위 서비스 제공. 여성 여러 명이 번갈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여성과 함께 성인용 동영상 감상, 성관련 대화. 특별한 시간 제약은 없으나 보통 1~2시간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방의 경우, 침대 기능을 하는 널찍한 2인용 소파가 구비된 밀실, 일부는 샤워실 구비. 홈시어터 설비와 화상 카메라 부착 PC1대씩. 음란 동영상 감상 및 폭력성 높은 게임 가능. 노래방, DVD방, PC방이 결합되어 1인당 1시간에 5000원에 방 이용. 유사 성행위 및 실제 성행위 가능.
--	---

<표 III-32> 증기탕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증기탕
법적 분류 업종	특수목욕장업/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2. 법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 [시행일 1999.8.9]/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해당 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공중위생법시행령은 폐지) 제2조2호/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2.2호
변종 영업 사항	- 성행위, 유사성행위 제공 또는 알선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전용 애무방의 경우, 남성 도우미를 고용하여 여성고객에 서비스. 오피스텔 등의 밀실에서 마사지 및 요구 시에는 유사 성행위 및 실제 성행위 제공. - 여성전용증기탕의 경우, 욕실이 딸린 밀실이 갖춰진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빌라 구조. '호스트 메뉴판' 을 통해 남성 종업원을 선택하여 시간제한 없이 유사 성행위 및 실제 성행위 서비스 제공.

<표 III-33> 영화상영관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업종 및 업태 분류	영화상영관
법적 분류 업종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법적 개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해당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변종 영업 사항	- 영상물 등급 무시 출입 허용 - 광고물의 선정적 표현
현장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 동시 상영 시에 한 편은 성인용, 한 편은 청소년용으로 상영 - 예고편에 성인물 포함

3) 기타 청소년보호법외의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이외의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보건위생관련시설인 가축시장, 가축사체처리장 및 가축가공처리시설, 당구장,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영화상영관,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제한상영관,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총포화약류·가스 제조 및 저장소 등과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

당하는 업소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3.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분석

신종 유해업소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유해업소로서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의로 볼 때 직접적인 유해요인을 제공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간접적인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종유해업소는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어 현재 주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영업장의 시설이나 영업내용으로 볼 때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4> 프리존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프리존(임대 또는 전대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널찍한 소파
	밀실 또는 밀실형	- 원룸 형태로 완전한 밀실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샤워실 있음
	조명도	- 붉은 조명
	배치물품	- 인터넷가능한 컴퓨터, DVD, 목욕실, 안락의자
	외부와의 차단 형태	- 튼튼한 철문으로 안에서 자동으로 잠기도록 되어 있음.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음
	기타 설비	- 컴퓨터, DVD, 대형 스크린 등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담배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애무 및 유사 성행위, 성관계 가능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성인매체접속(비디오,DVD,인터넷)
	성인용 매체물 제공	- 성인방송 시청가능, 성인비디오 선택가능, 성기구 획득가능 등 기본시설 설치됨
	사행행위영업 유무	해당없음
	접객행위	- 이성혼숙 또는 필요시 연결 가능
	기타 서비스 내용	- 2시간 이용에 2만 4천원: 초단기 임대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 완벽한 사유공간으로 인정

- 변형 전대업(임대한 공간을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단속 근거 부족
- 미성년자처럼 보이면, 신분증 제시 요구, 그러나 엄격하지 않음.

<표 III-35> 대딸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대딸방 - 하드방, 남성전용 휴게텔 포함(자유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시설 및 설비사항 및 배치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침대 있음
	밀실 또는 밀실형	- 간단한 칸막이 형태, 남성전용휴게텔의 대딸방 경우, 1인용 밀실
	욕실 또는 샤워시설	- 남성전용휴게텔의 대딸방 경우, 일반적 모텔수준 샤워실 구비
	조명도	- 분위기 조명, 붉은색 계통
	배치물품	- 남성전용휴게텔의 대딸방 경우, 수건, 가운, 목욕용품 구비
	외부와의 차단 형태	- 간단한 칸막이 형태로 방음이 되지 않아 복도에 잔잔한 음악
	기타 설비	- 다양한 조명 - 남성전용휴게텔의 대딸방 경우, 무인 시스템으로 돈을 넣으면 키가 나오며, 업주를 볼 수 없음. 내부는 일반 목욕탕이나 안마시술소처럼 되어 있는 숙박시설 형태.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담배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간단한 마사지 후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이른바 ‘헨즈 서비스’, 직접 삽입은 하지 않음: 대딸방 - 손님이 원하는 경우, 스트립쇼도 가능 - 소위 ‘69(체위 중 하나)’ 와 ‘입사(입 속 사정)’ 서비스 제공 :하드방 - 손님이 상의를 벗은 후 침대에 누워 있으면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입장, 팔 다리에 대한 간략한 마사지 후, 기본적 터치와 애무로 이루어진 ‘스페셜 마사지’ 에 들어감. 기본적 터치와 애무부터 유사 성행

		위, 혹은 성행위 서비스까지 평균 한 시간 가량 제공 : 하드방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유해인터넷접속, 성인비디오 방송
	성인용 매체물 제공 등	- 비디오로 포르노물 보여 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제공
	기타 서비스 내용	- 남성전용휴게텔의 대딸방 경우, 24시간 운영 - 하드방의 서비스 가격은 약 8만원에서 10만원 수준 - 1인 6만원(나이 많은 여성), 11만원(젊은 여성) 등 금액에 따라 서비스가 다름.

- 대딸방 중 무인시스템시설로 입구에서 선택해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음
- 대딸방에 이어 좀 더 변태성이 더해진 하드방이 최근 3~4개월 동안 생겨나 번성
- 특별한 면허나 시설이 필요 없어 개·폐업을 쉽게 할 수 있다 : 하드방
- 남성전용휴게텔의 대딸방 경우, 별도 요금을 내고 성행위 가능.

<표 III-36> 남성티켓다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남성티켓다방(다방 - 휴게음식점 영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시설 및 설비사항 및 배치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해당없음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없음
	조명도	- 일반 조명
	배치물품	- 카페형 물품
	외부와의 차단 형태	- 개방
	기타 설비	- 의자, 티비, 음시설 등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해당없음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애무서비스 등. 손님이 원할 경우 '2차' 성매매도 가능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음란한 대화, 약간의 신체적 접촉 등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 성접대
	기타 서비스 내용	- 커피를 주문하면서 '티켓' 끊음. 커피는 4천원, 티켓 비용은 시간당 2만 5천원 정도, '2차' 비용은 10만원 - 방청소, 설거지 등 집안 일, 각종 심부름도 제공 - 영업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 원룸촌을 중심으로 확산

- 한 여성전용 다방 업주는 2004년 초부터 수성구 일대 원룸을 기반으로 영업

을 시작하여 현재 고객 15~20명 정도라고 함. 원룸에 사는 여성들에게 반응이 좋아 종업원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

<표 III-37> 유리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유리방(자유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시설 및 설비사항 및 배치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1인용 소파
	밀실 또는 밀실형	- 방 구조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어두운 조명
	배치물품	- 화장지, 안락의자, 비디오시설
	외부와의 차단 형태	- 벽으로 완전히 차단
	기타 설비	- 1평 남짓한 2개의 방이 커다란 투명 유리로 나뉘어 있음. 유리에 주먹 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 금전 거래 가능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담배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몸을 만지게 함, 2차로 여관, 비디오방, 승용차 등에서 성매매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옷 벗는 것을 보여줌, 음란한 동작을 보여줌
	성인용 매체물 제공	- 성인영화 방영되는 텔레비전 있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필요시 이성에 의한 성매매 가능
	기타 서비스 내용	- 입장료 2만원, 옷 벗는 것을 보여줌 3만원, 음란한 동작을 보여주고 몸을 만지게 하는 데 5만원, '2차' 성매매시 13~20만원 - 서비스 제공 여성은 90%가 30대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명까지 재소개

- 최근 서울과 일산·분당·부천 등 수도권 일대로 번지고 있음(고양시에만 전철역 주변 20여곳이 성업 중, 수도권에만 100여곳)
- 유리방, 전화방, 대화방 등은 모두 '자유이용업'으로 분류되어 신고나 허가 없이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영업이 가능. 전화방 등은 통신법과 풍속영업규제법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전화나 음란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리방은 이마저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 업주를 적발해도 '음란행위는 당사자끼리 이뤄진 일'이라고 발뺌하면 처벌 근거가 없음. 현장을 덮쳐 업주와 여성 간 유착고리를 찾아야만 처벌 가능
- 전화방, 화상방 등은 전화·전기요금에 덜 든다는 이유로 간판과 달리 유리방으로 영업하는 경우 많음(문 앞에 '유리데이트' 등의 문구)

<표 III-38> 남성 전용 뷰티샵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남성 전용 뷰티샵(피부관리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시설 및 설비사항 및 배치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침대 있음
	밀실 또는 밀실형	- 룸 형태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샤워실 있음
	조명도	- 간접조명
	배치물품	- 미용 및 맛사지 물품, 간이침대
	외부와의 차단 형태	- 독립된 공간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담배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마스터베이션과 펠라치오 등 유사 성행위 서비스, 직접적 성관계 - 피부마찰을 통한 피부마사지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성관련 주제로 대화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 접객행위
기타 서비스 내용	- 모공관리 등 피부관리, 손발톱 관리, 눈썹다듬기, 마스크팩 후 얼굴경락 마사지, 코팩, 다리 등 체모 제거, 두피마사지 - 마사지 및 피부관리 1시간, 30분 유사성행위 서비스에 대략 6만원 정도

- 기존 대탈방 서비스에 피부관리 서비스를 접목시킨 것
- ‘스포츠 마사지샵’, ‘피부클리닉’, ‘스트레스 클리닉’, ‘톡크 마사지클럽’ 등 다양한 이름으로 영업

<표 III-39> 성인 PC 체험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성인 PC 체험방(자유업/ 11월부터 등록제로 전환)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개인 밀실 존재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밀실의 경우 어두운 조명
	배치물품	- 안락의자, 흡연물품
	외부와의 차단 형태	- 벽에 의한 공간 구분
	기타 설비	- 컴퓨터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나, 흡연과 음주가 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보통 두 명의 여성이 번갈아 유사 성행위 서비스 제공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여성과 함께 성인용 동영상 감상, 성관련 대화
	성인용 매체물 제공	- 각종 성인용 동영상, 포르노 감상 가능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외곽지역의 경우 이성에 의해 유사성행위 가능
기타 서비스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서울 시내 3~4곳 정도 운영, 서울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 주로 운영
- 가격이 기존 대탈방의 절반 수준
- 특별한 시간 제약은 없으나 보통 1~2시간 이용

<표 III-40> 누드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누드바(자유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별도의 룸이 마련된 곳도 있음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밝고 은은한 색지한 조명
	배치물품	- 테이블 등 성인바 물품
	외부와의 차단 형태	- 개방형이며, 별도의 밀실이 있기도 함
	기타 설비	- 20~25개의 테이블, 업소 중간 무대 설치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제공, 흡연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쇼 후, 지명 종업원이 유사 성행위 서비스 제공 - 종업원과 이용자 간 상의 후, 2차 가능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스트립 쇼, 음란한 형태의 복장착용
	성인용 매체물 제공 등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여성에 의한 접객행위
	기타 서비스 내용	- 유사 성행위 서비스는 대략 10~20분 정도, 팁이 있을 경우 시간 조절 가능 - 맥주는 13~15만원, 양주는 20만원 이상이 공식 가격으로 테이블 당 계산
- 서울 E동,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일대서 성업 중		

<표 III-41> 멀티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멀티방(자유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시설 및 설비사항 및 배치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침대 기능을 하는 널찍한 2인용 소파 - 일부 멀티방에는 침대
	밀실 또는 밀실형	-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밀실(방) 구조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일부 멀티방에는 샤워시설 존재
	조명도	- 은은하고 색시한 조명
	배치물품	- 테이블, 의자, 바형태
	외부와의 차단 형태	-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음 - 유리창이 없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
	기타 설비	- 벽걸이 TV, DVD 플레이어 등 홈시어터 마련, 노래방 기기, 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PC 방마다 1대.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나 흡연가능, 음주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성관련 비디오물, 성인방송 등이 있으며, 이성과 혼숙이 가능함
	성인용 매체물 제공	- 음란 동영상 감상 가능 - 폭력성 높은 게임 가능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서비스 내용	- 노래방, DVD방, PC방 결합한 형태 - 요금은 보통 1인당 1시간에 5000원 - 중고생부터 대학생까지 젊은 층이 주 고객

- 멀티방의 경우, 신중 사업으로 법률이 없어 세무서에 등록할 경우, '스튜디오 녹음실' 명목으로 사업자 등록증 교부
- 대부분의 멀티방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소는 거의 없음, 중고생의 경우 대부분 4~5명씩 단체로 출입·이용

<표 III-42> 호래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호래방(노래연습장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노래방형태로 밀실이 이루어짐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화려한 조명
	배치물품	- 영상셋트, 노래연습기계 등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완전 차단
	기타 설비	- 자판기 등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 제공, 흡연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직접적 신체접촉이나 음란한 분위기 유도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도우미 아가씨에 의해 가능
	성인용 매체물 제공	- 노래 배경화면으로 음란성 연출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남녀 접대부를 손님 성별 따라 방별로 제공
	기타 서비스 내용	- 가라오케의 서비스를 노래방 가격 수준에 제공 - 사실상 단란주점에 가까운 영업 형태 - 호래방 원조업소들은 대부분 오후 시간에 아줌마 층을 대상으로 영업 시작

- 호스트바와 노래방을 줄여 합성한 단어, ‘호래방’
- 노래방이나, 간판과 인테리어 등은 가라오케에 가까움
-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서 남성 도우미 모집

<표 III-43> 인형 체험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인형 체험방(숙박업, 성인용품점 등)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간이침대 또는 일반침실
	밀실 또는 밀실형	- 3평 남짓한 밀실, 숙박실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샤워실 또는 욕실 구비
	조명도	- 다양한 조명, 자가 조절 가능
	배치물품	- 콘돔, 젤 비치, 간단한 영상시설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완전 차단
	기타 설비	- 성인용품 진열장, PC, 리얼돌(인형 5개), 탈부착 유사성기 67개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 담배 구매 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사람과 흡사한 모양의 '리얼돌(real doll)'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자위행위를 도움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섹스젤이나 기구 제공
	성인용 매체물 제공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 감상 가능 - 성인방송 연결됨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서비스 내용	- 1회 이용에 드는 비용은 2만 5천원	

- 광고는 상호 아래 '리얼돌 체험실 완비' 등의 문구 게재
- 밤보다는 낮에 손님들이 더 많이 이용
- 인형체험방은 성인 PC방에서 진화한 단계
- 현재 '음화반포(음란물을 판매한 혐의)' 로 처벌 근거 :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신체의 일부만을 도구로 인정하여 인형은 도구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

<표 III-44> 플스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플스텔(자유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큰 소파
	밀실 또는 밀실형	- 모텔형 밀실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욕조가 겸비된 화장실
	조명도	- 자가 조절이 가능한 다양한 조명
	배치물품	- 콘돔, 휴지통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완전 차단
	기타 설비	- 가정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20여대, 게임타이틀 무료 대여, 100인치가 넘는 대형 스크린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음주, 흡연 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애무 및 유사 성행위, 실제 성행위 가능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성인용 매체물 제공	- 음란 동영상 감상 가능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필요시 호출할 수 있음
	기타 서비스 내용	새로운 형태의 멀티방으로 볼 수 있음

- 오락과 모텔이 결합한 것으로 모텔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
 -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
 - 간판은 모텔이라 적혀 있지 않으며, PC방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속을 피하기 쉬움

<표 III-45> 페티시클럽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페티시클럽(유흥 주점)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밀실 구조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화장실 갖춤
	조명도	- 은근하고 섹시한 조명
	배치물품	- 다양한 의상, 소품 구비
	외부와의 차단 형태	- 개방형태와 완전밀실 구조 2종류가 혼재함
	기타 설비	- 지하철, 사무실, 병원 등 다양한 세트를 사실에 가깝게 설치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 담배 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각종 유사성행위 서비스, 유흥주점과 동일함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복장(스타킹, 제복 등) - 여성종사자의 해당 복장에 맞는 역할극 제공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해 접객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내용	- 인터넷으로 예약 아이디어가 확인되어야 입장을 허가	

- 페티시즘(fetishism)은 '이성의 신체 일부 또는 몸에 지닌 것에 비정상적인 집착을 나타내며 성적 만족을 얻는 일' 을 말함
 - 서울 시내에 약 10여개 정도 성업 중, 이용객들은 주로 30대 남성
 - 페티시 용품을 판매 또는 페티시즘 관련 화상 채팅방까지 성업 중

<표 III-46> 핑크살롱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핑크살롱(자유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시설 및 설비사항 및 배치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긴 소파, 안락소파 등
	밀실 또는 밀실형	- 부쓰 타입으로 된 좌석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어두컴컴한 카페 같은 분위기
	배치물품	- 분위기를 위한 소품 구성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유로 비트 등의 음악이 대용량으로 흐름
	기타 설비	- 디스코텍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 제공, 흡연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주로 입으로 애무 제공 - ‘꽃잎회전’ : 2~3명의 여성 종업원이 유사성행위 서비스 - 일부 업소의 경우, 다양한 성행위 서비스(69서비스, 손가락 삽입, 딥키스 등) 제공 - 구강 성교 등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필요시 제공가능함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이한 유사성接客
	기타 서비스 내용	- 소프트 알코올 음료 제공 - 출근한 여성 사진이 번호가 첨부, 벽에 붙어 있어 손님이 지명 가능(별도 요금 발생) - 입점시 위생상태 체크하고, 손님은 소독액으로 손을 소독하도록 요구
- 해당사항 없음		

<표 III-47> 비키니이발소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비키니이발소(이용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마사지 침대, 안락의자
	밀실 또는 밀실형	- 1인 전용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없거나, 별도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음
	조명도	- 자가 조절이 가능한 어두운 조명
	배치물품	- 마사지 기구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삼 면은 벽으로 막혀있으나, 한 면은 커튼 등으로 구분함, 또는 필요시에만 커튼으로 구분
	기타 설비	- 별도 설비는 없으나 맞사지 오일등 구비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담배 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구강성교 제공, 알몸 또는 인조성기를 이용한 유사성 행위 제공, 직접 삽입 가능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20대 초반의 여성 종업원이 가슴과 허벅지를 드러내는 비키니 차림으로 서비스 제공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 접객서비스
기타 서비스 내용	- 발과 전신마사지는 마사지 기계나 손을 이용하여 이루어짐	
- 이발소라는 말 대신, ‘스포츠 마사지’ 등을 강조		

<표 III-48> 여성전용 애무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여성전용 애무방(특수목욕장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침실 구성
	밀실 또는 밀실형	- 독립된 공간 또는 건물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샤워시설 있음
	조명도	- 자체조절이 가능한 다양한 조명
	배치물품	- 간단한 영상시설, 음향시설 있음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완전 차단됨
	기타 설비	- 오피스텔에서 영업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담배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여성들의 요구가 있을 시, 유사 성행위 및 실제 성행위 서비스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마사지 제공: 오일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성감대를 자극하는 특별 마사지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 접객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내용	- 키 180cm이상, 20대 초중반의 소위 꽃미남 도우미를 고용해 여성 고객에 서비스 - 총 1시간의 서비스로 평균 40만원 안팎의 비용 지불, 각종 서비스 추가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비용

- 오피스텔에 업소를 마련해 회원제 중심의 영업 중, 정확한 업소 수는 알려지지 않음
- 업소끼리 연락망을 개설해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단속 쉽지 않음

<표 III-49> 애인대행 알바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애인대행 알바('스폰' 등)(윤락 행위 등)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해당사항 없음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해당사항 없음
	배치물품	- 해당사항 없음
	외부와의 차단 형태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설비	- 해당사항 없음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접근 남성들과 성행위/ '스폰' 의 경우, 지속적인 성 행위를 조건으로 만남 유지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만남, 여행, 데이트 등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서비스 내용	- 인터넷 교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으로 올림 - '스폰' 의 경우, '스폰카페' 라 불리우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루어짐. - 최근 여고생들도 '스폰' 에 참여 - 여성의 조건(미모, 몸매 등)한달에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요금: '스폰' 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자동차, 그리고 월정액의 돈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해당사항 없음		

<표 III-50> 스트립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스트립방(자유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시설 및 설비사항 및 배치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1인용 안락의자
	밀실 또는 밀실형	- 한 평 남짓한 밀실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붉은 색 조명
	배치물품	- 휴지, 간이테이블
	외부와의 차단 형태	- 문으로 구분되는 밀실, 유리방과 동일한 구조
	기타 설비	- 정면에 널찍한 유리창 하나, 그 안에 의자와 금속 봉이 세워진 구조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음주 흡연 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자위 행위를 도와줄 도우미 제공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음악에 맞춰 '홀딱쇼' 제공(알몸 및 성기 노출 등) - 자위행위 등 성행위 연출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필요시 이성도우미에 의한 자위가능
	기타 서비스 내용	- 30분 이용에 요금 3만원 - 자위행위 도우미 이용시 30분, 3만원
- '홀딱쇼' 와 '대딸방' 시스템을 결합하여 등장		

<표 III-51> 신종 안마시술소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신종 안마시술소(공중위생영업, 목욕장업 등)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침실제공, 마사지 침대별도 설치
	밀실 또는 밀실형	- 완전밀실형
	욕실 또는 샤워시설	- 마사지실에 욕실 및 샤워시설 설치
	조명도	- 은은한 조명 설치
	배치물품	- 간단한 침의, 마사지 기구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완전차단(단속대비 시건장치 설치)
	기타 설비	- 음향장비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상' 서비스 일부 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성매매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성매매 알선
	성인용 매체물 제공	- 대기실에서 성인매체물 시청 가능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 접객 서비스
기타 서비스 내용	-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신 성매매 여성 고용하여 서비스	

- 안마시술소가 아닌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되면서부터 사이비 안마시술소가 사실상 성매매업 소로 변질,
- 단속 피하기 위해 '안마' 라고 간판에 적혀 있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안아' 로 표기

<표 III-52> 성인폰팅업소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성인폰팅업소 - 전화방: 점포형, 무점포형(전화방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해당사항 없음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해당사항 없음
	배치물품	- 전화기
	외부와의 차단 형태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설비	- 해당사항 없음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일부는 폰팅에서 '원조교제' 로 이어짐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전화기를 통해 서로의 신체부위를 자세히 설명, 성적 흥분을 일으켜 섹스에 가까운 행위 서비스 제공 : 통화의 90% 이상이 '폰섹스' 제공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필요시 별도로 만나서 성매매 가능
	기타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음란폰팅' 알바 성행 - 최근, 휴대전화로 무작위 전송되는 음란메세지를 통해 전화 영업 - 평소 휴대전화로 자유롭게 영업하다 청소년 일부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 전화방에서 근무 - 출근하는 경우 시간당 1만원~ 1만 2천원의 기본급에 별도 교통비 지급, 재택의 경우 시간당 5천원의 기본급에 분당 1~200원의 수당 - 03031, 060, 080, 15xx등의 변호서비스는 30초에 약 5~800원의 이용료 부과

<표 III-53> 여관바리업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여관바리업(숙박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시설 및 설비사항 및 배치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일반 연관숙소임
	밀실 또는 밀실형	- 독립된 방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욕실 및 샤워시설 있음
	조명도	- 자가 조절 조명
	배치물품	- 대형 거울 여러 개 설치
	외부와의 차단 형태	- 방 구조
	기타 설비	- 대기실 마련, 대형 TV와 음료수를 뽑을 수 있는 자판기, 의자 등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음주, 흡연 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유사 성행위 및 성행위 서비스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맛사지 서비스 제공
	성인용 매체물 제공	- 성인방송, 성인인터넷, 성인비디오 시청 가능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接客 서비스
기타 서비스 내용	- 8만원을 웃도는 이용 요금 - 낮 시간에도 영업함 -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이용도 빈번	

- 숙박업소에서 매춘행위가 이뤄지는 영업을 말함
- 업소 자체가 독립된 사창가 역할

<표 III-54> 여성전용증기탕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여성전용증기탕(특수목적장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맛사지 전용 침대
	밀실 또는 밀실형	- 완전한 밀실
	욕실 또는 샤워시설	- 욕실 및 샤워실 구성
	조명도	- 은근하고, 어두운 조명
	배치물품	- 맛사지 물품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완전차단
	기타 설비	- 5개 층의 빌라를 통째로 빌려 한 층에 한 개 업소씩 영업, 내부는 일부 가정집과 비슷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음주, 흡연 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호스트 메뉴판' 을 통해 외모의 상태와 서비스로 남성 종업원 중 선택하여 성적 서비스 제공, 시간제한 없음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接客 서비스
	기타 서비스 내용	- 비밀스러운 영업으로 연락이 오면 수시로 장소를 변경, 관찰한 뒤 픽업으로 업소 이동 - 기본 이용요금 60만원, 지인들의 소개가 있을 경우 40만원

- 증기탕 영업은 상당 수 유흥업소 여성들이 출퇴근이나 외부 외출시 자주 이용하는 자가용 콜 기사들이 담당하거나, 그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에 전담비치를 통해 이루어짐

<표 III-55> 누드카페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누드카페(일반음식점영업)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별도의 밀실을 제공함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은은하고 섹시한 다양한 조명 연출
	배치물품	- 파티관련 물품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완전 차단됨
	기타 설비	- 해당사항 없음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 제공, 흡연가능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신체 접촉 및 유사 성행위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여성 접대부를 고용, 가면 누드, 바디 페인팅, 노래자랑, 짝짓기 게임, 진실게임, 왕게임 등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이성에 의한 접객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내용	- 세시간 동안의 파티에 30만원의 입장료 - 직장동료나 친구는 3인 이상 입장할 수 없음, 만취한 상태에서의 입장도 불허	
- 기존 운영하던 카페에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파티를 여는 방식		

<표 III-56> 보도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보도방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5인용부터 크기는 30인용 밀실까지 다양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해당사항 없음
	배치물품	- 해당사항 없음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업주의 연락에 따름
	기타 설비	- 일반적인 노래방 분위기, 음향장비, 다양한 특수 조명 등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 담배 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신체 접촉 요구 시 가능(영덩이, 가슴, 입술 등), 2차 요구시 성매매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남성 고객 대상으로 술시중(술 따르기, 폭탄주 만들기, 대화해주기, 춤추기 등)
	기타 서비스 내용	- 오후 4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영업 -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계속 만남 유지
- 한 달에 2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종업원 고용.		

<표 III-57> 기타 일반음식점 1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기타 일반음식점 1.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해당사항 없음
	밀실 또는 밀실형	- 해당사항 없음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일반적인 음식점처럼 은은한 조명
	배치물품	- 음식배달 기구
	외부와의 차단 형태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설비	- 해당사항 없음
업소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 담배 배달서비스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성매매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즉 배달, 대화 상대 - 고객과 2차를 갈 경우, 노래, 춤 등 장소에 따라 접객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내용	- 고객이 주로 고용주의 가게에 전화로 예약, 고객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	
- 한 달 3백만원 정도 현찰 선지급으로 종업원 고용. 가까운 여관 및 모텔에서 공동 생활.		

<표 III-58> 기타 일반음식점 2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중 및 변종 업소 : 기타 일반음식점 2.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별도의 침실(쪽방)이 있는 경우도 있음
	밀실 또는 밀실형	- 개인 밀실이 따로 있고, 같은 건물에 모텔이 있음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일반적인 음식점 분위기로 은은한 조명
	배치물품	- 해당사항 없음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일반식당과 유사함
	기타 설비	- 해당사항 없음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술, 담배 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2차로, 1대 1 성파트너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도 가능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음란한 춤, 복장 등을 제공함
	성인용 매체물 제공	- 해당사항 없음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저녁시간에 속이 비치는 한복을 입고 손님 접대 - 2차갈 경우, 상황에 따라 노래와 춤 등도 제공
	기타 서비스 내용	- 점심부터 시간대별로 서비스 제공 - 식사 제공 후, 2차시간에 주 서비스가 이루어짐 - 새끼마담이 지속적인 업체관리를 하고, 종업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스폰하는 경우가 많음. - 전화, 또는 식사 대접으로 지속적인 고객 관리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표 III-59> 비디오방 + 만화방 + 체험방 관련 법령 및 유해 영업 사항

신종 및 변종 업소 : 비디오방 + 만화방 + 체험방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내용
업소 시설 및 설비 사항 및 배치 구조 조사	침대 또는 간이침대	- 안락의자
	밀실 또는 밀실형	- 개인용 밀실
	욕실 또는 샤워시설	- 해당사항 없음
	조명도	- 여자의 얼굴아래 상반신부터 집중 조명, 손님 쪽에는 조명이 거의 없음
	배치물품	- 테이블, 티슈, 음료수
	외부와의 차단 형태	- 완전차단됨
	기타 설비	- 해당사항 없음
업소 제공 서비스 사항 조사	술 담배 등 유해 물질 제공	- 담배 제공
	직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유리 칸막이 방 건너에 나체의 여성을 보며 성적인 대화 가능
	간접적인 성 관련 서비스	- 필요시 도우미에 의한 유사성행위 가능
	성인용 매체물 제공	- 성인매체물 획득 가능
	사행행위영업 유무	- 해당사항 없음
	접객행위	- 요구시 서비스가 가능함
기타 서비스 내용	- 단체 기준(3인) 10만원 - 1회 사정까지(1시간 정도)	

4.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분석 결과

1) 유해업소 분석 결과

앞에서 제시된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 분석결과는 <표 III-60>과 같이 요약된다.

<표 III-60> 신종 및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 내용

업소명	시설 및 설비 구조	서비스 내용
호스트바	5~30인용 밀실, 전용화장실, 특수조명(싸이키, 나이트, 서포 트라이트 등)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쇼, 신체 접촉, 요구따라 2차 성매매
나이트클럽	노래방 시설이 갖춰진 밀실, 어두운 조명 및 특수 조명, 홀 상황 중계 모니터	심야영업, 술, 담배, 남녀 고객 만남 주선
티켓다방	일반적 커피숍 분위기, 은은한 조명과 음악	심야영업, 전화 예약 고객에 찾아가 차배달, 간식부름, 성파트너 역할 등
대딸방	1인용 밀실, 욕실, 다양한 조명	24시간, 담배, 신체일부 성서비스(삽입제외)
단란주점	5~30인용 밀실, 전용화장실, 특수조명(싸이키, 나이트, 서포 트라이트 등)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쇼, 신체 접촉, 요구따라 2차 성매매
안마시술소	1인용 밀실, 직간접 조명 목욕 및 샤워시설, 간이침대	심야영업, 담배, 안마, 성파트너 / (신종) '술상' 서비스
보도방	5~30인용 밀실, 노래방 시설, 특수조명, 음향장비 이동수단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신체 접촉, 요구 따라 2차 성매매
일반음식점	일반적 음식점 분위기, 은은한 조명과 음악/개인 밀실(일반 가정집 방), 같은 건물에 모텔	06:00~24:00, 담배, 전화 예약 고객에 찾아가 죽 배달, 성파트너/홀서빙, 노래, 춤, 성매매
성인 전용	1인 전용 노래방 시설, 유리너	담배, 성적 흥분행위를 보여주

비디오방	머 또 하나의 밀실, 어두운 조명, 붉은 조명	어 자위를 도움
여인숙	숙박시설, 샤워실, 어두운 조명, 간접 조명	술, 담배, 직접적 성행위
남성전용 휴게텔	숙박시설, 샤워실, 어두운 조명, 스탠드	술, 담배, 흥분제, 포르노 비디오, 성서비스
비디오방+만화방+체험방	개인 밀실, 유리 칸막이 방	대화, 여성 나체를 보며 자위
프리존	원룸형 밀실, 컴퓨터, DVD	애무 및 유사 성행위, 성관계 가능
대딸방 - 하드방	칸막이로 구분, 방음 대신 잔잔한 음악	마사지, 자위를 돕는 '핸즈 서비스', 성매매
유리방	1평 남짓한 2개의 방(유리로 구분)	성인영화, 성적 흥분행위를 보여주어 자위 도움, 실제 성매매
남성티켓다방	일반 카페	차 배달, 심부름, 성매매
남성전용 뷰티샵	룸형태, 대기실, 샤워실, 대형 거울, 아로마 향로, 간접조명	성관련 대화, 유사 성행위 서비스, 성행위
성인 PC 체험방	밀실, 컴퓨터	성관련 대화, 포르노 감상, 유사성행위(자위도움)
누드바	20~25개 테이블, 업소 중간 무대, 붉은 조명	스트립쇼, 유사 성행위, 요구 시 2차 성매매
멀티방	밀실, 방음, DVD	음란 동영상, 성행위
호래방	노래방 밀실	심야영업, 술, 춤, 노래
인형체험방	3평 정도 밀실, 샤워시설,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 유사성기	리얼돌 이용 자위도움, 음란 동영상
플스텔	모텔형 밀실, 욕실, 게임기	음란 동영상, 술, 담배, 성행위
핑크살롱	부쓰타입 좌석, 어두운 카페같은 분위기	술, 유사성행위, 구강성교
페티시클럽	밀실, 지하철, 사무실 등 사실적 세트	역할극, 유사성행위
여성전용 애무방	오피스텔	마사지, 성매매

애인대행알바 (‘스폰’ 등)	인터넷 교제 사이트 이용	성행위, ‘스폰’의 경우, 지속적 성행위
스트립방	1평 남짓 밀실, 붉은색 조명	자위 도움, ‘홀딱쇼’, 성행위쇼 연출
성인폰팅업소 전화방	1평 크기 밀실, 전화기, 재택 가능	‘폰섹스’ 제공
비키니이발소	마사지 침대, 기구	구강성교, 유사성행위
여관바리업	밀실, 대형 거울, 대기실	24시간, 성매매
여성전용 증기탕	일부 가정집 내부(빌라)	픽업 서비스, 호스트가 성적 서비스 제공
누드카페	기존 카페 활용	심야영업, 술, 신체 접촉 및 유사 성행위, 파티 및 게임
노래연습장	노래방 밀실	도우미 알선, 술, 담배, 유사성 성매매
무도장	-	-
무도학원	-	-
비디오감상실	밀실, 어두운 조명	성행위, 성인용 비디오물 시청
사행행위영업	게임설비	도박, 사행행위 영업
유흥주점	노래방시설, 춤 위한 무대, 밀실	홀딱쇼, 유사 성행위, 요구시 2차 성매매
PC방	컴퓨터, 밀실	여성도우미의 유사 성행위, 사행행위
만화대여업	만화책, 일반 상점 구조	청소년 이용불가 만화 대여
비디오물 소극장업	어두운 조명	성인용 비디오물 감상, 성행위
소주방	일반 음식점 구조, 어두운 조명	술, 담배
이용업	밀실, 샤워시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카페	칸막이 시설, 은은한 조명	유사 성행위, 술, 담배
호프	일반 음식점 구조	술, 담배, 불건전 이성 만남 주선

위의 <표Ⅲ-60>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첫째는 1차적 유해요인으로는 술, 담배 등 유해물질을 제공하거나 성 접촉 또는 유사 성행위 제공, 그리고 성인매체물 접촉 및 감상 등 유해매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2차적 유해요인으로는 1차적 유해요인을 매개하거나 강화시키는 유해요인으로 밀실(칸막이) 등 개인 및 소집단 단위 영업, 심야 또는 24시간 영업, 이성接客 서비스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유해업소 분석 결과에 따른 유해업소의 유해수준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화 된 모형에 따라 신중·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Ⅲ-61>과 같다.

여기서 청소년 문제 유발 가능성은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소 유형화가 일부 불가능하여 유해업소의 유해건수를 종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 종류별 1차 유해요인과 2차 유해요인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61>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분석에 따른 업소별 유해요인 포함정도

구 분	업소종류	1차적 유해요인				2차적 유해요인			종합 건수
		유해 약물	유해 물건	유해 매체	유해 행위	밀실	심야 영업	접객서 비스	
1	단란주점	1		1	1	1	1	1	7
2	유흥주점	1		1	1	1	1	1	6
3	비디오감상실업			1	1	1	1		4
4	노래연습장	1		1	1	1	1	1	6
5	무도학원업								-
6	무도장업								-
7	사행행위영업		1				1		2
8	음성대화(성인폰팅 업소-전화방)	1			1	1	1		4
9	화상대화	1		1	1	1			4
10	퇴폐적안마 (안마시술소)	1	1		1	1	1	1	6
11	티켓다방(남여)				1		1	1	3
12	소주방	1				1	1	1	4
13	호프	1				1	1	1	4
14	카페	1			1	1	1	1	5
15	숙박업(여인숙)			1		1	1	1	4
16	이용업	1			1	1	1	1	5
17	비디오물소극장업	1		1	1	1	1	1	6
18	만화대여업 (만화방)			1			1		2
19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PC방)	1		1	1	1	1		5
20	증기탕	1			1	1	1	1	5
21	영화상영관			1			1		2
22	프리존			1	1	1	1	1	5
23	대딸방	1	1		1	1	1	1	6
24	유리방	1		1	1	1	1	1	6
25	남성전용뷰티샵	1			1	1	1	1	5
26	성인 PC 체험방	1		1	1	1	1	1	6

27	누드바	1			1		1	1	4
28	멀티방	1		1	1	1	1	1	6
29	호래방	1		1	1	1	1	1	6
30	인형체험방		1	1	1	1	1		5
31	플스텔	1		1	1	1	1		5
32	페티시클럽	1	1	1	1	1	1	1	7
33	핑크살롱	1			1	1	1	1	5
34	비키니이발소	1	1		1	1	1	1	6
35	여성전용 애무방	1			1	1	1	1	5
36	에인대행 알바 (신종 보도방)				1		1	1	3
37	스트립방	1			1	1	1		4
38	여관바리업	1		1	1	1	1	1	6
39	여성전용증기탕	1			1	1	1	1	5
40	누드카페	1			1		1	1	4
41	보도방				1		1	1	3
42	호스트바	1			1	1	1	1	5
43	나이트클럽	1			1	1	1	1	5
44	성인 전용 비디오방	1			1	1	1	1	5
45	남성전용 휴게텔	1		1	1	1	1	1	6
업소평균 유해요인 보유수준									4.6

위의 <표Ⅲ-61>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별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의 보유 수준은 평균 4.6개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생활환경 주변의 유해업소의 서비스 내용이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일본의 청소년 유해업소 정책 사례 분석

1. 서론
2. 유해환경의 정의 및 개관
3. 일본의 유해환경(업소) 현황
4.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
5. 청소년 보호조례에 의한 유해물 단속
6. 유해환경의 규제를 위한 관련 조직 등
7. 결론

IV. 일본의 청소년 유해업소 정책 사례 분석

1. 서론

최근 일본의 소년비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흉악하고 폭력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년비행과 문제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사회의 유해환경(업소) 등이 소년비행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종래부터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폭화 등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규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매춘의 온상으로서 이성만남사이트가 주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경우 이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기인한 범죄의 검거 건수는 1,746건으로 2000년도와 비교하여 16.8배로 증가하였다(西村芳秀, 2004 : 48-51). 이와 같은 유해업종은 과학의 진전과 함께 탄생한 유해업소로 새롭게 법적규제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와 다르게 변해가는 유해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유해환경에 대한 국가단계의 포괄적인 규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화의 작업⁶⁾(松井茂記, 2004 : 40)(園田寿, 2004 : 49) 등이 이루어졌으나 반대로 등에 의해 법안으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국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유해환경의 법적규제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유해업소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이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규제 및 관련조직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 자민당의 주도로 표현물의 유통에 관한 규제내용을 포함한 청소년유해사회환경대책기본법의 제정이 진행되어 2004년에 청소년건전육성기본법안 및 청소년유해사회환경자주규제법안으로 2004년 3월에 참의원에 상정되었으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의 문제 등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2. 유해환경의 정의 및 개관

1) 유해환경의 정의

일본에서의 유해환경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유해환경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03년의 일본의 청소년백서 제6장의 사회 환경의 정비에 관한 시책의 제1절에서는 유해환경의 정화 등을 서술하면서 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발전도상에 있는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성적감정을 현저하게 자극하거나 또는 폭력성, 잔학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출판물, 비디오, 컴퓨터소프트, 영화, 광고물, 방송매체 등 및 향락적인 색체가 강한 스낵점, 심야음식점, 게임센터 등은 자주 비행⁷⁾(田宮裕 / 横瀬健二, 2001 : 153-154)(鮎川潤, 2002 : 153-154)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년비행방지대책상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유해한 잡지, 비디오 등의 자극을 받아 외설 및 잔학한 행위 등을 하는 예, 디스코 및 게임센터 등에서 놀기 위한 유흥비의 마련에 비행을 하는 경우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텔레폰클럽, two shot dial영업의 출현에 따라 이러한 영업에 관계되는 여자소년의 성적인 피해 및 문제행동⁸⁾ 등이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는 것 외에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등의 보급에 의해 청소년의 외설영화 등의 유해정보에의 접촉이 우

7) 비행에 대하여 성인의 범죄에 대응하여 소년의 범죄를 비행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비행은 원래 소년이 법률에서 포함한 사회윤리적인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 또는 행장을 총칭하고 있다. 일본소년법 제1조의 비행이 있는 소년이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전체를 통괄한 개념을 말한다. 또한, 일본경찰청에서는 흡연, 음주, 심야배회, 불량교유 등을 하는 소년을 불량행위소년이라고 지칭하여 보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의 소년과 함께 비행소년 등이라고 하고 있다.

8) 문제행동에 대하여 청소년백서 2002년판에서는 그 유형으로서 약물남용, 흉악 폭력적인 비행, 집단따돌림, 교내폭력, 성의 일탈행위, 피해, 폭주족소년, 가정 내 폭력, 불량행위, 부등교, 가출, 자살 등을 열거하고 있다.

려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2 : 207).」

이것이 현재 일본의 청소년행정에 있어서의 유해환경으로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1978년판의 「청소년백서」의 서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2002년의 유해환경의 종류가 이전의 유해환경의 내용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컴퓨터소프트 등의 물품, 디스코, 게임센터 등의 시설, 텔레폰클럽, two shot dial영업 등의 상업서비스,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경유의 외설영화 등의 새로운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접촉하는 유해정보 등이다. 이러한 것은 당시에는 청소년과의 밀접한 환경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유해환경은 정보화, 상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시대의 진전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성만남사이트는 상기의 유해환경의 구체적인 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02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청소년육성추진요강⁹⁾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

한편, 유해환경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정의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985년 3월 사단법인청소년국민육성회의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서두부분에서 「본래 유해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것 자체가 유해한 것과 매체에 의해 유해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개인마사지, 데이트다방, 성인완구점, 소프랜드 등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것 자체로 유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심야음식점, 디스코, 게임센터 등은 그것 자체로는 유해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디스코는 그것 자체가 비행의 장이라고 하기보다도 청소년이 디스코를 출입한 후의 행동이 문제이며 디스코는 단순히 비행에의 접근을 촉진한다는 형태로 비행에 관여한다고 보여고 있다……. (중략)……. 게다가 우리들은 청소년의 연령¹⁰⁾, 정신발달의 정도

9) 청소년육성추진요강(2001년 2월 28일 청소년육성추진회의의 답신, 2002년 10월 21일 최종개정) 청소년건강육성홈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suisin/taikou/mokuj1.html> (2007.6.1)

10) 청소년의 연령에 대하여 청소년백서는 25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예를 들어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다. 각종의 법령에 의한 연령구분은 다양하지만 청소년백서에 있어서

또는 지역의 전통, 문화에 의해 유해하다고 보여 지는 것에 상당한 상이가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유해환경이라는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사)청소년육성국민회의, 1985 : 8).」

이상을 참고하여 개관하면 청소년의 육성이라고 하는 행정의 문맥에서의 유해환경은 발전도상에 있는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비행 및 문제행동을 유인하는 것과 같은 예를 들어 성적감정을 현저하게 자극하거나 또는 폭력성, 잔학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매체, 물건, 장소, 기회, 행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연령, 정신발달의 정도, 지역의 전통, 문화, 시대의 통념 등에 의해 유해라고 판단되는 것은 상이하며,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한 극히 상대적이고 다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대책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규제

현재 일본에서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기능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해환경을 규제한다는 관점에서는 「텔레폰클럽영업의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이며,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를 단속한다는 관점에서는 「독물 및 극물단속법」,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 「아동복지법」, 「각성제단속법」, 「미성년자음주금지법」, 「노동기준법」, 「직업안정법」, 「매춘방지법」, 「대마단속법」, 「미성년자흡연금지법」 등이다. 또한 2가지의 관점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서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

상기의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그 법령의 종류에는 먼저 법률과 조례가

청소년의 연령설정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다.

있고, 법률은 규제하는 대상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는 텔레폰클럽조례와 같은 개별의 대상을 규제하는 것과 유해도서 및 유해행위 등, 복수의 규제대상을 가지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가 있다. 즉,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령으로서 다양한 명칭의 법률과 조례가 병존하고 있으나 복수의 규제대상을 가지는 포괄적인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령은 지방단위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규제대상,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또한 포괄적인 법적규제는 지방의 실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하고 국가의 법률은 보충적 또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지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사)청소년육성국민회의, 1985 : 48-50). 그러나 근래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의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¹¹⁾.

3) 유해환경시책의 현황 -내각부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2001년 중앙청개편에 따라 총무청청소년대책본부의 기능을 내각부로 이전하여 관계성청의 긴밀한 연계에 따라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1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단계의 포괄적인 법적규제의 필요성의 여부,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문제가 새롭게 부각된 것은 2000년 4월이다. 국가단계의 법안작성을 검토한 것은 참의원자유민주당정책심의회와 청소년문제검토소위원회이다. 당시의 위원장이었던 大島慶久의원에 의하면, '1997년에 발생한 고베(神戸)의 연속아동살상사건 이래, 소년에 의한 흉악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배경으로는 소위 사회 환경이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많은 지방의회로부터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에서도 법제화를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이번의 법제화의 계기' 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일본국회에서 중의원청소년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청소년문제에 관한 건(유해환경에 대하여)'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상기의 법안작성의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아동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률'을 준비하는 것이 밝혀졌으나 양자 모두 법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목적으로 청소년육성추진회의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2월에 청소년육성추진회의에서 청소년행정의 기본적인 방침과 당면의 과제, 그리고 중점추진사항 등을 망라한 청소년육성추진요강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점추진사항 제6-3에서는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촉진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동년 10월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에 관한 지침-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접촉하는 유해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회의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 질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 과제로서 ①국가가 취해야 할 사항, ②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에 요청하는 사항, ③관련업계단체 등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 후 지침에 근거한 시책 및 동 지침의 요청사항과 관련된 시책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내각부정책통괄관이 국가(관계성청),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및 관련업계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10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에 관한 지침-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¹²⁾-에 근거한 시책 등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각 문제에 대한 국가, 지방 및 관련업계단체 각각의 시책 상황을 일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당시에 전개되었던 관련시책 상황에 대하여 개관하도록 한다.

(1) 정부의 시책 상황

지침에서는 기본적인 방침 가운데 국가의 시책사항으로서 강조월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것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계몽을 하는 것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성 묘사 및 폭력, 그리고 잔학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등이 청소년의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결과의 수집 및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관련

12) 『「青少年を取り巻く環境の整備に関する指針-情報化社会の進展に対応して-」に基づく取組等の実施状況について』 2002年 10月
<http://www8.cao.go.jp/youth/mokujii.html> (2007.6.1)

업계에 대한 자주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조사 등을 지원할 것, Media Literacy의 향상의 위한 교육의 추진, 법령에 근거한 단속의 촉진 및 관련업계 등과의 의견교환의 실시에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시책사항으로는 ①국민의 의식계몽의 추진, ②조사연구의 실시 등, ③Media Literacy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추진, ④법령에 근거한 단속의 촉진, ⑤관련업계단체 등과의 의견교환의 실시 등의 5항목으로 나눈 시책을 책정하였다. 내각부보고서에서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국가가 시행하여야 할 시책의 5항목에 대하여 각 성청에 따라 그 소관에 포함되는 시책에 관한 추진상황이 일람표로 작성되었다. 일람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에 관한 지침-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에 근거하는 시책 등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기관명	시책상황 (()는 시책사항 1-5의 번호에 대응)
내각부	<p>(1)국민의 의식계몽의 추진 : 7월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대응하는 전국강조월간」 및 11월 「전국청소년 건전육성강조월간」에 있어서 국민의 의식계몽의 추진</p> <p>(2)조사연구의 실시 등 :「제4회 정보화 사회와 청소년에 관한 조사」: 전국의 청소년(12-29세) 및 부모를 대상으로 ①미디어와의 접촉상황, ②휴대전화, PHS의 이용 상황, ③인터넷의 이용 상황, ④정보관 등에 대하여 개별면접조사 및 전문가에 의한 조사, 분석. :「청소년유해환경대책에 관한 조사」: 유해환경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 파악, 검토를 실시하여 청소년유해환경대책에 대한 정보의 수집, 편집, 관계기관 등에 제공</p> <p>(5)관계업계단체와의 의견교환의 실시 :2001년 10월 및 2002년 5월에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와 의견교환을 실시하여 판매점에 대한 구분 진열, 대면판매의 지도의 철저를 요청</p>
경찰청	<p>(1)국민의 의식계몽의 추진 : 도도부현경찰에 있어서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소년을 지키기 위한 모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자용 교재 및 수강자용 설명서 작성.</p> <p>(2)조사연구의 실시 등 :「인터넷상의 소년의 유해컨텐츠대책연구회의 개최」: 2001년(소년에게 악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터넷상의 위법, 유해컨텐츠의 실시 및 그것과 소년을 분리하기 위한 대책연구의 개시), 2002년(핫라인 등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등에 의한 유해컨텐츠대책의 진행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청소년문제조사연구회」: 2001년(청소년의 생활, 관념 등에 관한 조사연구), 2002년(청소년의 휴대전화 및 이성만남사이트의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p> <p>(4)법령에 따른 단속의 촉진 : 내외의 각종회의개최에 의해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사범의 단속의 촉진, 아동포르노영상아동검색시스템(CPASS:Child-Pornography Automatic Searching System)의 개발에 의한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단속의 촉진</p>

	<p>:도도부현경찰에 있어서는 풍적법,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 및 청소년보호 육성조례위반의 검거 차는 각각 940명, 1,026명, 1,656명. 또한 「소년을 지키는 환경정화중점지구」로 2001년 중에 297지구, 2002년 중에 347지구를 지정</p>
총무성	<p>(3)Media Literacy향상을 위한 교육의 추진: 방송 분야에 있어서 Media Literacy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교재를 공모에 의해 개발하여 2001년 7월부터 전국의 종합통신국에 있어서 대출</p>
법무성	<p>(1)국민의 의식계몽의 추진: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 강조월간(7월)을 중심으로 유해도서 등의 판매자숙요청 및 회수와 처분</p>
문부과학성	<p>(1)국민의 의식계몽의 추진: 2001년 10월 「전국청소년건전육성강조월간의 실시에 대하여」, 2002년 6월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대응하는 전국강조월간의 실시에 대하여」를 각 도도부현교육위원회 등의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송부</p> <p>(2)조사연구의 실시 등</p> <p>「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001년(「아동과 TV」에 관한 NPO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보고서-미국을 중심으로-, TV방송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NPO 등의 시책에 대하여, 학식경험자 등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진 실시조사)</p> <p>2002년: 아동과 인터넷의 문제에 대하여 조사연구, 사단법인 전국PTA협의회에 의한 2002년 2월 실시의 TV방송전국모니터링조사를 지원,</p> <p>(3)Media Literacy향상을 위한 교육의 추진</p> <p>:가이드북, 지도사례집을 작성하여 각 교육위원회, 학교에의 배포, 2002년 3월 정보윤리에 관한 교내연수용교재를 작성하여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 배포.</p> <p>교육양성과정에 있어서 정보기기의 조작 등 과목의 필수화를 2000년에 의해 고등학교의 정보의 교재에 대하여 과정인정을 실시하여 영상미디어 등에 관한 지도법학습의 기회의 확대를 기획, 2000년도는 188교, 2001년도 107교를 새롭게 인정</p> <p>(5)관계업계단체 등과의 의견교환의 실시</p> <p>:2002년 2-3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청년회의소, 경제단체연합회 등에 대하여 TV 방송스폰서에 있어서의 이해 및 협력요청</p>
경제산업성	<p>(5)관계업계단체 등과의 의견교환의 실시</p> <p>:2002년 5월에 「2002년도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대응하는 전국강조월간에 대하여」를 관계업계단체에 주지 및 배려의 의뢰.</p>

(2)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상황

지침에서는 그 기본적인 방침 가운데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효과적인 운용과 각 법령에 근거한 단속의 철저 및 주민 등에 의한 각종환경정화활동의 추진을 도모를 요청하였다. 구체적인 요청사항으로서 ①유해도서류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지정에 참고로 할 것, ②판매점 및 대여점에 있어서 각 지역의 조례에 근거하여 다른 소프트와 구분 진열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 ③풍적법,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 및 46의 도도부현 등에 있어서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근거한 법령위반의 단속을 철저히 할 것, ④주민 등에 의한 각종의 환경정화활동을 보다 강화 추진할 것 등의 4가지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4가지의 항목의 요청사항 이외에 독자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⑤그 외의 시책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책상황의 보고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시책의 구체적인 예를 보고하는 것, 시책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고하는 것, 4가지의 항목의 요청사항 가운데 선택부분 만을 보고하는 것 등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시책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체의 요약하여 소개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도도부현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그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유해도서류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지정에 참고하는 것으로는 나가노(長野)현을 제외하고 46의 도도부현의 조례 모두가 도서류에 대한 유해지정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사의 지정에 의해 유해도서류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에 있어서는 지사는 유식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에 자문하여 도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조례의 대부분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기술이 있는 페이지수가 일정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 또는 지정하지 않고 이것을 유해도서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동경도와 청

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나가노(長野)현을 제외한 45도부현의 조례가 이에 해당하며 이것을 포괄규정이라 한다. 또한 지사에 의한 유해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 의한 유해지정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도 있으며 2002년 현재 26의 도도부현의 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공통하는 내용으로 유해지정요청규정 또는 제도가 있는 것(青森, 埼玉, 千葉, 東京, 神奈川, 石川, 大阪, 奈良, 岡山, 福岡), 포괄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新潟, 兵庫), 포괄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또는 개별지정을 하지 않는 것(山口, 高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매점, 대여점에 있어서 각 지역의 조례에 근거하여 다른 소프트웨어의 구분 진열 등 그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는 대부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보고내용에 의하면 40의 도도부현의 조례가 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의 빈도, 출입조사를 하는 자 등에는 상이점이 있으나 판매점 및 대여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업자에게 요청 및 지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동경, 이시카와현(石川県), 야마구치현(山口県)에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2001년 또는 2002년부터 구분 진열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종합적으로는 2002년 9월 현재 42의 도도부현의 조례가 구분 진열 등의 규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풍적법,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 및 46의 도도부현 등에 있어서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근거한 법령위반의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한 보고내용에 따르면 42의 도도부현이 이에 해당한다. 2002년 7월 말까지는 상반기에 있어서 법령위반자의 검거 수만을 보고하는 것, 단속강화의 구체적인 예까지 보고하는 것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공통하는 것으로는 유해도서류를 수납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의 단속이다(青森, 宮城, 千葉, 静岡, 滋賀, 広島, 福岡, 熊本). 또한 단속의 강화

의 대상 및 법령위반 예로서 이성만남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東京, 神奈川, 新潟, 福井, 京都, 奈良, 岡山).

마지막으로 주민에 의한 각종환경정화활동을 보다 강화추진에 대한 보고 내용으로서는 43의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환경정화모니터(岩手, 香川), 청소년육성추진위원(山形, 埼玉), 청소년육성모니터(山形), 유해환경모니터(富山), 사회환경정화추진원(京都), 청소년지도원(宮城) 등의 활동실시기관을 설치하여 유해환경의 조사 및 가두지도활동 등의 환경정화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에 의한 시책으로서 7월의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대응하는 전국강조월간 및 11월의 전국청소년건전육성강조월간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에의 환경정화활동의 추진 등도 열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강화월간을 설정하여 환경정화를 위한 각종의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北海道, 長野, 大阪, 奈良, 和歌山, 愛媛, 沖縄).

그 외로 동경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수도권의 7개 도도부현시(東京都, 神奈川県, 埼玉県, 千葉県, 横浜市, 川崎市, 千葉市)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선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의 정보에 대하여 관련업계에 의한 단속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종래의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시책을 넘은 활동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3) 관계업계단체에 의한 시책상황

지침은 그 기본적인 방침 가운데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각 관련업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함과 동시에 유해한 정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주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각 관련업계단체 등에게 공통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였다. 즉, ①정보 등의 발신 및 제공 또는 수신 및 향유의 단계에서 특정의 정보 등의 제한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의 영향을 배려한 발신 및 제공에 노력하는 것과 정보의 유해단계방법 또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

자 측에서 차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②정보 등의 발신 및 제공 또는 수신 및 향유의 단계에서 특정의 정보 등의 제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의 발신자 측에 의한 자주규제에 의해 유해단계방법에 기초한 발신 등을 철저히 하며 고충처리에 노력할 것, ③청소년의 Media Literacy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지침에서는 또한 당시까지 이미 관련업계단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자주규제의 시책 상황¹³⁾에 따라 ①TV방송, ②인터넷, ③가정용게임기 소프트웨어, ④비디오소프트, ⑤개인용컴퓨터소프트, ⑥출판물, ⑦영화 등의 7가지의 미디어 이외의 관련업계단체에 대하여 자주규제추진을 위한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른 관련업계단체의 시책상황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13) 『「青少年を取り巻く環境の整備に関する指針-情報化社会の進展に対応して-」に基づく取組等の実施状況について』별표 2.

<표 IV-2> 관련업계의 자주규제의 상황14)

관계업계	내용 등
매스컴 전반	신문, 방송, 출판, 영화, 광고탑 및 레코드의 각 업계에 의해 구성된 매스컴윤리간담회전국협의회가 설치되어 매스컴과 청소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협의회 등의 실시
출판	①출판윤리협의회가 유해출판물의 취급에 대하여 독자의 자주규제조치를 실시, ②출판문제간담회(성인오락잡지 등을 간행하는 31사에 의해 조직)가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감안한 자주규제의 편집윤리강령을 규정, ③노골적인 성 묘사를 내용으로 한 소년소녀잡지, 단행본 등의 출판물에 대하여 판매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지조치의 실시, ④청소년만화 및 청소년잡지마크의 표시, ⑤성인코너의 설치, ⑥대면판매의 실시
영화, 비디오, 컴퓨터소 프트 등	①영화윤리활동의 자주관리기관으로서 영화윤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중의 심사부문이 「영화윤리규정」에 따라 영화의 심사를 실시(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R-18(18세 미만입장금지), R-15(15세 미만 입장금지), PG-12(12세 미만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반이 요구)로 지정), ②비디오소프트윤리활동을 위하여 일본비디오윤리협회(업계의 자주심사기관으로서의 조직)에 있어서 「영상소프트윤리규정」을 만들어 독자적인 심사를 실시(성인지정(18세미만 관람, 대출, 판매금지), R지정(15세 미만 관람, 대출, 판매금지), 일반의 3가지로 구분하여 지정), ③그 외, 일반인용의 비디오 및 극장미공개의 비디오관계에서는 영상윤리협의회(영화윤리관리위원회와 일본비디오윤리협회에서 구성), 개인컴퓨터관계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 가정용게임소프트웨어관계에서는 컴퓨터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가 각각 윤리강령 등을 규정
방송	①일본방송협회 및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은 시청자로부터의 청소년에 대한 방송대책 및 방송내용에의 의견을 받아 제3자 기관인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주적인 대응을 실시. 또한 Media Literacy의 향상을 위한 방송의 제작 및 방송의 실시, ②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에서는 방송시간대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시청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기준을 신설하여 적어도 주 3시간 청소년이 보아야 하는 방송을 결정, 발표하는 등 방송과 청소년문제에의 대응책을 공표, ③CS디지털방송에 있어서는 사단법인 위성방송협회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인용 방송기준을 제정함과 동시에 매년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연구회 및 강연회를 개최, ④CS디지털성인

14) 정부보고 제2회 http://www.mofa.go.jp/mofaj/gaiko/jido/0111/11a_027.html 참조(2007.5.21)

	방송윤리위원회(성인용 방송을 제공하는 CS방송사업자에 의해 조직)에서는 방송윤리규정 및 방송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자주심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부회를 설치하여 윤리기준의 유지 및 고양.
광고	각 관계단체가 자주규제기준을 각각 설정하고 광고주, 신문, 방송, 출판, 광고 제작, 광고업의 각사가 공동하여 일본광고심사기구(JARO)를 설립하여 청소년 문제의 관점을 포함한 광고에 대한 문제의 처리 등을 실시.
홍행	①전국 흥행환경위생동업조합연합회(영화, 연극, 연예의 각 업종으로 결성)가 일반용 영화와 PG-12, R-15, R-18 제한부 영화의 병행상연의 금지, 제한부 영화의 상연에 있어서 조합에서 규정하는 주의서의 게시 및 제한당사자의 출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자주규제준수사항을 제정, ②영화산업단체연합회(영화관계단체에 의해 조직)가 제한부 영화에의 제한 해당자의 관람 및 18세 미만의 자의 심야홍행관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심야홍행 등에 관한 신청」을 제정.
노래방	일본 가라오케스튜디오협회가 청소년의 이용시간의 제한, 미성년의 음주, 흡연 방지, 약물의 남용방지, 잠금장치의 불설치, 외부로부터 실내를 볼 수 있는 창 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자주규제기준의 제정 및 전국각지에서 관리자 등이 모여 강습회 등을 실시.
인터넷	①사단법인 텔레콤서비스협회가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에 관계되는 사업자의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②전자네트워크협의회가 정보의 수신자 측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교육현장 등에 배포

3. 일본의 유해환경(업소) 현황

일본에서의 유해업소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해업소를 일정 정도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술과 같이 유해환경이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대상인 풍속영업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먼저 본 법률은 선량한 풍속과 깨끗한 풍속 환경을 유지 및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풍속영업 및 성풍속관련특수영업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등의 제한 및 연소자가 이러한 영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의 건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법률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영업형태로는 법률 제2조에 열거되어 있다. 즉 제1호 영업은 접대음식영업의 형태로 고객에게 접대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서의 카바레, 제2호 영업은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접대로서 유흥 또는 음식을 하도록 하는 영업으로서의 요리점 및 사교음식점, 제3호 영업은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춤을 추도록 하고 음식을 하도록 하는 영업으로서의 나이트클럽, 제4호 영업은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춤을 추도록 하는 영업으로서의 댄스 홀, 제5호 영업은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해 객석에서 조명도 10룩스 이하로 영업하는 것으로서의 저조도 음식점, 제6호 영업은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음식을 하도록 하는 영업으로 외부로부터 관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한 그 넓이가 5평방미터 이하인 객석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으로서 구획석음식점, 제7호 영업은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기를 하도록 하는 영업으로서 마작 및 파친코, 제8호영업은 유기설비로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서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슬롯머신 및 텔레비전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풍적법 제2조)

한편, 이러한 풍속영업과는 달리 성풍속관련특수영업으로서는 점포형성 풍속특수영업(풍적법 제2조의 6),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풍적법 제2조의 7),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풍적법 제2조의 8),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풍적법 제2조의 9) 및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풍적법 제2조의 10) 등이 있다.

먼저, 점포형성풍속영업으로서는 욕장업의 시설로서 개인실을 설치하여 당해 개인실에 있어서 이성의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소프랜드, 또한 개인실을 설치하여 당해 개인실에서 이성의 고객에게 성적호기심에 따라 그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의 점포형폐션헬스,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를 보여주는 흥행 그 외의 선량한 풍속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한 흥행의 용도에 제공하는 흥행장으로서의 흠쳐보기 실, 개인실 비디오, 스트립 극장, 오로지 이성을 동반한 고객의 숙박용도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모텔 및 리브호텔,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외의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서 성인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으로서는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의 숙박용도에 제공하는 시설에 있어서 이성의 고객의 성적호기심에 응하여 그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파견형폐션헬스,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객의 의뢰를 받아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등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영업으로서의 성인비디오 등 통신판매영업 등이 해당한다.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이란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성적인 행위를 표시하는 장면 또는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의 영상을 보여주는 영업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당해 영상을 전달하는 것에 의해 영업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업으로는 인터넷 이용화상배송업이 해당한다.

한편,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이란 점포를 설치하여 오로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적인 성적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교재(대화를 포함)를 희망하는 자에게 대화(전언에 의한 것과 음성에 의한 것)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성을 소개하는 영업으로 그 일방의 자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대화의 신청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점포 내에 들어온 다른 자에게 연결하는 것에 의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영업으로는 텔레폰클럽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이란 오로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적인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성을 소개하는 영업으로 그 일방의 자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대화의 신청을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여 다른 일방의 자에

게 연결하는 것에 의해 영업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텔레폰 클럽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으로서의 소프랜드, 점포형폐션헬스, 홈쳐보기, 개인실 비디오, 스트립극장, 모텔 및 러브호텔과 성인숲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으로서는 파견형폐션헬스, 성인비디오 등 통신판매영업, 인터넷이용화상배송업,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으로서의 텔레폰클럽,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으로서의 휴대폰 텔레폰 영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브루세라영업 등의 신종업종 등이 유해업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전후의 풍속 환경의 역사와 전술한 각 영업소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1) 일본의 풍속영업의 역사

일본의 전후의 풍속영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각 풍속영업의 발생과정을 고려하여 전후에 이루어진 풍속영업형태에 대하여 특수위안시설협회, 아카센(赤線) 및 아오센(靑線), 터키탕(トルコ風呂), 핑크살롱(ピンクサロン), 호테토르(ホテトル), SM클럽 등에 대하여 제시한다.

(1) 특수위안시설협회(RAA)

특수위안시설협회(RAA: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는 전후에 설치된 주둔군병사를 위한 위안소이다. 즉, 일본내무성이 「외국군주둔지에 있어서 위안시설에 관한 내무성경보국장통첩」을 각각의 현에 발령하여 이를 근거로 주둔군대책의 일환으로서 설립된 시설이다¹⁵⁾. 이러한 시

15) RAA가 GHQ의 명령으로 설립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18일에 ‘일본은 패전했으므로 여성은 미국병사에게 강간당한다.’ 라는 등의 유언비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내무성의 점령정책으로서 ‘외국군주둔지에 있어서 위안시

설에서의 근무하는 여성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성의 방과제¹⁶⁾」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개모집에 의해 지원한 일반여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본래 풍속산업종사여성을 고용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적은 관계로 「신일본여성을 구함, 숙사, 의복, 식료 모두 지급」 등의 광고 문구를 이용하여 긴자(銀座) 등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또한 신문광고 등을 이용하여 일반여성을 모집하였다. 상세한 업무내용 등이 광고 등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보고 모인 여성의 대부분은 성매매의 경험이 없었던 자로 업무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스스로 포기를 하였으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전쟁미망인 및 아동이 많았던 시대배경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단시간에 1,300여명의 여성¹⁷⁾이 협회에 등록하였다.

이후 RAA는 1946년에 미국의 국제연합대표이며 여성운동가이기도 한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의 부인인 Anna Eleanor Roosevelt의 반대와 미군에서의 성병의 만연 등을 이유로 폐지¹⁸⁾되었으나 대부분의 종업여성은 아

설에 관한 내무성정보국장통달’을 각 현에 발령한 것이 시초이다. 특수위안시설 협회는 내무성이 중심이 되어 점령군대책으로서 반관반민(5,000만 엔씩 출자)으로 설립되었다.

- 16) 당시 대장성관료였던 池田勇人是 일본 정부 측을 대표하여 설립에 참가한 자로, 이후에 당시를 회상하며 ‘1억의 순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고 하였으며, 경찰소도 일본내무성의 ‘양가의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라는 명분에 따라 RAA의 설립을 반대할 수 없었다.
[http://d.hatena.ne.jp/keyword/\(2007.5.26\)](http://d.hatena.ne.jp/keyword/(2007.5.26))
- 17) 이러한 위안시설에 근무하던 여성들을 아메판(アメパン: 미국상대의 판판(パンパン:매춘부))라는 속어로 불리어졌다. 판판이란 패전에 의해 노동력으로서의 성인 남성이 대부분 사망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정에서는 생활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성을 매매하는 여성이 급증하였다. 특히 주둔군상대의 매춘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였던 일본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매춘행위보다 그 대가가 높았다. 또한 빈곤가정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에게 매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인 중에는 이와 같은 여성을 매도하였고 특히 판판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여성을 경멸하는 음어로 사용되었다(일본인 상대의 매춘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음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판판이라는 용어는 불특정 다수의 미군을 고객으로 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반하여 상급 장교 등의 특정한 상대에 대해서만 매춘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온리(オンリー: 영어의 only) 또는 온리상(オンリーさん)이라고 불렀다.
[http://ja.wikipedia.org/wiki/\(2007.5.26\)](http://ja.wikipedia.org/wiki/(2007.5.26))
- 18) 1946년 1월 20일 GHQ는 공창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하여 ‘공창의

무런 보상 등을 받지 못한 채 또 다시 다른 성매매업소 등으로 진출하였고 한다. 1946년 11월 14일 일본정부는 공창제도폐지 후의 시책으로서 사창의 단속 및 발생의 방지보호대책을 결정하고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풍속영업을 인정하는 시책을 취하였는데 이것이 이후의 아카센(赤線:구공창지역)과 아오센(靑線:사창지역)의 탄생으로 이어져 현재의 풍속영업지역으로 정착되었다¹⁹⁾.

(2) 아카센(赤線) 및 아오센(靑線)

아카센이란 1958년 이전에 공공연하게 매춘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아카센은 GHQ²⁰⁾에 의한 공창폐지지령(1946년)의 발표부터 매춘방지법의 시행(1958년)기간 동안 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을 호칭하는 은어이다. GHQ는 일본의 민주화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창제도(貸座敷, 창기)를 부정하며 유곽 등을 폐지하였다. 즉, 여성의 자유의사에 의한 매춘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으나 여성을 선불금 등으로 구속하는 인신매매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동경의 요시와라(吉原), 신주쿠(新宿二丁目) 등에서는 카페라는 명목으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공공연하게 매춘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오사카(大阪) 등에서는 요정

폐지에 관한 각서'를 공표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발표에 앞서 1946년 1월 12일, 공창제도폐지에 관한 내무성통달을 발표하여 1946년 1월 15일 공적조직으로서의 RAA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통달의 내용은 '공인유곽 및 창기는 폐업하지만 그러한 폐업 자에 대해서는 사창으로서 가업계속을 인정하고 공창제도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공인유곽지역을 그대로 사창목인지역으로서 인정하였으므로 완전히 RAA의 활동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또한 1946년 3월 10일 GHQ는 주둔군 내에 성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병사의 RAA시설에의 출입금지를 명령하고 일본정부도 1946년 3월 26일, 전국경찰소장 앞으로 '주둔군의 대합실, 접대소, 위안소지역출입금지에 관한 내무성보안부장통첩'을 발령하는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 졌으나 RAA가 최종적으로 해산된 것은 1949년 4월에 이르러서다. [http://d.hatena.ne.jp/keyword/\(2007.5.26\)](http://d.hatena.ne.jp/keyword/(2007.5.26))

19) RAA의 역사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6.2\)](http://ja.wikipedia.org/wiki/(2007.6.2))

20)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란, 제2차 세계대전종결에 따라 포츠담선언의 집행을 위하여 일본에서 통치권을 행사한 연합국군의 사령본부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GHQ라는 통칭이 사용되고 있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아카센이란 용어는 전쟁 전부터 일본경찰에서 유곽 등의 풍속영업이 인정되던 지역을 지도에 붉은 선으로 표시하였던 것에 따라 이후에 아카센의 어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종전 후에는 잡지 등에서 특수음식점 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아카센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매스컴 및 매춘방지법이 시행된 1950년대 이후이다.

동경의 경우에는 카페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층은 댄스홀 및 안내소 등이 있었고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은 2층의 개인실에서 숙식을 하였는데 이 장소가 영업장소를 함께 겸하고 있었다. 고용된 여성은 영업점 앞에 서서 고객에게 말을 걸거나 이용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매춘방지법의 시행 후 지금까지 아카센 내에서 영업하던 점포들은 바(bar) 및 스낵 등의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여관 및 요정 혹은 러브호텔 및 영화관, 아파트 등으로 업종을 바꾸어 계속적으로 비공식적인 풍속영업을 하였다.

한편, 아오센(靑線)이란 일본에서 매춘방지법시행 이전에 비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기의 아카센과 같다. 그러나 아카센은 특수음식점으로서 매춘행위를 허용 또는 묵인하는 지역이었지만 아오센은 특수음식점의 영업허가 없이 일반의 음식점의 영업허가인 상태로 비합법적으로 매춘행위를 하던 곳을 지칭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오센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음식점으로서 술 및 요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식당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여자종업원 및 작부 등을 고용하여 그 여성들에게 비합법적인 매춘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일반여관으로 위장하여 매춘을 하는 업자도 있었다. 이러한 음식점 및 여관 등이 운집한 장소의 대부분은 아카센지역의 주변이었다. 아카센지역에서 특수음식점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풍속영업법에 의해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아오센지역의 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보건소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하였다.

매춘방지법 시행 후의 아오센지역은 음식점으로서 전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매춘을 동반하지 않는 성풍속점으로서 전환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의 공창과 사창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46년 1월 21일에 GHQ로부터 「일본에 있어서 공창제도폐지에 관한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의 발표에 따라 1947년 1월 15에 「부녀에 매음을 하게 하는 자 등의 처벌에 관한 칙령(칙령 제9호)」이 시행되어 공창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관리매춘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매춘이라는 것을 전제로 창부(매춘부)가 전항하기까지의 잠정조치라는 형태로 특수음식점으로서 지역(아카센지역)에 한하여 매춘이 허용 또는 묵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창가=아카센), (사창가=아오센)이라고 인식되었으나 어디까지나 허용과 묵인으로서 공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두 곳 모두 사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58년 4월에 매춘방지법이 벌칙적용의 단속에 의한 전면실시가 되었어도 일부의 아카센 및 아오센의 업자 등이 형태를 변경하여 비합법적인 영업을 계속하였다. 일부의 잡지 등에서는 일반인에 의한 매춘을 바이센(白線), 폭력단이 운영하는 곳을 크로센(黑線), 전화를 이용하여 매춘을 하는 것을 오우센(黃線) 혹은 엘로우라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용어는 정착되지는 못하였다²¹⁾.

(3) 터키욕조(トルコ風呂)

개인실의 사우나탕으로서 성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초기에는 성교유사행위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여성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하는 영업소가 많아지며 단속하는 경찰 측에서도 묵인하게 된 곳으로 1984년에 소프랜드로 개칭된 풍속점이다. (상세한 내용은 소프랜드에서 기술)

21) <http://ja.wikipedia.org/wiki/>(2007.5.26)

(4) 핑크살롱(ピンクサロン)

1960년대에 새롭게 나타난 핑크살롱은 접객의 여성이 음료 및 주류 등을 남성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성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일본 독자의 풍속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핀사로(ピンサロ), 사롱(サロン)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변화가를 중심으로 일본전국에 보급되어 왔다. 대부분의 영업소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제1호 영업 혹은 심야에 있어서 주류제공음식점영업의 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다²²⁾.

(5) 호테토르(ホテトル)

호테토르란 러브호텔을 이용한 관리매춘적인 성격이 강한 영업시스템을 말한다. 고객이 주로 공중전화에 붙여있는 광고전단지를 보고 러브호텔로부터 직접전화를 하고 영업소는 러브호텔에 여성을 파견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한다. 고객으로부터 여성에게 지불된 대금의 일부는 성행위 후 여성이 영업소에 되돌아가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점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하였다.

풍속영업법위반의 무허가영업이 대부분으로 직접 러브호텔에 여성을 파견하기 때문에 관리매춘(매춘알선행위)이 되므로 단속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영업소의 전화번호를 계속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량적으로 부착된 공중전화박스의 전단지가 주위의 환경을 해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되어 공중전화박스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부착하는 자를 체포하여 영업자를 검거하기도 한다.

전단지에 대한 단속이 엄하기 때문에 무점포형의 호테헤르(ホテヘル) 및 델리버리(デリヘル) 등 합법적인 업태로 성교행위가 없는 성풍속특수영업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또한 유사한 업종에 점포를 가지고 여성과의 성교 목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데이트클럽도 있었으나 이러한 업종도 매춘알선행위로서 단속대상이 되었으므로 최근에는 대부분이 사라졌다.

22) 이러한 영업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5.26)

호테토르라는 어원은 1980년대에 당시의 터키탕(トルコ風呂)과 같은 성적 서비스를 일반의 맨션 등에서 하는 만토르(マントル: 맨손토르코의 약어)라는 업종이 출현하였고, 이후에는 호텔에서라도 동일한 성적 서비스를 하는 호테토르가 만토르를 대신하게 되었다. 터키탕은 개칭되어 소프랜드로 변화했으나 만토르가 소멸한 후에도 호테토르의 명칭은 사용되고 있다²³⁾.

(6) SM클럽

SM클럽이란 고객의 희망에 따라 SM²⁴⁾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러한 SM클럽은 일반적으로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점의 영업형태의 하나에 해당한다. 즉,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풍속점의 한 형태이다.

법률 제2조 제1항의 6의 2에서는 「개인실을 설치하여 당해 개인실에 있어서 이성의 고객의 성적호기심에 따라 그 고객에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 가운데 전호에 해당하는 영업(즉, 소프랜드)을 제외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SM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업종은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실을 설치하지 않고 법률 제2조 제1항의 6의 6의 「전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점포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성풍속에 관한 영업으로서 선량한 풍속 및 깨끗한 풍속 환경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으로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영업하는 것 및 사람이 모이는 장소만을 제공하여 점포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성풍속특수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로서 영업하는 곳도 있다²⁵⁾.

23) 이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5.26)

24) SM이란 sadism과 masochism적인 성적취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도착적인 성적행위의 전반을 포함하는 문화양식군의 총칭이다.

25) 이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SM>(2007.5.26)

2) 일본의 유해업소의 종류

(1)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먼저 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이란 욕장업(공중욕장업(1948년 법률 제 139호)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중욕장을 업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설로서 개인실을 만들어 당해 개인실에 있어서 이성의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 개인실을 만들어 당해 개인실에 있어서 이성의 고객의 성적호기심에 따라 그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를 보여주는 흥행, 그 외의 선량한 풍속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흥행의 용도에 제공하는 흥행장(흥행장법(1948년 법률 제137호)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경영하는 영업, 오로지 이성을 동반한 고객의 숙박(휴식을 포함, 이하 동일)의 용도에 제공하는 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정령에서 규정하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가지는 개인실을 설치한 것에 한함)을 만들어 당해 시설을 당해 숙박에 이용하게 하는 영업, 점포를 만들어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외의 물품으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영업, 점포를 만들어 영업하는 성 풍속에 관한 영업으로서 선량한 풍속, 깨끗한 풍속 환경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으로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6)

여기에 포함되는 풍속영업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다. 즉, 소프랜드(ソープランド), 패션헬스(ファッションヘルス), 스트립 극장, 러브호텔, 성인숍(アダルトグッズショップ)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소프랜드와 패션헬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프랜드(ソープランド)

소프랜드란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실에 여성이 남성고객에 대하여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욕조」를 말한다. 소프랜드라는 용어는 비교적 새롭게 형성된 명칭으로 이전에는 「터키욕조(トルコ風呂)」라 불리었다. 이와 같은 업종이 일본에 등장한 것은 1932년에 발표된 소설 「상해(潢光利一)」에서 「터키욕조」에 대한 기술을 볼 수 있어 여성이 남성고객에 대하여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욕조가 당시에 상해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것이 일본에도 알려져 있었다. 터키욕조란 본래 중동지역의 전통적인 공중목욕탕에서는 스팀사우나가 일반적으로 그 중에는 때를 밀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20세기 초까지 중동의 대국이었던 터키의 명칭으로 일본에 소개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래 중동에서는 남성고객에게는 남성이 여성고객에게는 여성이 때 등을 밀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것이 변형된 형태로 일본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일본에 있어서 「터키욕탕」이라 불리는 개인욕실의 점포가 설치된 것은 1951년 4월 1일 동경의 히가시긴자(東銀座)에 개점한 동경온천이다. 본래 여기에서는 사우나를 중심으로 여성종업원에 의한 마사지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원칙적으로 여성은 의복을 착용하며 성적인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실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동종업자 등의 일부는 점차적으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1958년에 매춘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는 폐지되었으나 기존의 성매매업소가 새롭게 터키욕탕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소에서는 손을 사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마사지하는 등의 성교유사행위 및 직접적인 성교행위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터키욕탕은 성풍속점의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대중화되었으나 일본에 체류 중인 터키유학생들에 의해 자국의 명칭이 성풍속점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결국 1984년 동경대학에 유학 중인 터키유학생이 후생성에 명칭변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후생성의 지도를 받은 「특수욕장협회」가 명칭의 변경을 공모하게 되었고 1984년 12월 19일, 전국적으로 「소프랜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소프랜드는 법해석적으로는 「점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은 입장료뿐이

며 개인실 입실 후에 여성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서비스로는 개인실에서 남녀 간의 연애감정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건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합법적인 성풍속영업점(패션헬스, 핑크살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성교행위는 규제되며 성교유사행위만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소프랜드에서는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춘방지법에서는 단순매춘에 대한 벌칙이 없으므로 고객과 여성을 적발할 수 없으므로 경영자 측이 서비스를 하는 여성에 대하여 성교를 의무화하여 성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근무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매춘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춘방지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매춘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소프랜드를 철저히 단속할 경우 다른 성풍속점의 위법영업 및 노상에서의 매춘알선의 증가와 폭력단의 개입 등이 우려되며, 또한 성병에 대한 실태과악을 더욱 더 곤란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적으로 철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소프랜드의 신규영업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소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고용에 관해서는 경찰의 지도에 의한 영업소의 자주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관할경찰서가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신분증명 및 종업원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의한 성병검사의 지도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랜드의 법률상의 위치로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에 해당한다. 즉, 법률 제2조 제1항의 6의1에서는 「욕장업의 시설로서 개인실을 만들어 당해 개인실에서 이성의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공중욕장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소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며 또한 풍속영업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출입은 금지된다.(법률 제18조)

기존에는 소프랜드를 「개인실부특수욕장」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란 특별한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공중욕장법에 있어서의 목욕탕 등(일반적으로 목욕탕에 대하여 사우나=특수욕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터키욕탕은 개인실 사우나라고 하여 개인실에서는 반드시 사우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에는 공중욕장법이 개정되어 특수욕장이라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한편, 일본의 소프랜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소프가(街)라는 곳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과거의 공인매춘지역으로 아카센(赤線) 지역에서 유래하는데 기존의 아카센지역의 공창경영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에 업소가 집중되는 이유로는 주변에 풍속영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영업자의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과 소프랜드의 신규개점이 일정의 지정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현재에는 각 지역의 조례 등에 의해 일본국내에서는 후쿠오카(福岡)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규의 영업소를 개설 할 수 없다²⁷⁾.

나. 패션헬스(ファッションヘルス)

패션헬스란 여성종업원이 남성고객에게 개인실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풍속점의 일종이다. 여기에는 소프랜드와 같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실도 매우 협소하다. 패션헬스는 일반적으로 「헬스(ヘルス)」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성감헬스 및 뉴헬스, 슈퍼헬스, 소프트헬스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각 영업소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패션헬스는 일반적으로 점포형²⁸⁾과 파견형²⁹⁾으로

26) 소프랜드의 이용시스템은 각 영업소별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는 고객으로는 지명 고객과 일반고객으로 분류된다. 지명고객은 이전에 이용할 당시에 알게 된 여성을 지명하거나 영업장에 부착되어 있는 여성의 사진을 보고 지명하거나 또는 잡지 및 인터넷 등에 게재된 사진을 확인하고 지명할 수 있다. 영업소의 입구에는 안내소가 설치되어 안내소에서는 입욕료(개인실의 사용료로 영업소의 수입)를 지불하고 여성종업원의 개인실로 안내된다. 이후 상호 탈의한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고객에 대한 목욕서비스와 성교행위 등이 이루어진다.

27) 소프랜드의 현황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6.2)

28) 점포 형으로는 종래형헬스(영업소의 개인실에서 일반적인 성적서비스가 이루어지

구분된다.

페션헬스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점에 해당한다. 즉, 법률 제2조 제1항의 6의 2에서는 「개인실을 설치하여 당해 개인실에 있어서 이성의 고객의 성적호기심에 따라 그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 가운데 전호에 해당하는 영업(즉, 소프랜드)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프랜드와 유사한 영업으로는 「한국식에스테」, 「대만식에스테」, 「중국식에스테」, 「아로마에스테」 등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칭의 업소는 원칙적으로 「성풍속산업」과는 다른 「마사지업」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종에 대한 감독청도 공안위원회가 아닌 보건소가 감독하게 되며 최대영업가능시간대도 상이하다. 즉, 성풍속산업으로서의 페션헬스는 일출시간 상당(오전4시)으로부터 익일의 오전1시까지인 것에 대하여 마사지업으로서의 에스테는 그와 같은 시간의 규제는 없다(즉, 24시간 영업을 가능). 이러한 성풍속산업으로서의 페션헬스와 마사지업으로서의 에스테와의 법률상의 영업가능행위의 상이는 다음과 같다. 즉, 성풍속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종업원이 고객인 남성에 대하여 성기의 접촉 혹은 인지 가능한 상태에서의 성적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마사지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종업원은 고객에 대하여

는 형태), 이미지헬르(イメヘル)(영업소의 개인실에서 이미지플레이(각각의 상황 설정에 따른 의복 및 장비 등을 여성종업원이 착용한 후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하는 형태.), 페션살롱(ファッションサロン)(간단한 구획을 정한 박스형태의 공간에서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종래의 핑크살롱(ピンクサロン(ピンサロ))의 영업소를 개조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형태), 맨헤르(マンヘル)(맨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형태로 종래에 유행한 맨토르(マントル(マンショントルコ))의 헬스형태를 말한다. 맨션에 여성이 대기하고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고객에게 방문하도록 하여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형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9) 파견형으로는 델리버리헬스(デリバリーヘルス(デリヘル))(남성고객에 기다리는 고객의 자택 및 호텔에 여성종업원을 파견하여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형태), 호텔헬스(ホテルヘルス(ホテヘル))(일반적으로 리브호텔가 근처의 빌딩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여성종업원을 선택한 후 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고객과 여성종업원이 호텔에 입실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영업형태) 등을 말한다.

성기를 접촉하거나 또는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페션헬스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먼저 남성고객이 개인실로 안내된 후 의복을 탈의한 후 여성종업원에 의한 목욕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여성종업원은 전라 또는 반라의 상태로 남성고객에 대하여 성교유사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³⁰⁾.

다. 훔쳐보기 방

풍속점의 하나인 훔쳐보기 방은 단순히 개인의 일상생활을 훔쳐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풍속영업이다. 즉, 여성의 탈의 및 입욕의 행위를 방관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벽에 훔쳐볼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여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은 개인공간에서 탈의 및 성적인 행위 등을 하여 고객에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은 이성의 일상행위 및 성적인 장면을 훔쳐보는 것이지만 남녀의 성행위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훔쳐보는 고객이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성이 요구받은 행위를 하거나 또는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훔쳐보기 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고 있다.

훔쳐보기 방은 이상성욕인 도착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료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으나 타인(특히 이성)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보편적인 호기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도 해석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업풍속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동학대와 같은 비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훔쳐보기 인터넷사이트가 확인됨에 따라 국제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풍속영업으로서의 훔쳐보기 방에서는 여성의 댄서(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라에 의한 흥행)를 중심으로 주위에 설치된 개인실에서 고객이 훔쳐볼 수 있는 구멍 혹은 밖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거울을 통하여 관람할 수

30) 페션헬스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6.2\)](http://ja.wikipedia.org/wiki/(2007.6.2))

있도록 하는 점포도 있다. 고객은 연기를 하는 여성을 보면서 성적인 자극을 충족하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훑쳐보기방은 풍속영업 가운데 비교적 저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및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는 중년의 무직자 등의 이용이 많다³¹⁾.

라. 개인실비디오

성인비디오를 감상하기 위한 풍속점의 하나인 개인실비디오는 비디오를 감상하기 위한 장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업으로서 1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개인실을 다수 설치하고 있다. 비디오박스 또는 비디오시사실이라고도 한다. 주로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포이다.

개인실 비디오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6의 3에서 규정하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점으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풍속영업이다. 즉, 법률 제2조 제1항의 6의 3에서는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는 흥행, 그 외의 선량한 풍속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흥행의 용도에 제공하는 흥행장으로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경영하는 영업」으로서 정의되어 있으며 흥행장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흥행장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개인실비디오의 이용시스템으로는 일반적으로 요금은 시간제이며 비디오를 선택하여 지정의 개인실에서 감상을 하도록 한다. 개인실에는 비디오재생장치(VHS비디오장치, DVD플레이어 등)와 소형TV와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실비디오에서는 단순히 성인비디오의 감상만이 아니라 성적인 서비스도 이루어진다. 즉, 점포에 따라서는 시청시간 중에 여성의 종업원이 고객의 개인실에 입실하여 별도의 요금으로 성교유사행위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³²⁾.

31) 이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6.2\)](http://ja.wikipedia.org/wiki/(2007.6.2))

마. 스트립극장³³⁾

스트립극장이란 무대에서 여성댄서가 음악에 맞추어 의복을 탈의하는 과정을 감상하는 극장영업으로 풍속점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스트립극장은 도시에서 지방의 온천장까지 일본 전국에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대중적인 성적오락의 하나였다.

스트립극장은 1947년 1월 15일 동경의 신주쿠(新宿)에서 「명화(名畫) 앨범」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당시에 여성모델이 움직이면 풍속환경문란으로서 적발된다는 취지가 GHQ로부터 발부되었기 때문에 실재로는 여성이 서양의 나체그림으로 분장하여 춤을 추지 않고 정지하여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액자쇼라고도 불리어 졌다. 그 후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 1948년 아사쿠사(淺草)에서 처음으로 춤을 가미한 스트립쇼가 개최되었고 이후에 일본 전국으로 전파됨에 따라 대중적인 풍속오락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부터 관서지구를 중심으로 여성댄서가 전라가 되어 성기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쇼를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무대에서 출연자가 직접 성교행위를 하거나 또는 고객과 여성스트립댄서가 무대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것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스트립극장에서의 성행위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경찰에 의한 단속 강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근래에는 다른 성적오락영업형태의 증가에 따라 고객수가 감소하여 경영 파탄으로 폐쇄하는 극장도 있다. 즉,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입장료를 고액으로 설정하게 되었고 이것은 고객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스트립극장은 고객의 감소에 따라 폐쇄하는 극장이 있는 한편, 일정정도의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는 극장도 도시를 중심으로 복수가 있으나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스트립극장의 이용은 통상적으로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입장하면 폐장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무대를 둘러싸고 많은 좌석이 있으며

32) 이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6.2\)](http://ja.wikipedia.org/wiki/(2007.6.2))

33) 스트립극장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6.2\)](http://ja.wikipedia.org/wiki/(2007.6.2))

음악에 맞추어 여성이 의복을 벗는 모습을 감상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많은 수의 여성이 순번으로 출연하는데, 대도시의 극장에서는 6-8명 정도의 댄서가 출연하며 통상적으로 1일 4회 정도의 공연을 한다.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댄서가 춤을 종료한 후 유료서비스인 사진촬영회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고객이 지정한 모습으로 댄서의 의상 또는 누드를 촬영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관객에 있어서는 댄서의 모습을 기념으로 남기는 것과 동시에 단시간이지만 댄서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극장으로서의 사진촬영에 의한 수입은 입장료수입과 함께 커다란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인기가 많은 댄서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희망하는 자가 다수가 된 경우 사진촬영회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시간제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극장에 따라서는 사진촬영의 시간제한, 인수제한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러한 스트립극장에서는 남녀의 출연자가 무대 위에서 성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객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하여 무대 위에서 고객과 여성댄서가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비교적 많은 스트립극장이 이러한 성교행위를 하였으나 공연외설죄 혹은 매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단속에 따라 현재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별도의 개인실을 만들어 무대에 등장하는 댄서 등으로부터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극장도 있다.

이러한 스트립극장은 흥행장법에서 규정하는 흥행장으로서 그 경영 및 설치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스트립극장의 경영은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하나에 해당한다. 즉, 법률 제2조 제6항 제3호에서는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를 보여주는 흥행 그 외의 선량한 풍속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흥행의 용도에 제공하는 흥행장으로서 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경영하는 영업」을 정의의 하나로 하고 있다.

(2) 무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

무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풍속영업을 말한다. 즉,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의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있어서 이성의 고객의 성적호기심에 따라 그 고객에게 접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당해 역무를 하는 자를 그 고객의 의뢰를 받아 파견하는 것에 의해 영업하는 것, 전화 그 외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영업으로서 당해물품을 배달하거나 또는 배달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률 제2조의7)

대표적인 무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으로는 딜리버리(Delivery)헬스(デリヘル)를 들 수 있다³⁴⁾. 딜리버리헬스란 패션헬스의 출장판으로 출장헬스 또는 딜리헬스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영업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고객의 자택이나 호텔 등으로 여성을 파견하여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그 서비스의 내용은 패션헬스와 동일하다. 한편, 파견업자가 연계된 호텔에 여성을 파견하는 형태를 호텔헬스라고도 한다. 딜리버리헬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영업형태로 1999년에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방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딜리버리헬스는 여성이 남성고객의 자택에 직접 파견되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 영업형태이다. 한편, 자신의 장소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호텔 혹은 러브호텔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딜리버리헬스는 점포형풍속점과 달리 여성종업원의 개인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며 풍속정보지 및 풍속신문 혹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경우에도 여성종업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점포형풍속점에 비하여 일반여성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여성종업원은 낮에는 일반적인 회사원 또는 학생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업시간이 점포형과는 달리 심야에도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야간에 아르

34) 딜리버리헬스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6.3\)](http://ja.wikipedia.org/wiki/(2007.6.3))

바이트형태로 출근하기도 한다.

딜리버리헬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구밀집지대를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으며, 무점포형이기 때문에 점포형에 비하여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상고객을 고령자 및 장애인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일부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일본전국에 여성종업원을 파견하기도 한다.

(3)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이란 영업소를 설치하여 오로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적인 성적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체(대화를 포함)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화(전화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음성에 의한 것에 한한다.)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성을 소개하는 영업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대화의 신청을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여 당해 점포 내에 있는 다른 일방의 자에게 연결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그 일방의 당사자가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이러한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으로서의 텔레폰클럽(テレクラ³⁵⁾)이 있다.

텔레폰클럽은 1985년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목을 받게 되어 유행한 업종이다. 즉, 전화를 매개체로 하여 여성과의 대화를 알선하는 영업으로 대화의 진행에 따라서는 여성과 직접 대면할 수도 있다.

텔레폰클럽에서는 먼저 남성이 영업소에 입장하여 시간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고 개인실에서 이성으로부터의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린다. 여성은 자택 및 공중전화로부터 점포에 전화를 걸게 되는데, 여성전용다이얼은 0120의 무료전화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각 텔레폰클럽영업소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는 여성잡지의 광고 또는 가두에서 배포되는 화장지 등이다.

남성은 이용시간 도중에 약속된 여성과 접촉하기 위하여 외출을 할 수

35) [http://ja.wikipedia.org/wiki/\(2007.6.2\)](http://ja.wikipedia.org/wiki/(2007.6.2))

있으며 당일이라면 다시 영업소에 입장하여 여분의 이용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텔레폰클럽이 일본사회의 문제로 부각된 것은 1986년경이다. 당시 아사히(朝日)신문의 1986년 4월3일자에 텔레폰클럽에 관한 기사가 게재 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성의 고객과 만나고 있던 가출여자고교생이 경찰에 의해 보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동 기사에 따르면 텔레폰클럽은 1985년부터 신주쿠(新宿) 및 시부야(渋谷)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당시에 약 100여개의 업소가 영업 중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텔레폰클럽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일반의 여성도 다수이용하게 됨에 따라 영업소가 일본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여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중고생에 의한 이용이 증가하였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제시를 받는 등의 원조교제의 온상으로 부각되었다.

1999년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되어 연령확인 및 영업지역이 한정되는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2000년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아를 대신하여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이성만남사이트가 유행하였다.

2002년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텔레폰클럽의 이용자(남성 및 여성을 묻지 않는다.)에 대하여 18세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확인요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텔레폰클럽이 폐업하였다.

이성교제만남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일 및 전자게시판(BBS)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다는 것과는 달리 텔레폰클럽은 직접 상대방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에 따라 최근에는 반대로 이성만남사이트보다 텔레폰클럽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

(4) 무점포전화이성소개영업

무점포전화이성소개영업이란 오로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일시적인 성적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교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성을 소개하는 영업으로 그 일방의 자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대화의 신청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일방의 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그 일방의 자가 해당영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무점포전화이성소개영업에는 two shot dial³⁶⁾이 있다. two shot dial이란 일반의 공중회선 및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한 남성 유료와 여성 무료의 쌍방향대화서비스를 말한다. 즉, 컴퓨터교환기에 의해 무작위로 남성의 전화와 여성의 전화가 연결되어 대화하는 형태로 여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남성은 이용요금과 통화료를 지불하여야 전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남성은 two shot dial업자가 설치한 자동판매기에서 이용카드를 구입하거나 업자가 지정한 은행에의 이용금액의 납입 등을 통하여 인증번호를 획득한 후 교환기에 전화를 걸어 여성과 연결되기를 기다린다. 남성의 전화는 대화시간이 교환기에 기록되며 이용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대화시간이 관리되는 방식이다.

two shot dial은 남녀의 만남 및 교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90년대에 청소년 사이에 유행한 업종이다. two shot dial이란 명칭은 남녀가 둘만이 되어 만난다는 의미의 당시의 일본청소년 사이에 속어로 사용되던 two shot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서비스이용자 당사자 간에 마음에 드는 남녀가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시스템으로는 남성이 NTT에 의한 정보요금과금회수대행서비스인 다이얼Q2회선으로부터 전화를 걸고(통화료를 제외하고 1분 100엔의 정보제공이용요금) 여성은 프리다이얼(free dial)을 통하여 연결되었다.

서비스의 유래는 동일한 서비스가 목적인 텔레폰클럽이지만 다이얼Q2가

36) two shot dial에 대해서는 [http://ja.wikipedia.org/wiki/\(2007.6.2\)](http://ja.wikipedia.org/wiki/(2007.6.2))

등장함으로써 자택의 전화로부터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다이얼Q2서비스의 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이용확대에 따라 원조교재목적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소년비행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행위의 온상이 되었고 또한 청소년이 장시간 이용함에 따라 고액의 이용요금청구 등이 문제화되었다. 또한 동시에 부당청구사건(회선소유자가 Q2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NTT로부터의 청구가 있는 등)이 발생하였으며, 정보제공사업자가 스스로 위법한 이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방송에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획득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1년에 사회여론 등에 따라 NTT는 정보제공사업자의 전화회선의 이용기획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이용기획서의 내용과 상이한 사업내용의 방송의 회선이용을 하고 있던 사업자의 Q2회선이용계약을 경신하지 않는 등의 자주규제를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92년에는 다이얼Q2회선을 이용한 two shot dial사업자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

한편, 1991년 이후 two shot dial사업자는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성의 이용요금의 과금을 은행송금 및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이용한 이용포인트수(1분 100엔, 1포인트)관리방식의 일반의 공중회선경유의 two shot dial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거나 남성 측의 회선의 과금에 국외에의 통화로 하는 경우에 착신국 측의 통신회사로부터의 지불을 영업자의 이익으로 하는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한 영업방법 등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여성의 서비스이용자가 잡지광고 및 가두배포의 휴지만으로는 남성고객의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혹은 장시간의 통화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남성 측이 종량과금이므로 장시간 대화하는 것이 사업자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지 등을 이용한 일반이용객으로 가장한 재택아르바이트여성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two shot dial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 및 휴대전화, e-메일 등을 이용한 이성만남사이트의 보급에 따라 점차적으

로 사라지고 있다.

(5) 그 외의 풍속영업

가. 부르세라(ブルセラ³⁷⁾)

부르세라란 부르마(ブルマ³⁸⁾) 및 세라복(セーラー服³⁹⁾) 등을 포함한 여성의 착용 후의 의복을 말하는 것으로 90년대까지 일본의 일반적인 학교 교육기관에서 체육복으로 채용된 부르마의 「부」와 제복 및 표준복으로서 채용되고 있는 세라복의 「세라」를 단순하게 합성한 합성어이다.

부르세라를 둘러싼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부르세라숍은 사용 후의 부르마 등의 체조복 및 세라복 등의 제복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은 단순히 부르마를 판매하는 체조복판매점 및 세라복을 판매하는 제복판매점과는 다르다. 이러한 영업점에 찾는 대부분의 고객은 판매된 제복을 착용하여 학교교육기관에 통학하거나 체조복을 착용하여 체육수

37) <http://ja.wikipedia.org/wiki/>(2007.6.2)

38) 부르마(ブルマ)란 운동을 하는 경우 등에 하반신에 착용하는 의류의 일종으로 일본에서는 부르마라고도 부른다. 이것의 기원은 유럽으로 20세기에 세계적으로 넓게 보급되었다. 부르마라고 불리게 된 19세기에는 긴 치마의 형태였으나 신소재의 개발과 운동의 편리함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결과, 20세기는 신체의 가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짧은 형태가 일반적으로 되었고 이 형태를 부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일본의 학교교육의 체육의 수업의 운동 시에 착용하는 체조복 또는 스포츠용의 팬티로서 이용되고 있다.

39) 세라복(セーラー服)란 해병(sailor)이 착용하는 군복으로 아동복으로 유명해진 것으로 일본에서는 주로 여자중고생의 제복으로서 정착한 것이다. 이러한 수병의 제복은 1857년에 영국해군이 제정한 군복이 최초로 당시의 영국해군은 가장 발전된 해군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해군이 영국에 뒤를 이어 해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장을 각국의 해군이 채용하였다. 일본에서도 1872년에 수화부의 제복으로서 채용되었고 수병을 설정한 만화인 뽀빠이도 극중에서 이와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여자학생의 제복으로서 이것이 채용된 것은 1921년이라고 하고 있다. 즉, 후쿠오카현(福岡県) 후쿠오카여학원의 당시의 학교장이 활동하기 쉬운 체조복으로서 자신이 영국 유학중에 입던 복장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당 학원의 제복으로서 채용하였고 그 후 전국적으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수병의 복장이 전국적으로 채용된 배경에는 당시 많은 학교에서 남학생이 육군의 군복에 강한 영향을 받아 육군의 군복을 학생복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여자학생에게는 해군의 군복을 입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세라복이라는 용어를 여자중고생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업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제복 및 체조복을 본래의 용도 외(주로 자위행위)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착용 후의 의류란 단순히 부르마와 세라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체조복, 수영수업에서 사용한 학교수영복 등도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교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류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여자중고생이 착용한 속옷 및 양말, 일상복 또는 외출복 등의 의류도 함께 판매되고 있다.

또한 착용한 의류 이외의 것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즉, 여성생리용품 및 타액과 분노 등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며, 화장품, 향수, 필기용구, 신발 등의 일상용품도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점포 및 인터넷사이트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이하의 체조복, 수영복, 속옷 등이 판매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목적은 본래의 용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이 성적목적에 의해 구입하는 것이다. 즉, 착용 후의 제복 및 체조복, 일상복, 외출복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일상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여자중고생에게 접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여자중고생이 착용한 속옷 및 생리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다 강한 성적만족을 느끼는 이유로 구입한다.

부르세라숍의 거래형태는 매수형태, 수탁, 알선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매수형태에서는 여자중고생으로부터 부르세라숍이 제복 및 체조복, 속옷 등을 매수한다. 이 경우 여자중고생에 의한 고객과의 직접적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자중고생은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르세라숍에 매수된 시점에 대금을 받게 된다. 상품을 매수한 부르세라숍은 상품을 점포에 진열하여 고객에게 매매한다. 이 경우 특징적인 것은 고객은 여자중고생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별개로 여자중고생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의 감수 또는 여자중고생이 아닌 성인여성이 사용한 상품 및 남성이 사용한 상품, 또는 사용 후가 아닌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여자중고생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보다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교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

을 거래하는 것은 성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공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중고생의 입장에서는 부르세라숍에만 거래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외부공개의 위험성이 감소된다는 특징도 있다.

다음으로 알선형태로는 여자중고생으로부터 부르세라숍이 직접 제복 등을 매수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자중고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여자중고생에게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된다. 여자중고생에게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자중고생이 점포 내에서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통하여 고객에게 보여주어 고객이 직접 구입하고자하는 여자중고생의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 고객은 여자중고생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고 점포 내에서 상품을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부르세라숍은 여자중고생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일정의 금액을 판매의 장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받게 된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여자중고생에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여자중고생이 점포 내에서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보여주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여자중고생의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한 고객이 점포 외에서 상품의 대금지불과 상품의 인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점포는 여자중고생으로부터 알선료의 받게 되는 등 거래방법 및 장소 등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탁알선의 특징은 여자중고생이 매각이익을 얻는 것은 고객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자중고생은 매매계약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여자중고생은 고객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점이다. 이 거래형태에 있어서는 고객은 어떠한 여자중고생의 상품인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에서는 고객은 해당 여자중고생이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품을 보다 높은 가격에서 교섭할 수 있다.

이러한 여자중고생의 부르세라숍에서의 거래의 목적은 오로지 간편한 경제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간편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것

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을 유흥 등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제복 및 체조복, 수영복 등은 사용 이전에도 고가인 경우가 많으나 속옷은 여자중고생이 비교적 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저가인 속옷가격에 비하여 고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르세라숍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여자중고생의 속옷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용 후의 생리용품 및 분뇨 등은 본래 거래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이지만 부르세라숍이라는 특수한 풍속영업에서는 거래가치가 발생되므로 여자중고생에게는 이러한 것을 거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분뇨 등은 신체로부터 배출되는 것으로 초기자본이 들지 않고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르세라산업은 1990년대에 동경 및 요코하마(横浜) 등과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교토(京都), 나고야(名古屋)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이후에 센다이(仙台), 삿포르(札幌), 후쿠오카(福岡) 등의 지방 도시로 확산되었다. 이 산업은 본래 가치가 희박한 상품이 고액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여자중고생과 영업주의 이해관계, 그리고 저가이며 용이하하게 자신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여자중고생의 이해관계,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여자중고생과 직접 접촉할 수 있으며, 속옷 등의 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에 가치를 부여한 고객 등의 3자의 이해관계의 합치 등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점점 더 가열되어 예를 들어 부르세라숍의 거래물인 속옷을 인도하는 경우에 여자중고생이 고객 앞에서 속옷을 벗는 경우에는 고객이 여자중고생의 모습과 음부 등을 사진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다 많은 금액을 얻을 목적으로 반라 및 전라의 모습을 촬영 또는 녹화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거래와 함께 고객과 식사 등을 함께 하는 등의 유사교재행위를 하거나 성교 및 성교유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산업은 부르세라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행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1993년 8월

경찰청에서 고물영업법위반혐의로 부르세라숍을 적발하였다. 즉, 「한 번 사용한 물품」을 판매 등을 하는 고물영업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며 무허가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본래 고물영업법은 도품의 매매방지 및 도품의 발견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부르세라업자에 의한 청소년의 비행 등을 억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및 조례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므로 2004년에 전국의 도도부현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동경도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2는 제1항에서 「누구라도 청소년으로부터 착용 후의 속옷 등(청소년이 한 번 착용한 속옷 또는 청소년의 타액 혹은 분뇨를 말하며 청소년이 이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속옷, 타액 또는 분뇨를 포함)을 매수, 매각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착용 후의 속옷 등의 매각의 상대방을 청소년에게 소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누구라도 전항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그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벌칙으로 제24조의4 제1호에 있어서 「업으로서」 착용 후의 속옷의 매수, 매각위탁, 매각알선을 한 자, 2호에서 이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한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에서는 업으로서가 아니라 착용 후의 속옷의 매수 및 매각위탁, 매각알선을 한 자를 4호에 있어서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여자중고생 등의 청소년의 속옷을 부르세라숍 및 여자중고생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 후의 의류의 구입은 청소년 이외의 성인의 속옷을 부르세라숍 및 여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이상의 법규제에 따라 각지의 부르세라숍은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부르세라산업이 번성한 시기의 중학생 및 고교생의 시기였던 여성을 부르세라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적규제의 망을 피하여 지금도 사용 후의 의류 등을 판매

하기 위하여 여자중고생이 인터넷 및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게시판 및 사이트에서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르세라영업이 번창한 시기에는 사용 후의 상품 등이 여자중고생에 한정되었으나 지금은 초등학생이 사용한 물품까지 그 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운동복의 일종인 부르마에 성적의 의미를 부여하여 여자중고생이 용이하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에는 교육기관에서 부르마 등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성인용 인터넷사이트

일본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법률에 근거하여 인터넷사이트의 열람 전에 성인용 인터넷사이트라는 것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자가 스스로 연령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연결될 가능성이 적은 이 방법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의 웹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취득할 수 없는 e-mail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취득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거나 회원제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의 유무를 성인인증으로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용 인터넷사이트는 회원제사이트와 비회원제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회원제사이트는 신용카드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비회원제 사이트는 사이트 내에 광고물을 표시하여 그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으로 운용된다.

4.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규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발전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것, 예를 들어 성적감정을 현저하게 자극하거나 또는 폭력성 및 잔학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출판물, 비디오, 영화, 광고물, 방송 및 향락적 색채가 강한 성풍속점 등은 비행의 유발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해한 잡지 및 비디오 등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외설 및 잔학한 행위를 하는 예, 성풍속점의 이용목적의 범죄행위의 발생 등은 유해환경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텔레폰클럽 등과 같은 영업 등의 출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자청소년의 성적피해 및 비행행위의 발생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청소년의 외설적인 화상 등의 유해정보에의 접속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환경에 대한 일본의 법적규제로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과 각 도도부현에 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법률과 조례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1)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환경의 규제

선량한 풍속의 유지와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22호. 이하, 「풍영법」)은 1984년에 현행법의 체계를 갖추었다⁴⁰⁾(小野政博, 1984 : 20).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40) 풍속영업단속법은 1948년 제2회 국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제정정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전쟁 전의 풍속에 관한 영업은 경찰청령 및 부(府)현(縣)령에 근거한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져 왔다. 그 외의 풍속영업의 범위 외에 있는 여관 및 공중욕장의 영업에 대해서는公安 및 풍속과 관련 없는 위생상의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 졌었다. 그러나 신 헌법의 시행에 따라 청부현령(廳府縣令)이 실효성을 잃게 되어 이를 대신하여 ①접대, 유흥, 음식의 영업, ②댄스영업, ③유기영업 등의 3가지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제정되었고, 이후 풍속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반복하게 되었다. 주요한 개정경과를 보면 먼저, 1954년의 개정에서는 풍속영업에 새롭게 파친코(パチンコ)를 추가하여 유기영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규정하여 허가경신제를 채택하였다. 한편, 1959년의 개정에서는 종래의 풍속영업을 실태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저조도(低照度)음식점 및 구화석(區畫席)음식점이 추가하여 7가지의 영업을 허가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심야에 있어서의 음식점

는 대부분의 준수사항이 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단속법령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풍속영업단속법」이 있었다. 그러나 풍영법에서는 법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속」이라는 용어를 삭제함과 동시에 그 업무의 적정화를 통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서 명확히 하는 등 영업자의 자주적인 건전화노력을 촉진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의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풍속산업의 발달에 따라 그 규제에 있어서도 새롭게 등장한 풍속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1998년의 법률개정에서는 소위 딜리버리(Delivery)헬스(デリヘル) 규제의 신설과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관계되는 광고선전규제의 강화, 2001년에는 텔레폰클럽 등의 규제신설, 2005년에는 출장풍속점 및 호객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등, 당시의 시대상황과 일본의 풍속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각 시기에 따른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1) 1984년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小野政博, 1984 : 22)

전술한 바와 같이 풍속영업 등 단속법은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 및 규제의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1972년의 개정 이래 실질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의 풍속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풍속영업 등 단속법은 지속적인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규제사항의 대부분을 조례에 위임

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풍속영업 등 단속법’으로 개정하였다. 1964년의 개정에서는 1959년 법률개정 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한 소년비행을 배경으로 삼야음식점영업에 대한 규제강화(영업자의 자격, 영업장소, 영업시간, 연소자에 대한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정비 등)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1966년의 개정에서는 당시 일본사회에서 문제시되었던 개인실욕장업 및 흥행장영업을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실욕장업에 대한 영업금지지역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흥행장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1972년 개정에서는 당시 급격하게 증가한 모텔 등에서의 청소년비행문제 등의 사회적 정세를 반영하여 장소의 규제 등이 이루어 졌다.

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의 소년비행의 증가원인의 하나로 이와 같은 풍속영업이 그 주요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즉, 이 시기는 각종의 향락적이고 오락적인 영업이 다양화됨과 동시에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악질적인 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소년을 둘러싼 풍속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던 시기이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은 심신 모두 미성숙한 소년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소년의 비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함과 동시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에 게임장, 술집, 다방 등은 불량청소년의 집합소로 전락하였고,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흡연 및 음주 등의 불량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소년비행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개인실 욕장업의 증가와 스트립극장 등의 증가는 선량한 풍속유지에 악영향을 주어 지역의 풍속 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킴과 동시에 복지범의 청소년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모텔 및 호텔 등 역시 지역의 선량한 풍속 환경을 저해함과 동시에 여자소년의 성비행의 장으로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개인실 마사지, 개인실 누드 등의 신종영업형태가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①법률의 명칭변경과 목적규정의 신설⁴¹⁾, ②풍속관련영업에 대한 규제강화, ③풍속영업에 관한 규정의 정비, ④심야에 있어서의 음식점영업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⑤감독에 관한 규정의 정비, ⑥잡칙에 관한 규정의 정비⁴²⁾ 등이 이루어졌다.

-
- 41) 법률의 명칭을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로 하였고, 법률의 목적을 ‘선량한 풍속과 깨끗한 풍속 환경의 유지 및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풍속영업 및 풍속관련영업 등에 있어서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고 연소자를 이러한 영업소에 입장시키는 것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의 건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풍영법 제1조)
- 42) 풍속 환경으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지도위원회제를 신설하였고 또한 선량한 풍속의 유지 및 풍속 환경의 정화, 그리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풍속환경정화협회를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2) 2001년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개요

1998년의 풍속법개정에서는 음식점 등에 있어서의 외국인여성이 관여된 매춘행위의 증가, 무점포형태의 성을 매개로 하는 영업의 증가, 인터넷을 이용한 성인화상품의 범람 등 주로 국제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문제로 대두된 풍속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풍속 환경의 위법한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방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 중에서도 텔레폰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매춘(兒童買春⁴³)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박멸을 위한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성인비디오의 범람과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의 존재도 선량한 풍속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당시의 풍속정세에 대응한 풍속행정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생활안전국장의 연구회인 「풍속행정연구회」를 설치하여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풍속행정의 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동 연구회에서는 2001년 1월에 아동매춘의 실태, 텔레폰클럽의 현황, 조약에 근거한 국제적 책무 등의 검토를 통해 텔레폰클럽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과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에게 송신방지노력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포르노영상을 기록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를 추가하고, 성인숙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이라도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물품의 판매 등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신이상자에 관계되는 풍속영업의 결격조항에 대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언서, 즉,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당면의 풍속행정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43) 아동매춘은 성인이 우위의 입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을 파는 측이 문제가 되는 매춘과 달리 사는 측의 문제로, 이것을 아동매매춘으로 하면 자칫 약한 입장의 아동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측의 성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동매춘(兒童買春)이라 표현하였다(제145회 국회참의원법무위원회회의록 제8호(1999년 4월 27일)). 이것의 취지는 성을 산 성인(고객)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중개한 성인(영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를 발표하여 이를 기초로 법안책정작업을 한 결과 동년 3월에 개정 법안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화이성소개영업(텔레폰클럽영업)에 대한 규제의 정비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 11월에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이 시행되어 아동매춘의 범죄화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2000년 5월에 체약국에게 아동매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및 행정적조치의 책정, 실시 및 강화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의 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의정서」가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는 등, 아동매춘 및 아동의 성적착취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한편, 2000년 중에 검거된 아동매춘사건의 과반수가 텔레폰클럽의 이용과 관계된다는 점⁴⁴⁾, 또한 아동매춘 이외에도 텔레폰클럽을 이용한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등⁴⁵⁾ 텔레폰클럽이 아동매춘 등의 유발 및 조장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텔레폰클럽영업에 대해서는 모든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으나 영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였다. 즉, 점포형텔레폰클럽영업을 대신하여 복수의 지역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는 무점

44) 2000년 중의 아동매춘사건검거건수 904건 중 469건이 텔레폰클럽의 이용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표 IV-3>아동매춘사건의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항 목	검거건수	검거인원
아동매춘사건	904건	558명
텔레폰클럽영업에 관계되는 것	469건(52%)	312명(56%)

※ 아동매춘사건이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죄에 관계되는 사건을 말한다.

45) 2001년 7월에 수갑을 찬 중학 1년생의 여자학생이 자동차에서 도로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동년 9월 범인이 중학교 교사가 체포되었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텔레폰클럽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포형텔레폰클럽영업이 증가하여 조례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텔레폰클럽영업을 「전화이성소개영업」으로 간주하여 그 성질에 따라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및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으로 구분하여 양자를 「성풍속관련특수영업⁴⁶⁾」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영업에 관하여 각각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함과 동시에 새롭게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에 대하여 ①영업소별로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공안위원회에의 신고의무), ②학교 등 또는 그 외의 시설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위 200미터의 구역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정의 지역에서의 영업금지(영업금지구역 및 지역), ③광고제한구역 등(②의 구역 및 ②의 지역 가운데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에 있어서 광고 또는 선전을 하거나 또는 광고제한구역 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에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것, 18세 미만이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광고 및 선전의 제한), ④호객행위를 하는 것, 영업소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고객에 접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 18세 미만의 종업자를 대화의 당사자로 하는 것, 18세 미만의 자를 영업소의 고객으로서 입장시키는 것, 18세 미만의 자로부터의 대화의 신청을 연결하는 것 등의 금지(영업자의 금지행위), ⑤대화의 신청을 한 자가 18세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공안위원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을 강구할 것(연령확인을 위한 조치의무), ⑥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안위원회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지시), ⑦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 그 외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⑥의 지시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공안위원회가 8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46)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이란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및 무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 등을 말하는 데 이것 모두는 성을 매개체로 하는 등 성풍속에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 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을 말한다.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점포형전화이성소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영업정지), ⑧⑦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②의 구역 또는 지역에 있어서 영업을 운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공안위원회가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영업폐지), ⑨영업의 본부가 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의무(공안위원회의 신고의무), ⑩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광고 또는 선전 및 광고제한구역 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에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것,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배포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광고 또는 선전 금지(광고 및 선전의 제한), ⑪18세 미만의 중업자를 대화의 상대자로 하는 것, 18세 미만의 자로부터의 대화의 신청을 연결하는 것 등을 금지(영업자의 금지행위), ⑫대화의 신청을 한 자 및 대화의 신청을 받으려는 자가 18세 이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강구할 것(연령확인을 위한 조치의무), ⑬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이 있는 경우 공안위원회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지시), ⑭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 그 외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⑬의 지시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공안위원회가 8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는 것(영업금지) 등의 규제가 제정되었다.(加藤伸宏·佐野裕子, 2001 : 61-66)

둘째,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에 관한 규제의 강화이다. 2000년 당시 아동포르노사건의 약 70%가 인터넷이용과 관련되는⁴⁷⁾ 등 인터넷상의 아

47) 2000년 중의 아동포르노사건 검거건수170건 중 114건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건이었다.

<표 IV-4>아동포르노사건의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2000년 1월-12월)

항 목	검거건수	검거인원
아동포르노사건	170건	164명
인터넷이용에 관계되는 것	114건(67%)	85명(52%)

※ 주) 아동포르노사건이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의 처벌 등 및 아동

동포르노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전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인영상을 송신하는 영업을 「영상송신형성품속특수영업⁴⁸⁾」으로 간주하여 그 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위원회에의 신고의무, 광고 및 선전의 제한, 연소자의 이용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공안위원회의 지시, 조치명령 등의 규제를 동반함과 동시에 자동공중송신장치설치자(프로바이더)에 대해서는 영상송신형성품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프로바이더의 자동공중송신장치(서버 컴퓨터)에 외설적인 영상을 기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영상의 송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송신방지조치노력의무).

셋째, 특정성품속물품판매 등 영업에 대한 규제의 정비이다. 종래에는 점포를 설치하여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은 점포형성품속특수영업인 성인숙영업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오로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형태에서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외설물 및 아동포르노판매 등의 사건으로 검거되어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당시의 비디오 등의 매체의 보급을 배경으로 위법한 비디오테이프까지 일반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점포를 설치하여 「오로지」만이 아니라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특정성품속물품판매영업 등」으로 규정하여 해당 영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하여 형법 제157조(외설물 배포 등)의 죄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 제7조(아동포르노배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안위원회가 6개월을 넘지 않

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죄에 관계되는 사건을 말한다.

48) ‘영상송신형성품속특수영업’이란 오로지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장면 또는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의 영상을 보여주는 영업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고객에게 당해영상을 전달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에 의해 영업하는 것이다.

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부분에 한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05년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최근 인신매매의 방지가 국제적인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풍속영업 및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있어서 매춘의 강요 등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환락가를 중심으로 위법한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만연과 풍속영업 등에 있어서 호객행위, 그리고 주택가 등에 있어서의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광고선전물의 배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소년 등이 일본사회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의 방지와 위법한 영업의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에 풍속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풍속접대음식 등 영업 등에 관계되는接客종업자의 취업자격의 확인의무의 신설

법률 제36조의 2를 신설하여 접대음식 등 영업(법률 제2조 제4항),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주류제공음식점영업⁴⁹⁾(법률 제33조 제6항)에 있어서의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营业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고객을 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그 확인의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였

49) 확인의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접대음식 등 영업,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주류제공음식점영업으로 한 것은 이러한 영업에 대하여 1998년의 법률개정에서 성적착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업종으로 보아 규정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1998년의 개정에서 있어서의 성풍속영업의 배경으로 지적된 것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매춘의 강요 등이었는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기의 업종에 대한 구속적 행위의 규제를 신설하였다. 이에 이것과 동일한 영업범위를 확인의무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⁵⁰⁾. (時の法令, 2006 : 10)

또한 법률 제36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년월일 등의 확인을 하지 않은 자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률 제53조 제4호 및 제5호). 또한 종업자명부의 작성 및 보존의무에 위반한 자의 법정형에 대해서도 종래 30만 엔 이하를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였다(동조 제3호).

나. 풍속영업허가의 결격사유 등의 정비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와 동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한 경우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의 형법의 개정⁵¹⁾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게 되었다. 즉, 형법과의 관계에서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226조의 2) 이외에 미성년자약취유괴의 죄(동 224조),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의 죄(동 제225조), 사람을

50) 일본에서는 풍속영업,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등에서의 불법취업이 인신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풍속영업 등이 특별한 지식 및 기술이 없더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고 보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불법취업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과 이에 종사하는 불법취업자가 법적으로 취약한 조건과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해 매춘 등을 강요받기 쉽다고 할 수 있다.

51) 2005년의 일본형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3장의 명칭이 ‘약취 및 유괴의 죄’에서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되었고,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4조(미성년자약취 및 유괴)의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5년에서 7년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제225조(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의 구성요건이 확대되어 종래의 ‘영리, 외설 또는 결혼의 목적’에 더하여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에서의 약취 및 유괴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것 외에 폭력단원 등에 의한 가해를 목적으로 한 약취 및 유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형법 제226조의 2(인신매매)는 제1항에서 ‘사람을 매수한 자’를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2항의 ‘미성년자를 매수한 자’를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3항의 ‘영리, 외설, 결혼 또는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수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4항의 ‘사람을 매도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5항의 ‘소개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도록 하였다.

소재국외로 이송하는 행위에 관한 죄(동 제226조 및 제226조의 3), 영리 또는 외설목적으로 약취, 유괴 또는 매매의 피해자를 인도하는 등의 죄(동제227조 제3항) 등에 의해 처벌되었던 자를 추가하였다(제4조 제1항 제2호).

또한 형법 외에도 노동기준법에 의해 금지되는 강제노동(동법 제5조), 중간착취(동법 제6조)를 하는 죄(동법 제117조, 118조 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62조 제1호의 죄(폭행, 협박 등의 수단에 의한 직업소개, 노동자의 모집 등)에 대해서도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는 죄에 추가되었다(제4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인신매매브로커와 같은 자가 풍속영업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년의 건전육성의 관점에서 소위 복지범(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 가운데 지금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노동기준법 제56조의 위반(최저연령), 제61조의 위반(18세 미만의 자의 위험업무)의 죄(동법 제118조 제1항, 119조 제1호, 제119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3의 위반 및 제7호의 위반의 죄(동법 제60조 제2항) 등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되는 죄에 추가하였다(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한편,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없으나 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영업정지사유에 인신매매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법률 제30조, 제31조의5, 제31조의 6 제2항 제2호, 제31조의 15, 제31조의 20및 제31조의 21 제2항 제2호).

다. 신고제의 강화

법률은 본질적으로 불건전한 영업인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대하여 경찰이 실태의 파악과 감시, 그리고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법률 제27조, 제31조의2, 제31조의 7, 제31조의 12및 제31조의 17).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신고서를 제출한 영업자는 그 영업자체가 성풍속상 불량한 영업이라도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의 감시 하에 스스로 가입한 자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연소자사용의 금지 등의 각종규제 및 다른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일정 정도 기대되며 또

한 공안위원회로서도 그 파악 및 감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속 및 행정처분에 의해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신고라는 이행이 용이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무신고업자의 위법의식이 매우 낮고⁵²⁾ (屋久哲夫·鈴木達也·長村順也, 2006 : 21) 또한 공안위원회로서도 실태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히나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에게는 개별 업자의 신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잡지 및 스포츠신문 등에 무신고업자에 의한 영업 광고가 당당하게 게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이것을 보게 된 자가 무신고업자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영업소의 고객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무신고업자의 영업을 도와주게 된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무신고 영업에 의한 각종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신고영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광고선전업자 및 고객이 신고의 유무를 확인하고 무신고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공안위원회로 하여금 성폭속관련특수영업의 신고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신고확인서)을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법률 제27조 제4항, 제31조의 17 제2항, 제31조의 12 제2항 및 제31조의 17 제2항), 성폭속관련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확인서를 영업소 등에 비치함과 동시에 관계자⁵³⁾로부터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제27조 제5항, 제31조의 2 제5항, 제31조의 7 제2항, 제31조의 12 제2항 및 제31조의 17 제2항).

또한 종래의 신고제는 공안위원회가 단순히 영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공안위원회가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제3자에게 표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신고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이 확

52) 최근에는 미신고업자에 의한 연소자사용 및 전단물배포 등의 법위반, 매춘의 알선, 외설물배포 등의 각종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카드를 불법으로 사용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53) 여기에서의 '관계자'란 경찰직원, 소년지도위원, 광고선전업자, 영업소 등의 건물주, 부동산업자, 고객 및 종업자가 되려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가 요구되었으므로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신고서에 영업 방법을 기재한 서류, 그 외의 내각부령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법률 제27조 제3항, 제31조의 2 제3항, 제31조의 7 제2항, 제31조의 7 제2항, 제31조의 12 제2항 및 제31조의 17 제2항). 이것은 신고명의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주민표의 복사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복사본(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역원의 주민표의 복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복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사무소 등의 허위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소와 사무소 등의 사용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상정한 규정이다.

라. 출장풍속점(딜리버리헬스(デリバリーヘルス))의 규제강화

최근에는 소위 출장풍속점(법률 제2조 제7항 제1호의 영업)의 영업형태가 다양화되고 1998년의 개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영업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종업원(고객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종업원)의 사진을 보이거나 서비스내용을 설명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의뢰를 접수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안내소가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안내소는 고객이 출입하는 점포형패션헬스(법률 제2조 제6항 제2호의 영업)의 영업소와 거의 동일한 동종업무를 하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점포형패션헬스영업소와 달리 영업금지구역, 지역의 규제 및 심야영업의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출장풍속점 중에는 종업원을 대기시키기 위한 시설(대기소)을 설치하는 곳도 있는데, 이와 같은 장소에는 당해 영업에 종사시키는 것이 금지된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⁵⁴⁾. (屋久哲夫·鈴木達也·長村順也, 2006 :28)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안내소 및 대기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지 및 소재지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법률 제31조의 2 제1항 제7호). 또한 안내소에 대해서는 점포형패션헬스의 영업소와 마찬가지로 선량

54) 딜리버리헬스에서의 연소자사용으로 인한 검거건수는 2000년은 10건, 2001년은 18건, 2002년은 36건, 2003년은 3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해 영업에 있어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接客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점포형패션헬스로 보아 영업금지구역, 지역, 심야영업의 제한, 18세 미만의 자를 고객으로서 출입하도록 하는 것의 금지, 호객행위의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법률 제31조의 3 제2항). 이에 따라 도도부현은 조례에 의해 당해 전 지역에 있어서 안내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출장풍속점의 안내소와 대기소를 경찰직원의 출입대상시설에 포함시켰다(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鈴木達也, 2006 : 18)

마. 풍속영업 등에 관계되는 호객행위 등의 규제강화를 위한 규정의 정비

법률 제22조 제1호는 ‘풍속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리고 법률 제28조 제11항 제1호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리고 법률 제31조의 13 제2항 제1호에서는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영업에 관한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 제22조 제1호의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풍속영업 등 단속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에서 처음으로 금지규정을 두었으나, 종래에도 이러한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즉, 풍속영업단속법시행조례기준(1964년 5월 경찰청보안국방법소년과) 제23조(준수사항)에서는 이와 같은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⁵⁵⁾.

한편, 매춘방지법 제5조에서는 매춘을 할 목적으로 ‘공중의 눈에 띄는 방법으로 사람을 매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제1호)’과 준비행위인 ‘매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통로 그 외의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의 신변을 가로막거나 또는 따라다니는 것(제2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유’란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매춘의 상대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며 본 법률에서의 ‘호객행위’는 매춘방지법의 ‘권

55) 여기에서 말하는 호객행위란 자기가 경영하거나 고용되어 또는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이 있는 영업에 고객으로서 음식을 하도록 상대방을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통행자에게 광고전단을 배포하거나 간판 등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 선전 등의 행위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호객행위를 상대방을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영업소의 고객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유'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는 영업소 내의 향락적인 분위기를 영업소 외의 일반인의 눈에 띄는 장소에 까지 연장시키는 행위로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의 광고선전규제와는 달리 풍속영업자 등의 금지행위로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는 영업자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권유를 하지 않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등을 사용하는 호객행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권유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외형상으로는 유사호객행위에 해당하며 선량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매춘방지법 제5조 제2호와 같은 준비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호객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가로막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종래에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호객준비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에 의해 선량한 풍속 환경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22조 제2호, 제28조 제12항 제2호, 제31조의 13 제2항 제2호 및 제32조 제3항). 또한 호객행위의 벌칙을 강화하여 그 법정형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것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법률 제52조 제1호).

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또는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무신고로 운영하는 자에 의한 광고 및 선전의 전면금지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의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하여 법률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①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 ②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에 선전물 등을 배포하거나 또는 넣는 것, ③② 외에 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선전물 등을 배포하는 것, ④광고제한구역 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18세 미만의 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을 제외)에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넣는 것, ⑤④ 외에 광고제한

구역 등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⑥그 외의 깨끗한 풍속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해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제한구역 등’이란 학교 등의 주변 외에도 도도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금지지역 가운데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광고 또는 선전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도도부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르면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광고제한구역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및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광고물의 표시 및 광고물의 배포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에 대해서도 잡지 및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의 석간지, 주간지 등에는 무신고업자에 의한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관계되는 광고가 범람하였고, 또한 당해 광고 등은 대부분이 무신고업자에 의한 것이었다. 무신고업자는 신고업자와 비교하여 영업에 있어서 각종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무신고업자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또는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법률 제27조의2 및 제31조의 2의 2). 또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라도 신고에 관계되는 영업 이외의 것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였다.

사.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금지행위로 되어 있는 사람의 주거에의 광고물 등의 배포행위 등의 처벌

1998년의 법률개정 당시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광고물 등이 변화가의 공중전화부스 및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성인비디오의 통신판매광고물 등이 일반가정의 우편함에 무단으로 투입되었고 또한 점포형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간판 등이 영업소와는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광고물은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 및 간판 등은 외설적인 묘사 등이 없

는 한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풍속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에 대하여 깨끗한 풍속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 또는 선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규정에 새롭게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방지’를 추가하여,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포함하여 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부착광고물, 간판 등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 사람의 주거에 광고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 등을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업자에 의한 불법광고물은 증가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처벌도 용이하지 않았다⁵⁶⁾.(屋久哲夫·鈴木達也·長村順也, 2006 : 41)

이에 2006년 개정에서는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대하여 광고제한구역 등에 있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또는 사람의 주거에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위법한 광고 선전에 대한 벌칙으로서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아. 소년지도위원규정의 정비

현재 소년경찰의 자원봉사자로서 일본 전국에 약 6,000명의 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주로 환락가에서의 소년의 보도,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풍속영업자 등에 대한 협력요청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지도위원 중에는 법률상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그 활동에 대한 제약과 한계를 호소하는 자가 많았다. 또한 최근의 풍속영업 등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소년을 고객을 접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악질적인 영업자가 증가하였고, 청소년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연령을 속이고 이러한 영업에 종사하는 등 규범의식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영업소

56) 광고물 등의 배포는 무신고의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광고물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따라서는 당해 전화번호가 무신고이므로 행정사의 조사에서는 영업자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 광고물 등의 배포자를 발견한 경우 그 배포행위가 범죄행위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사에 의해 영업자를 특정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래에는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밖에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 등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및 그 주변이 불량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년지도위원의 직무⁵⁷⁾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공안위원회에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년지도위원이 풍속영업의 영업소에 직접 들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년지도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률 제53조 제7호).

5.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한 유해물 단속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요한 소년비행대책의 하나이다. 그 방법으로서 관련하는 업계의 자주규제와 법률에 의한 규제도 있으나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도도부현의 청소년건전육성조례가 그 규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일본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는 (청)소년보호조례, 청소년애호조례, 청소년건전육성조례 등, 명칭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공권력적인 규제를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한 조례이다.

일본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의 오카야마현(岡山縣)의 「도서예 의한 청소년의보호육성에 관한 조례(1950년 현조례 제41호)」이며, 도서 이외의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은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소년보호조례(1951년 현조례 제

57) 법률에 의한 소년지도위원의 직무로는 소년의 보도,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자 등에 대한 조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년에 대한 조언 및 지도 그 외의 원조,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및 민간단체의 활동에의 협력, 그 외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는 활동(풍속영업의 영업소에서 의 직무수행) 등이다.

41호)」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목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또한 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兵庫縣 청소년애(愛)호조례 제1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의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한 그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山口縣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1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기본 이념 및 현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이 행하는 시책을 규정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의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埼玉縣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1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말하는 청소년 보호개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건전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의해 보호되는 청소년은 모든 조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한연령에 대해서는 6세 이상, 또는 취학 개시기 또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며, 또한 다른 법령(민법)에서 성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례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도서와 유해물건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경도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판매 혹은 배포 또는 열람 혹은 관람에 제공되고 있는 도서류 또는 영화 등으로 그 내용이 청소년에 대하여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거나 대단히 잔학성을 조장하고 또는 현저하게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동경도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 「판매되거나 또는 배포되고 있는 완구류로 그 구조 또는 기능이 동경도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등에 대하여 불건전한 도서

류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정도서류 등의 판매 등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⁸⁾. 마찬가지로 홋카이도(北海道) 청소년육성보호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지사는 영화, 연극, 연예, 보여주는 것 등의 흥행의 내용이 현저하게 폭력성을 조장하고 성적감정을 자극 또는 도의심을 손상시키는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흥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고 흥행을 주최하는 자 또는 흥행의 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이것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해 규제되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유해성으로서는 주로 「성」과 「폭력」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동경도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1) 동경도청소년건전육성조례의 제정(1964)과 그 배경

1950년 오카야마(岡山)현에서 처음으로 도서에 의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같은 해 7월에 동경도아동복지심의회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동복지법 제8조 제7항⁵⁹⁾에 근거하여 성적 또는 엽기적인 책 및 그림 연극이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그 제작 및 출판을 중지하도록

58) 제9조 도서류의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자 및 영업에 관하여 도서류를 배포하는 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자는 진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지사가 지정한 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도서류의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영업에 관하여 도서류를 배포하는 자는 지정도서류를 진열할 때는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도록 동경도규칙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포장을 하여야 한다.

3 도서류판매업자 등은 지정도서류를 진열할 때는 동경도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지정도서류를 다른 도서류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영업의 장소에서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59) 아동복지법 제8조 제7항 사회보장심의회 및 도도부현아동복지심의회는 아동 및 지적장애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 출판물, 완구, 유희 등을 추천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제작, 흥행 혹은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작업자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해도서규제」를 실시한 것이지만 조례제정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았다.

1958년에는 1956년 제정의 「다방영업 등의 심야영업단속에 관한 조례」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야다방에의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청소년의 야간외출에 대한 감독자의 의무, 심야다방영업의 금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조례제정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심야다방문제는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풍속영업단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정은 미루어지게 되었다.

동경도에서 조례제정에 연결되는 구체적인 시책이 검토된 것은 1963년으로 조례제정의 배경으로 당시에 동경도에서 실시된 해악도서추방운동을 들 수 있다. 즉, 1963년 10월 중학교PTA연합회가 동경도 의회에 대하여 「청소년의 보호육성의 조례설치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서에는 청소년의 성적범죄 등을 조장하는 영화 등의 선전 및 간판 등이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짐이 없이 공공연히 전시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경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청원은 12월의 도의회본회의에서 채택되어 도지사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제협의회에 조례제정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문제협의회에서는 1964년 5월에 출판물의 자주규제, 우량출판물 등의 추천, 유해출판물 등의 지정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한 답신이 이루어졌다. 그 후 답신에 기초하여 조례 안이 작성되었고 6월에 제2회 도의회정례회에 제출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정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이를 위해서 우량 도서류의 추천과 표창, 불건전한 도서류의 판매 등의 규제를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단속보다도 환경정비 및 우량도서의 추천을 전면에 둔 「교육 및 복지형」이었다. 불건전도서류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또한 잔학성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불건전도서류(제8조)로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배포, 대여를 금지하였다(제9조). 이러한 도서류는 심의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후 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였고(제15조), 영업장소 등에의 강제조사를 하여 경고를 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8조), 경고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5조).

2) 제1차 개정(1992년)-비디오소프트의 규제-

1992년의 제1차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포르노코믹⁶⁰⁾과 비디오테이프의 확산이었다. 즉, 1990년대에 이르러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시작된 포르노코믹추방운동이 전국으로 파급되었고 또한 비디오기기의 보급, 비디오대여점의 급증, 성묘사를 포함한 비디오테이프의 범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한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서 동경에서 발생한 연속유아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다수의 포르노잡지 등을 소장하고 피해자를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는 등 하여 이 사건의 발생은 이와 같은 규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⁶¹⁾. (藤本哲也, 1993 : 80)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동경에서는 주민단체 등으로부터의 요망과 청원에 따라 도의회가 1991년 3월에 「불건전(유해)도서류의 규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서는 「최근 무익한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아동용의 불건전도서류가 범람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커다

60) 포르노코믹이란 노골적인 성묘사를 한 소년소녀용의 만화잡지 및 만화단행본을 말한다. 이러한 포르노코믹이 출판된 것은 1987년부터라고 하고 있으나 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1990년의 和歌山현의 주부 들이 이러한 종류의 포르노코믹을 유해도서로 지정하도록 현에 대하여 청원한 것에 의한다.

61)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서 동경 등지에서 발생한 연속유아유괴살인사건의 피의자가 5,793개의 비디오를 소장하고 그 중에는 아동포르노물, 공포물 등의 비디오가 있어 이러한 비디오내용이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범인이 체포되어 가택수사의 결과 대량의 비디오가 압수된 1989년 8월 15일의 1주일 후인 8월 22 일에는 千葉현이 비디오 물을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유해도서로 지정하였다.

란 저해요인의 하나로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공공의 복지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유의하면서 불건전도서류의 아동에의 판매 등에 대한 신속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경도의회는 업계에 의한 자주규제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화를 시작으로 불건전도서류의 판매 등에 관한 규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검토를 포함하여 조속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2년 3월에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도서류의 정의규정에 「비디오테이프 및 비디오디스크」를 추가하였고(제2조 제2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도민으로부터 지사에의 신청조항(제4조의 2)을 신설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각지의 조례의 대부분이 유해도서류의 지정에 관하여 포괄적 규정을 채용하고 있었다. 즉, 전라 및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 또는 성교 혹은 이와 유사한 행위의 사진 등을 게재한 페이지 수가 당해 도서 등의 전부 및 일정비율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것을 유해도서로 보고 규제를 하거나 또는 심의회의 의견과 관계없이 도지사의 판단으로 긴급히 지정하는 「긴급지정제도」를 도입하였었다. 한편, 1989년에는 최고재판소에서 기후(岐阜)현의 긴급지정제도를 포함한 조례의 합헌성이 문제되었으나 최고재판소는 「유해도서가 일반적으로 사려분별이 미숙한 청소년의 성에 관한 가치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성적인 일탈행위 및 잔학한 행위를 용인하는 풍조의 조장에 연결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유해하다는 것은 이미 사회공통의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하여 「유해도서의 자동판매기에의 수납금지」는 청소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으며 성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규제에 따른 필요 및 부득이 한 제약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⁶²⁾.

이 판결을 계기로 각지에서 긴급지정 및 포괄지정의 도입이 가속화되었으나 동경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

62) 최고재판소 1989년 9월 19일 형사판례집 43권 8호 785면.

가 되는 서류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억제적인 단속방법을 견지하고 있다.

3) 제2차(1997) 및 제3차 개정-CD-ROM 등의 규제와 매춘의 처벌, 자판기규제 등-

1980년대에 들어서 텔레폰클럽 등의 풍속영업에 청소년이 관계되거나 또는 「원조교제⁶³⁾」라고 하는 매매춘 및 매매춘유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분의 조례가 「음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하여 음행 또는 외설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음행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헌법 제31조의 위반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후쿠오카(福岡)현 조례에 대하여 「음행이란 넓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 일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유혹, 협박, 기망 또는 곤혹하게 하는 등 그 심신의 미성숙에 기인한 부당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행위 또는 성교유사행위 외에도 청소년을 단순히 자기의 성적욕망

63) 원조교제란 주로 일본의 젊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춘의 한 형태이다. 광의로는 성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금전목적의 교제를 말하였으나 현재는 젊은 일반여성의 매춘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다. 현재, 13세 미만의 성적합의연령에 달하지 않은 소년 및 소녀를 상대로 한 성행위는 성적학대 및 강간죄에 분류된다. 또한 그것과는 별개로 18세 미만의 자와의 매매춘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원조교제를 하는 여성은 주부, 사회인, 학생 등 연령 및 직업은 다양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욕구의 간편한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여성은 비밀스럽고 자유로운 개인영업형태의 단시간육체노동에 의한 금전획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매춘행위를 다른 용어로 바꾼 은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교섭의 단계에서 성행위 이전단계의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에 따른 요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주로 여성으로 반대로 남성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원조교제라고 한다. 1980년대는 일부의 여성주간지 및 성인용 여성잡지, 성인용남성주간지 등에서 유사한 모집이 이루어졌다. 1985년에는 텔레폰클럽이 등장하면서 그 시스템 상 익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에 깊게 침투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휴대전화의 등장에 따라 고교생 등의 미성년자의 원조교제가 문제가 되었다. 1994년에는 다이얼Q2를 이용하여 원조교제클럽이라고 하여 아동을 이용한 매춘을 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http://ja.wikipedia.org/wiki/2007.4.6>

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성행위 또는 성교유사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지는 일반인의 이해에 적합한 것이며, 음행의 의의를 이와 같이 해석할 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각 규정이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⁶⁴⁾.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보화가 진행되어 컴퓨터 보급과 함께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는 CD-ROM 등의 새로운 매체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동경도 의회에서 청원 및 진정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책에 대하여 지사의 자문을 받은 청소년문제협의회에서는 1997년 4월에 중간답신인 「성의 상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소년건전육성-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를 제출하였다. 이 답신에 따라 1997년 제2회 도의회에서 「동경텔레폰클럽 등 영업 및 데이터클럽영업의 규제에 관한 조례」가 채택되어 6월에 성립하였고, 또한 청소년보호조례에 매매춘의 상대방이 된 성인을 처벌하는 매춘 등 처벌규정의 신설(제18조의 3)과 도서류의 정의규정에 새롭게 「컴퓨터용의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CD-ROM 그 외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매체(제2조 제2호)」가 추가되었다.

동경도에 있어서 음행의 규정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넓고 또한 윤리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대상을 「금품 등의 공여 등을 동반하는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 및 알선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로 하였다.(東京都, 2002 : 58) 여기에서도 동경도 조례의 일정한 억제적인 대응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제3차 조례개정은 노골적인 성표현 및 잔학한 폭력을 묘사한 도서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이 이와 같은 종류의 출판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안전자살메뉴얼」의 유통이 청소년의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한 우

64) 최고재판소 1985년 10월 23일 형사판례집 39권 6호 413면.

려가 있었기 때문에 동경도는 2000년 5월에 청소년문제협의회에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하여 자문하여 협의회는 동년 12월에 중간답신인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불건전도서류의 지정사유 추가 및 불건전도서류의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답신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1년 3월에 가결되었다.

제3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불건전도서류의 지정사유에 「현저하게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추가할 것(제8조), ②지정도서류 이외에 발행자가 「청소년이 열람하거나 또는 관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 것(표시도서류)과 「다른 도서류와 구분 진열의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다(제9조의 2). 또한 지정도서류의 자동판매기에의 수납의 금지, 자동판매기 등 관리자의 설치, 설치의 신고 등의 규제조치가 새롭게 신설되었다(제13조의2 이하).

4) 제4차 개정(2004년) -부르세라(ブルーセラ:여자학생의류) 및 스카우트(scout)행위의 규제-

최근의 조례개정에서는 한층 더 「치안 및 형벌」의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의 배경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외설적인 정보의 범람과 청소년이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의 발생 등이다. 예를 들어 시부야(渋谷)의 변화가에서 복수의 초등학생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감금된 사건이 발생하는⁶⁵⁾ 등의 사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2003년 10월에 청소년문제협의회에 대하여 불건

65) 이 사건은 2003년 7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경의 임대아파트에 초등학생 여아 4명이 감금된 사건이다. 여아들이 행방불명이 된 4일 후 아동이 감금된 장소로부터 탈출하여 발각된 사건이다. 경찰이 범행 장소에 갔을 때에는 이미 범인은 사망하였으며 경찰은 자살로 단정하였다. 범인은 소년전문의 데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자로 피해아동에 의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고 한다. 그 후 범인의 집으로 간 아동들이 감금된 사안으로 경찰은 미성년자유괴와 체포감금음의로 피의자사망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http://asyura.com/0505/nihon17/msg/722.html> (2007.4.2)

전도서류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그 외 청소년의 심야외출의 방지책 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경도 건전육성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자문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소년문제협의회는 2004년 1월에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성인이 책임을 가지고 만들기 위하여-유해정보의 효과적인 규제, 청소년의 심야외출의 방지책 등에 대하여-」라는 답신을 발표하였다. 이 답신에 따라 조례의 개정작업이 실시되어 동년 3월에 개정조례안이 성립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요점으로는 완규류 및 도물의 청소년에의 판매 등의 제한(제7조의 2, 3), 지정도서류 및 표시도서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의 포장의 의무화(제9조 제3항), 표시도서류 등을 자판기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에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의 의무화(제9조의 2), 착용한 의류 등의 매수 등(부르세라66)의 금지(제15조의 2), 성풍속관련특수영업에 있어서 접객의무에의 종사의 권유의 금지(제15조의 3), 청소년의 심야외출의 제한(제15조의 4), 노래방, 만화점, 인터넷카페에의 청소년의 심야출입의 제한(제16조), 매춘행위의 엄벌화(제24조의 3), 규제발동을 위한 출입, 경고에 있어서의 경찰관의 관여(제17조, 제18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가된 심야외출의 제한규정 등은 동경도에 있어서 처음으로 청소년건전육성조례가 제정될 당시 청소년문제협의회의 답신에 열거되어 있었으나 조례안작성의 단계에서 삭제된 사항이며, 경고 등에 있어서의 경찰관의 관여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당시의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정안에 의해

66) 부르세라란 여자학생의 운동복과 교복 등을 포함하여 여성이 착용한 후의 의류를 말한다. 1990년까지 학교교육기관에서 체육수업용으로 채용하고 있던 부르마(ブルマー)와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제복과 표준 복으로서 채용되었던 세라복(セラー服)을 단순하게 구성한 합성어이다. 부르세라숍은 사용 후의 부르마 등의 체조복 및 세라복 등의 제복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영업은 단순히 부르마를 판매하는 체육복판매점 및 세라복을 판매하는 제복판매점과는 다르다. 이 영업소에 오는 고객은 주로 본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고객이다. 통상적으로 이와와 같은 착용 후의 의류를 부르세라라고 한다. 즉, 부르마 및 세라복만이 아니라 체조복 및 속옷, 학교수영복, 스포츠용 옷 등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류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자중고생이 착용하는 속옷 및 양말, 일반의류 등도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의류만이 아니라 여성의 사용 후의 생리용품도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러한 영업소에는 초등학교 이하의 체조복, 수영복, 속옷 등도 판매되고 있다.

<http://ja.wikipedia.org/wiki/2007.4.7>

삭제된 것으로 두 가지 모두 40년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개정 특징은 엄벌화로서 예를 들어 매춘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벌칙을 인상하였다. 또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크게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로서 규제의 대상범위의 확대와 벌칙의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진행되었다. 동경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억지적인 대응이라고 하여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후발적인 위치를 점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의해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⁷⁾.

6. 유해환경의 규제를 위한 관련조직 등

일본에서는 성적인 표현 및 폭력 등에 관한 과격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잡지,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 등이 일반서점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유해물을 청소년이라도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는 실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관계 업계에 의한 자주적 조치의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별의 업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이라도 유해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아동포르노, 외설도서 등의 금지정보에 대한 단속의 강화, 프로바이더의 자주적조치의 촉진 등 인터넷

67) 2007년 3월,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다. 개정의 배경으로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접근방법 및 확대 등의 경우의 보호자에 대책 등이 사회적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동경도에서는 2005년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인이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제거하는 filtering의 보급, 청소년에게 신중한 성행동을 촉진하는 환경의 정비,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보호자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로부터의 인터넷이 용이 급속히 확대하였고, filtering보급의 미흡 등, 조속한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 3월에 휴대전화 등의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도 filtering의 고지 및 장려를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이루어 졌다.

<http://www.seisyounen-chian.metro.tokyo.jp/> (2007.6.3)

상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4월부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포르노화상 등을 전송하는 영업인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을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정성풍속물 품판매 등 영업자가 외설물 배포 또는 아동포르노배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영업규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관련분야에 있어서의 규제상황과 공적인 규제기관으로서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공안위원회와 청소년문제협의회에 대하여 개관하도록 한다.

1) 일본정부차원의 유해환경규제

먼저 방송 분야에 대해서 총무성이 1998년 5월부터 청소년과 방송의 관계에 관한 시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개최하여 동년 12월에 시책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①청소년대상프로그램의 충실, ② Media Literacy의 향상, ③ 제3자 기관의 활용, ④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의 추진, ⑤방송시간대의 배려, ⑥방송에 관한 정보제공의 충실 등의 제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언에 대한 구체화작업으로서 1999년 1월, 총무성은 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6월에 청소년과 방송의 문제를 담당하는 제3자 기관의 신설(NHK, 민간방송연합회), 청소년의 시청에 배려한 시간대(17시부터 21시)의 설정(민간방송연합회) 등 각 기관에 의한 자주적인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시책 가운데 제3자 기관에 대해서는 2000년 4월에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외의 시책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총무성에서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방송 분야에 있어서 청소년과 Media Literacy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개최하여 Media Literacy의 향상을 위한 시책의 방향

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현재 이러한 조사연구회의 제언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Media Literacy교재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에 있어서 위법하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무성에서는 2000년 5월부터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의 적정 확보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여 동년 12월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프로바이더(ISP) 등의 자주규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신자 측의 대응으로서 수신을 원하지 않는 정보에의 접촉을 차단하는 기술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등의 제언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제언에 따라 ISP 등의 책임의 명확화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대하여 검토를 함과 동시에 유해정보차단장치의 보급촉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위한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총무성의 허가법인인 통신방송기구에서는 1998년 1월부터 콘텐츠 등급을 지원하는 기술 등, 유해정보차단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2001년 3월까지 실시함과 동시에 1999년도부터 ISP 등의 위법, 유해정보대책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인터넷에 의한 유해통신을 억제하는 시스템 등 정보통신의 부적정한 이용대책에 필요한 시스템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2) 관련업계에 의한 유해정보의 자주규제

일본정부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계 업계에 대하여 유해한 정보의 제공의 자숙 및 자제의 요청을 함과 동시에 관계 업계의 협력을 얻어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5> 관계 업계의 자주규제의 상황68)

관계 업계	내용 등
매스컴 전반	신문, 방송, 출판, 영화, 광고탑 및 레코드의 각 업계에 의해 매스컴윤리간담회전국협의회가 설치되어 매스컴과 청소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협의회 등이 실시
출판	①출판윤리협의회가 유해출판물의 취급에 대하여 독자의 자주규제조치를 실시, ②출판문제간담회(성인오락잡지 등을 간행하는 31사에 의해 조직)가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감안한 자주규제의 편집윤리강령을 규정, ③노골적인 성묘사를 내용으로 한 소년소녀잡지, 단행본 등의 출판물에 대하여 판매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지조치의 실시, ④청소년만화 및 청소년잡지마크의 표시, ⑤성인코너의 설치, ⑥대면판매의 실시
영화, 비디오, 컴퓨터소프트 등	①영화윤리활동의 자주관리기관으로서 영화윤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중의 심사부문이 「영화윤리규정」에 따라 영화의 심사를 실시(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R-18(18세 미만입장금지), R-15(15세 미만입장금지), PG-12(12세 미만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반이 요구)로 지정), ②비디오소프트윤리활동을 위하여 일본비디오윤리협회(업계의 자주심사기관으로서의 조직)에 있어서 「영상소프트윤리규정」을 만들어 독자의 심사를 실시(성인지정(18세미만 관람, 대출, 판매금지), R지정(15세 미만 관람, 대출, 판매금지), 일반의 3가지로 구분하여 지정), ③그 외, 일반인용의 비디오 및 극장미공개의 비디오관계에서는 영상윤리협의회(영화윤리관리위원회와 일본비디오윤리협회에서 구성), 개인컴퓨터관계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 가정용게임소프트관계에서는 컴퓨터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가 각각 윤리강령 등을 규정
방송	①일본방송협회 및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은 시청자로부터의 청소년에 대한 방송대책 및 방송내용에의 의견을 받아 제3자 기관인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주적인 대응을 실시. 또한 Media Literacy의 향상을 위한 방송의 제작 및 방송의 실시, ②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에서는 방송시간대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시청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기준을 신설하여 적어도 주 3시간 청소년이 보아야 하는 방송을 결정, 발표하는 등 방송과 청소년문제에의 대응책을 공표, ③CS디지털방송에 있어

68) 정부보고 제2회

http://www.mofa.go.jp/mofaj/gaiko/jido/0111/11a_027.html 참조 (2007.5.21)

	서는 사단법인 위성방송협회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인용 방송기준을 제정함과 동시에 매년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연구회 및 강연회를 개최, ④CS디지털성인방송윤리위원회(성인용 방송을 제공하는 CS방송사업자에 의해 조직)에서는 방송윤리규정 및 방송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자주심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부회를 설치하여 윤리기준의 유지 및 고양.
광고	각 관계단체가 자주규제기준을 각각 설정하고 광고주, 신문, 방송, 출판, 광고 제작, 광고업의 각사가 공동하여 일본광고심사기구(JARO)를 설립하여 청소년 문제의 관점을 포함한 광고에 대한 문제의 처리 등을 실시.
홍행	①전국 흥해환경위생동업조합연합회(영화, 연극, 연예의 각 업종으로 결성)가 일반용 영화와 PG-12, R-15, R-18제한부 영화의 병행상연의 금지, 제한부 영화의 상연에 있어서 조합에서 규정하는 주의서의 게시 및 제한당사자의 출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자주규제준수사항을 제정, ②영화산업단체연합회(영화관계단체에 의해 조직)가 제한부 영화에의 제한 해당자의 관람 및 18세 미만의 자의 심야홍행관예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심야홍행 등에 관한 신청」을 제정.
노래방	일본 가라오케스튜디오협회가 청소년의 이용시간의 제한, 미성년의 음주, 흡연 방지, 약물의 남용방지, 잠금장치의 불설치, 외부로부터 실내를 볼 수 있는 창 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자주규제기준의 제정 및 전국각지에서 관리자 등이 모여 강습회 등을 실시.
인터넷	①사단법인 텔레콤서비스협회가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에 관계되는 사업자의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②전자네트워크협의회가 정보의 수신자 측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교육현장 등에 배포

3) 유해환경의 규제기관

(1) 공안위원회

본래 공안위원회는 국민의 양심을 대표하는 자에 의해 구성된 합의제의 기관이 경찰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설립된 조직이다. 즉, 공안위원회(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는 일본의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의 하나로서 국가공안위원회와 도도부현공안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부설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되어 내각총리대신의 소할⁶⁹⁾ 하에 설치되어 있는 합의제의 위원회이며 내각부의 외부국이지만 내각총리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국가공안위원회제도는 전후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경찰법에 근거하여 창설되었다. 이것은 현재 유일한 대신위원회⁷⁰⁾이며 국무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며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의 경찰기관으로서 국가의 공안과 관계되는 경찰 운영을 담당하여 경찰교양, 경찰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여 경찰직원의 활동의 기준책정 등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것에 의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즉, 경찰청장관 및 도도부현경찰의 간부직원(경치총감, 도도부현경찰본부장, 방면본부장 및 그 외의 경시정 이상의 계급엔 경찰관)의 임명과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재정에 있어서 심사청구에 대한 의결,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폭력단이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의 확인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한편, 국가공안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서의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자치사무인 도도부현의 경찰을 관리⁷¹⁾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각 도도부현에 설치

69) 소할(所轄)이란 지위명령권이 없는 감독으로서 지휘감독보다 약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70) 대신위원회란 일본정부의 부성의 외부국인 위원회 가운데 국무대신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지칭하는 구분호칭이다. 2007년 현재 국가공안위원회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71) 여기에서의 관리(管理)란, 사무집행의 세부에 대해서는 개개의 지휘감독권을 포함하지는 않으나 공안위원회의 관할사무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 그 방침에 따라 경찰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도도부현경찰을 감독한다는 취지로 경찰청 또는 도도부현경찰에 있어서 사무의 처리가 방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게 된다.

된 행정위원회이다(지방자치법 제180조의 9, 경찰법 제38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⁷²⁾에서도 국가공안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지방경찰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지방경찰관 이외의 도도부현경찰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는 취지의 재정 등이다.

한편,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로서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풍속영업 및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의 허가와 신고 및 지시와 정지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즉, 풍속영업을 하려는 자는 풍속영업의 종별에 따라 영업소 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공안위원회는 선량한 풍속 혹은 깨끗한 풍속 환경을 해하는 행위 및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거나 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⁷³⁾. 또한, 영업자가 허위 그 외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허가 및 승인을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때에는 공안위원회가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⁷⁴⁾. 마

72)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도도부 및 지정현(정령지정시를 포괄하는 현)에 있어서는 5인, 그 이외의 현 및 홋카이도(北海道)의 각 방면에 있어서는 3인의 비상근의 위원에 의해 조직되어 있으며, 위원은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의회의 동의 등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73) 제3조 ① 풍속영업을 영업하려는 자는 풍속영업의 종별에 따라 영업소 별로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공안위원회는 선량한 풍속 혹은 깨끗한 풍속 환경을 해하는 행위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전항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거나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74) 제8조 공안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위 그 외 부정한 수단에 의해 당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 ②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 ③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당해 허가를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휴지하거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것, ④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것.

찬가지로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의 증축, 개축 그 외의 행위에 의해 영업소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⁷⁵⁾.

한편, 풍속영업자가 당해영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선량한 풍속 또는 깨끗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거나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풍속 영업자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또는 깨끗한 풍속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풍속영업자의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당해 풍속 영업의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⁷⁶⁾.

이와 같이 풍속영업의 허가 및 변경에 있어서 공안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공안위원회는 풍속 영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성풍속관련특수영업(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영상송신형성풍속특수영업, 점포형전화이성소개영업)에 대한 신고와 지시 또는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즉, 성풍속관련특수영업을 운영하

75) 제9조 ①풍속영업자는 증축, 개축 그 외의 행위에 의한 영업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때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해 공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6) 제25조 공안위원회는 풍속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 혹은 깨끗한 풍속 환경을 해하거나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풍속 영업자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혹은 깨끗한 풍속 환경을 해할 행위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6조 공안위원회는 풍속영업자 혹은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법령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현저하게 선량한 풍속 혹은 깨끗한 풍속 환경을 해하거나 혹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풍속영업자가 이 법률에 근거한 처분 혹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풍속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풍속영업의 허가를 취소 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풍속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려는 자는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영업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성폭속관련 특수영업자가 법률 및 명령, 조례의 규정 등에 위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의 정지 및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⁷⁷⁾.

이와 같이 공안위원회는 전반적인 풍속영업의 허가와 변경, 업무상황에 대한 감독,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등 풍속 환경이 선량한 풍속 또는 깨끗한 풍속의 저해여부와 소년의 건전육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77) 제27조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종별에 따라 영업소 별로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종별, 4. 영업소의 구조 및 설비의 개요, 5. 영업소에 있어서 업무의 실시를 통괄 관리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제29조 공안위원회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당해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혹은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혹은 깨끗한 풍속 환경을 해하는 행위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0조 공안위원회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 혹은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죄 혹은 제4조 제1항 제2호.(중략) 위법한 행위 그 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혹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미칠 중대한 부정행위로 정명에서 규정하는 것을 한 때 또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이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때는 당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에 대하여 8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공안위원회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역 또는 지역에 있어서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을 운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대신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2) 청소년문제심의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각 도도부현에서 제정한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한 규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2에 의하면 「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를 하거나 제8조에 의해 지정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려 할 때는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동경도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서류 및 영화, 연극, 그리고 완구류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유익한 것, 즉 우량도서류 등에 대한 추천과 불건전도서류 등의 지정과 유해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의 변경,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는 청소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사의 자문에 따라 조사 및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재 대부분의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⁷⁸⁾으로 각 도도부현조례에서는 불건전한 도서류 등(도서, 영화, 완구, 도검류 등)을 유해도서류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정도서류 등에 대해서는 판매, 대여, 배포, 열람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정의 경우에는 각 도도부현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⁷⁹⁾.

한편,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사는 청소년문제협의회로부터 반드시 답신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문제협의회는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법에 근거하여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문제협의회조례에 규정되어 있다⁸⁰⁾.

78) 이러한 심의회명칭은 각 지역의 청소년보호조례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심의회, 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 청소년애호심의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79) 예를 들어 동경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2에 의하면, '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동경도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80)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법 제1조 도도부현 및 시(특별구를 포함, 이상 동일)정촌에 부속기관으로서 각각 도도부현청소년문제협의회 및 시정촌청소년문제협의회(특별

이와 같이 각 도도부현의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한 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청소년문제심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⁸¹⁾. 특히, 각 도도부현의 청소년문제심의회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며 청소년을 위한 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지사의 자문에 따라 우량의 추천과 유해지정을 위한 자문을 받아 심의한 결과에 따라 추천 및 지정이 결정되면 지사에게 결과를 답신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통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것을 주요한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한 심의사항으로서는 유해도서류 등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조례에 따른 유해도서류에 대한 지정방법으로서는 청소년문제심의회(자문)에 따라 개별지정, 긴급지정, 포괄지정, 단체지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문제심의회(자문)의 주요한 활동의 하나인 유해도서의 지정 방식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구에 있어서는 특별구청소년문제협의회, 이상 동일.)이하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라 총칭한다.)를 들 수가 있다.

제2조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①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종합적시책의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것, ②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종합적시책의 적절한 시책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행정기관상호의 연락조정을 도모하는 것, 2.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해지방공공단체의 장 및 그 구역 내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81) 심의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예를 들어 新瀉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2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의원은 청소년의 보호자 3인 이내, 관계 업계의 의견을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보도관계자 3인 이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직에 있는 자 3인 이내, 청소년에 관한 상담 또는 보도기관의 대표 2인 이내, 교육, 의학, 심리학 그 외에 관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3인 이내, 교육위원회의무교육과장, 고등학교교육과장 및 생활학습추진과장 또는 경찰본부방범부소년과장의 직에 있는 자에서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동경도청소년문제협의회조례 제2조에 의하면 협의회는 회장 및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에 있어서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3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다. 즉, ①동경도의회의원 6인, ②학식경험자 16인 이내, ③관계행정청의 직원 5인 이내, ④동경도의 직원 8인 이내이다.

가. 개별지정방식

개별지정방식의 과정을 보면 먼저 각 도도부현의 청소년과 직원 등이 서점 및 편의점 등에서 도서류를 구입하여 구입한 도서 가운데 일정한 것에 대하여 유해지정여부를 심의회에 자문한다. 이에 심의회에서는 도서류를 심사 및 지정의 적부에 대하여 답신을 하며 유해로 지정된 도서류는 공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각 판매점 등에도 통지된다. 이렇게 지정된 도서류는 청소년에의 판매 등이 금지되며 또한 구분 진열의 의무 및 포장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한 판매점 등이 유해로 지정된 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 혹은 구분 진열의무 및 자동판매기에의 수납금지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청소년과에 의한 구두 및 문서에 의한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개별지정은 후술하는 포괄지정과 달리 유해로 지정된 도서류의 구체적인 명칭이 표시된다. 또한 포괄지정과 달리 성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폭력 및 범죄 또는 자살에 관한 표현 등도 유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진 및 그림만이 아니라 내용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량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포괄지정의 기준에 이르지 않은 도서류에 대해서도 유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방식은 심의회 의견의 종합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적절한 지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심의회 위원으로서 관계자가 선정되므로 유해지정에 따른 반발 등을 견제할 수 있다.

<표 IV-6>일본의 청소년조례에 의한 유해규제의 상황(개별지정의 판단기준)

(2006년 1월 1일 현재)

도도부현	성적감정을 자극하는 것	폭력성을 유발 및 조장하는 것	잔학성을 유발 및 조장하는 것	범죄를 유발 및 조장하는 것	자살을 유발 및 조장하는 것	그 외	비고
北海道	○	○	-	-	-	도의심을 손상하는 것	*182)
青森	○	○	○	-	-	-	
岩手	○	○	○	-	-	-	
宮城	○	○	○	○	○	-	

秋田	○	○	○	-	-	-	
山形	○	○	○	-	-	-	
福島	○	○	○	-	-	-	
茨城	○	○	○	○	○	심신의 건강을 스스로 해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것을 해하는 것	
栃木	○	○	○	○	○	-	
群馬	○	○	○	○	○	-	
埼玉	○	○	○	○	○	-	
千葉	○	○	○	○	-	-	
東京	○	-	○	○	○	-	*283)
神奈川	○	○	○	규칙에 예시	규칙에 예시	-	*284)
新潟	○	○	○	-	-	-	
富山	○	○	○	-	-	-	
石川	○	○	○	-	-	-	
福井	○	○	○	○	-	-	
山梨	○	○	-	-	-	-	*185)
長野	-	-	-	-	-	-	조례무
岐阜	○	-	○	○	○	-	
静岡	○	○	○	-	-	도의심을 손상시키는 것	
愛知	○	-	○	○	○	-	
三重	○	○	○	○	-	-	
滋賀	○	○	○	○	○	-	
京都	○	○	○	○	○	-	
大阪	○	○	○	○	-	-	*286)
兵庫	○	○	○	○	○	공포심을 주는 것	
奈良	○	○	○	○	-	-	
和歌山	○	○	○	○	-	범죄성을 조장하는 것	*187)
鳥取	○	○	○	-	-	-	
島根	○	○	○	-	-	-	
岡山	○	○	○	-	-	텔레폰클럽 등 영업의 명칭 또는 전화번호가 기재	*188)

						또는 기록되어 있는 것	
広島	○	○	○	-	-	-	
山口	○	○		-	-	-	
徳島	○	○	○	-	-	-	
香川	○	○	-	-	-	복지를 저해하는 것	*189)
愛媛	○	○	○	○	○	-	
高知	○	○	○	○	-	-	
福岡	○	-	○	-	-	비행을 유발하는 것	
佐賀	○	○	○	-	-	-	
長崎	○	○	○	-	-	-	
熊本	○	○	○	○	-	사람의 생명, 신체 혹은 재산에 위해를 미치는 것	
大分	○	○	○	○	○	-	
宮崎	○	○	○	○	-	-	
鹿児島	○	○	○	-	-	-	
沖縄	○	○	○	○	-	-	*190)
합계	46/47	42/47	42/47	24/47	14/47		

※ 1 조례에 ‘등’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 2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예시

- 82) 제5조 제1항 제3호 지사가 도서류(서적, 잡지, 그림 그 외의 간행물 및 영 화필름, 슬라이드필름, 녹화테이프, 녹화판, 녹음테이프, 녹음판, 디스켓 그 외의 영상 또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기를 사용하여 당해영상 또는 음성이 재생되는 것을 말한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저하게 폭력성을 조장하고 성적감정을 자극하거나 또는 도의심을 손상하는 것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 83)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5조(지정도서류, 지정영화 등의 기준)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의 동경도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종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는 것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전라 혹은 반라 또는 이러한 것에 가까운 상태의 자태를 묘사하는 것에 의해 천박한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부정하는 성적행위를 용이하게 연상하게 하는 것.
 - ②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표현하는 것에 의해 천박한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부정하는 성적행위를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것.
 - ③ 전자작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전자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것

에 의해 사람에게 천박한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부정하는 성적행위를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것.

④①에서③까지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그 묘사 또는 표현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로 천박한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격을 부정하는 성적행위를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것

(2) 매우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폭력을 부당하게 찬미하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

② 잔학한 살인, 상해, 폭행, 처형 등의 장면 또는 살상에 의한 육체적 고통 혹은 언어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자극적으로 묘사 또는 표현하고 있는 것.

③ 전자적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전자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것에 의해 사람에게 잔학한 행위를 유사적으로 체험시키는 것.

④①에서 ③까지 열거하는 것 외에 그 묘사 또는 표현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로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

(3) 현저하게 자살 또는 범죄를 유발하는 것.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살 또는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를 찬미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의 실행을 권유 혹은 교사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

② 자살 또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의 수단을 모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표현한 것.

③ 전자적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전자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것에 의해 사람에게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를 유사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

84) 神奈川県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유해홍행 등의 지정의 기준) 제3조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남녀의 육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정상적인 성적수취심을 해하거나 또는 천박한 느낌을 주는 것,

(2) 성교, 자위 혹은 배설자태 또는 변태성욕에 기초한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3)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연상하게 하여 정상적인 성적수취심을 해하거나 또는 천박한 느낌을 주는 것.

(4) 대사, 회화, 설명, 음악 그 외의 음성 에 의한 표현이 정상적인 성적수취심을 해하거나 또는 천박한 느낌을 주는 것.

(5) 그 외 표현이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로 정상적인 성적수취심을 해하거나 또는 천박한 느낌을 주고 청소년의 성적감정을 자극하거나 그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살인, 상해 또는 폭행, 물건의 손괴, 동물의 학대 그 외 폭력적인 행위를 고의로 찬미하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

(2) 살인, 상해 또는 폭행, 동물의 학대 그 외 폭력적인 행위를 잔인 또는 음습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3) 살인, 상해, 폭행 등의 수단 또는 실행행위에 이르는 경과를 모방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 (4)마약, 각성제 및 이에 유사한 약물 및 신나, 접착제 등의 남용을 유발하거나 또는 조장하도록 묘사하고 있는 것.
- (5)자살, 자상행위, 잔학 등을 긍정하고 유발 또는 조장하도록 묘사하고 있는 것.
- (6)그 외 표현이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로 청소년의 폭력성 또는 잔학성을 유발하고 또는 조장하며 그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85) 제5조 제3항 지사는 도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또는 매우 폭력성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도서류를 유해도서류로서 지정할 수 있다.
- 86) 大阪府청소년건전육성조례시행규칙 (유해한 도서류의 지정의 기준) 제4조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과 같다.
- (1)음부, 음모 혹은 둔부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러한 노출과 동등한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을 포함) 또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천박하고 또는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 (2)전라, 반라 혹은 이러한 것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자위의 자태 또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여성의 배설의 자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천박하거나 또는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 (3)이성 간 혹은 동성 간의 성행위 혹은 외설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 또는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천박하거나 또는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 (4)변태성욕에 근거한 행위 또는 근친상간, 난교 등의 배덕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
- (5)강간 그 외의 능욕행위를 표현하는 것.
- (6)청소년에 대하여 명백히 천박하거나 또는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이 문자 또는 음성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것.
2.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과 같다.
- (1)살인, 상해 혹은 폭행(동물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구타하는 행위를 포함) 또는 이러한 행위에 의해 육체의 고통을 잔인하게 또는 음산하게 표현하는 것.
- (2)살인, 상해, 폭행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찬미하고 또는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
3.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과 같다.
- (1)살인, 상해, 폭행, 절도 그 외의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
- (2)살인, 상해, 폭행, 절도 그 외의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이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를 포함)의 방법으로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나. 긴급지정

긴급지정이란 개별지정의 예외로서 심의회의 의견에 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자문을 생략하여 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 후에 신속하게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지정방식은 2004년 4월 현재 동경, 에히메(愛媛), 톳토리(鳥取) 및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나가노(長野)를 제외한 43의 도부현에서 도입하고 있다.

긴급지정의 경우 먼저 각 도부현의 청소년과 직원 등이 서점 및 편의점 등에서 도서류 등을 구입하여 구입한 도서류 등 가운데 상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사 없이 유해로 지정된다. 유해로 지정된 도서류 등은 공보에 고시되고 판매점 등에도 통지된다. 이러한 도서류 등은 청소년에의 판매 등이 금지됨과 동시에 구분 진열 및 자동판매기への 수납금지의무 등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판매점 등이 유해로 지정된 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 혹은 구분 진열 및 자동판매기への 수납금지의무 등에 위반하여 청소년과에 의한 구두 및 문서에 의한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자 등이 처벌된다.

이와 같은 긴급지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즉, 조문상 개별지정

- 87) 제13조 제1항 지사는 흥행, 도서류 가운데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현저하게 폭력성 혹은 잔인성을 조장하고 범죄를 유발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범죄성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흥행 또는 도서 등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유해한 것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 88) 제10조 제1항 지사는 도서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매우 폭력성 또는 잔학성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소년에게 이것을 보이거나 듣게 하거나 또는 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도서를 지정할 수 있다.
- 89) 제8조 제2항 지사는 전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도서 등 외에 내용이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거나 또는 매우 폭력성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등을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등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 90) 제12조 제1항 지사는 도서 등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폭력성, 잔학성 혹은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도서 등을 유해한 도서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 예외라는 위치에 있으므로 심의회에의 자문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개별지정에 준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심의회에 개최빈도와 깊게 관계되어 있다. 즉, 심의회가 장기간에 걸쳐서 개최되지 않는 등 개최간격이 큰 경우에는 긴급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동경도는 긴급지정과 유사한 제도로써 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소위원회의 결정은 동경도청소년건전육성심의회에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표지조치⁹¹⁾의 적용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에히메(愛媛)의 경우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심의회가 설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 포괄지정

포괄지정이란 천박한 자태 등을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그러한 것을 묘사한 그림이 전체의 3분의 1, 5분의 1 혹은 20페이지 이상, 10페이지 이상 등의 기준에 달하는 도서류에 대하여 심의회에의 심사 없이 또한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는 것 없이 자동적으로 유해도서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괄지정방식은 2004년 4월 현재 동경과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나가노(長野)현을 제외한 45의 도부현에 도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포괄지정은 먼저 도서류 중에 일정한 기준에 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심사하는 것 없이 유해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도서류 등은 공보에 고지하지 않고 판매점 등에도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지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서점, 편의점 등에 기준이 되는 도서류를 통지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러한 도서류는 청소년에의 판매 등이 금지됨과 동시에 구분 진열 및 자동판매기 등에의

91) 표지조치란 출판계의 업계단체, 출판윤리협의회에 의한 자규규제의 하나이다. 동경도청소년건전육성협의회에 있어서 연속 3회 또는 연간 통산 5회 ‘불건전’ 지정을 받은 잡지류에 대하여 다음의 발행 호부터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표지를 붙이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잡지는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도 판매점으로부터의 주문이 없는 한 물건을 송부할 수 없다.

수납금지의무 등이 과해진다. 또한 판매점 등이 유해한 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 혹은 구분 진열 및 자동판매기에의 수납금지의무 등에 위반하여 청소년과에 의한 구두 및 문서에 의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자 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포괄규정의 특징으로는 개별규정과는 달리 유해하다고 지정된 도서류의 구체적인 명칭이 표시되지 않으며 또한 천박한 자태 등(성적 표현) 만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진 및 그림(비디오 등의 경우는 장면) 만을 유해지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량에 대한 기준이 있으므로 개별지정의 대상이 되는 도서 가운데 일부의 도서류가 지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지정도서류가 되는 도서가 많은 반면에 판매점 등이 조례를 준수하기 위하여 포괄지정의 기준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도서류를 판매점 등이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에의 판매금지, 구분 진열 등의 철저함에는 곤란하다. 한편, 일부의 지역에서는 지사가 지정한 업체단체가 청소년에게 부적당하다고 한 비디오 등을 유해도서류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표 IV-7> 일본의 청소년조례에 의한 포괄지정의 내용(서적 또는 잡지 등)

(2005년 4월 현재)

도도부현	규제 그림 및 사진의 내용	전체	총량	단체	표지, 포장	제외 규정	비고
北海道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5조 제1호)	3분의 1이상	-	-	-	-	
青森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그림으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3조 제1호)	3분의 1이상	-	-	-	-	
岩手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화 또는 사진으로 지사가 청소년 환경정화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칙으로 정한 것(제10조)	3분의 1이상	-	-	-	-	

宮城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6조 제2항 제1호)	5분의 1이상	-	-	-	-	
秋田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성적감정을 자극하는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9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山形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성적감정을 자극하는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8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福島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8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茨城	별표에서 규정한 자태 또는 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그림(제9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초과	○	-	-	
栃木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지사가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2조 제3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群馬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2조 제3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埼玉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적인 행위로 별표 1에서 열거하는 것을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그림 (제11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千葉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0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東京							
神奈川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7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新潟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7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富山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9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石川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4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福井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1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山梨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7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長野							
岐阜	특히 천박한 자태 혹은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가 규칙에서 규정한 것에 의해 지사가 지정한 내용인 것 (제6조 제2항)	10분의 1이상	10페이지 이상	-	○	-	
静岡	별표에서 열거하는 자태 혹은 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혹은 그 복제물 또는 묘사한 도화(제9조 제4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愛知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	10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 (제6조 제2항)						
三重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2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滋賀	전라 혹은 반라로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또는 촬영한 도화 또는 사진으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제11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京都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3조의2 제2항)	3분의 1이상	-	-	-	-	
大阪	전라 혹은 반라로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로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또는 촬영한 도화, 사진 등 (제13조 제2항)	5분의 1이상	30페이지 이상	-	-	○	
兵庫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2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奈良	사진: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하는 것 도화: 천박한 자태 등을 묘사한 도화로 지사가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규칙으로 규정한 내용을 가지는 것 (제21조 제2항)	사진은 전부 또는 일부도화는 10분의 1이상	사진은 전부 또는 일부도화는 10페이지 이상	○	-	-	
和歌山	천박한 자태 등을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것 (제13조 제5항)	5분의 1이상	-	○	-	-	
鳥取	전라 혹은 반라의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행위, 외설행위 혹은 성욕에 근거한 변태적 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3조 제4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鳥根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3분의 1이상	-	-	-	-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6조 제2항)						
岡山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지사가 별도로 규정한 것(제10조 제3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広島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28조 제2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山口	의복을 벗은 사람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행위로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을 표현한 도화 또는 사진 (제6조 제4항)	10분의 1이상	10페이지 이상	-	-	○	
徳島	별표 제1에서 정하는 자태 또는 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그림(제8조 제3항)	5분의 1이상	10페이지 이상	○	-	○	
香川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는 자태 또는 성적인 행위로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을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제8조 제1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愛媛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이러한 것을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5조 제4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초과	-	-	○	
高知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묘사한 도화 또는 피사체로 한 사진으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1조 제2항)	5분의 1이상	10페이지 이상	○	-	-	
福岡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6조 제2항)	10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佐賀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피사체	3분의 1이상	-	-	-	-	

	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로 별표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것 (제13조 제2항)						
長崎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 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 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 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4조 제3항)	3분의 1이상	-	-	-	-	
熊本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 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행위를 촬영하 거나 혹은 묘사한 사진 혹은 도 화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9조 제3항)	10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大分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 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 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장면 으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1 조 제4항)	3분의 1이상	30페이지 이상	-	-	-	
宮崎	사진 또는 도화로 전라, 반라 혹 은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 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 사한 성행위 가운데 지사가 청소 년건전육성심의회 의견을 듣고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제12조 제3항)	3분의 1이상	-	-	-	-	
鹿児島	별표의 좌란에서 열거하는 사진 또는 도화 (제9조 제5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沖縄	전라, 반라 혹은 이에 가까운 상 태에서의 천박한 자태 또는 성교 혹은 이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 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도화 로 규칙에서 규정한 것 (제12조 제3항)	5분의 1이상	20페이지 이상	-	-	-	

라. 단체지정

단체지정이란 지사가 지정한 업체단체⁹²⁾가 청소년에게 부적당한 도서류

92)

<표 IV-8>지정단체의 일람

지정단체의 명칭	도도부현	합계
일본비디오윤리협회	北海道 `岩手県 `宮城県 `愛知県 `福岡県 `佐 賀県 `長崎県 `熊本県 `沖縄県	9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	岩手県 `宮城県 `愛知県 `福岡県 `佐賀県 `長	7

를 유해도서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5년 4월 현재 11도부현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예를 들어 아이치(愛知)현에서는 2005년 3월에 일본비디오윤리협회와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를 지정하여 이러한 단체가 성인지정이라고 판정한 도서류에 대해서는 개별지정 및 포괄지정과 동일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체지정은 먼저 도서류의 제작 또는 판매를 하는 자로 구성하는 단체를 지사가 지정하며, 이러한 지정단체는 도서류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청소년에게 부적당한 도서류 등을 유해도서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심사기준 및 방법, 판정결과의 표시방법 등은 지정단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도서류로 판정된 도서류는 공고로 고지되지 않으며 판매점 등에도 통지되지 않는다. 판매점은 업자가 표시한 지정단체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청소년에의 판매제한 및 구분 진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판매점 등이 유해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 혹은 구분 진열 등에 위반하여 청소년과에 의한 구두 및 문서에 의한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지정의 특징으로는 먼저, 개별지정과는 달리 유해라고 지정된 도서류의 구체적인 명칭이 고지되지 않으며, 또한 지정단체의 심사기준이 유해지정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7. 소결

이상과 같이 일본의 유해업소의 현황과 이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규제 및 규제관련조직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	崎県 熊本県	
영상윤리관리위원회	長崎県	1

일본의 풍속영업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풍속산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4년의 개정에는 심야음식점영업에 따른 소년비행의 심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장소 등의 규제와 연소자의 이용의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966년의 개정에서는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던 개인실욕장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72년의 개정은 모텔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의 성비행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1984년의 개정에서는 풍속영업에 의한 청소년의 성관련비행문제와 모텔과 호텔, 개인실 누드, 개인실 마사지 등에서의 여자청소년의 매춘행위 등에 따른 조치였다. 한편, 2001년의 개정에서는 외국인여성에 의한 매춘행위의 증가와 텔레폰클럽을 이용한 아동매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구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후에도 출장풍속점 등의 새로운 풍속업종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업종에서 야기된 청소년의 성관련업소의 이용과 당해 업소에의 종사 등을 규제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도도부현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도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즉, 포르노만화, 포르노비디오, 포르노잡지 등의 불건전도서류의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이후의 진화하는 풍속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청소년의 매춘행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텔레폰클럽의 규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성관련 CD-ROM의 규제, 청소년을 성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르세라의 규제와 풍속영업점의 청소년고용권유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지금까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보호조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①각 자치단체의 규제내용이 통일적이지 못하다는 점, ②각 자치단체의 조례운용상에 편차가 있다는 점, ③조례에 의한 청소년의 행동규제가 지나친 결과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④벌칙이 없는 업자의 자주적 노력의무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그 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점, ⑤청소년의 정

의가 불일치하는 점 등이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①②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에 대해서는 헌법 제14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헌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및 5항에 의해 조례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동종의 행위가 일부의 지역에서만 처벌된다고 하여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법부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형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즉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방 지역의 조례에 의한 벌칙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나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당해조례의 규정은 헌법 제14조 내지 제31조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②의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운용상의 편차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인접한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발생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출판물 및 영화가 일부의 지역에서는 엄중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다른 지역에서의 규제는 엄중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①의 문제와도 관련성을 갖지만 ①의 경우에는 규제 그 자체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과의 문제인 것에 대하여 ②의 경우는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의 운용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①은 입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문제시 하는 것이며, ②는 운용에 있어서 불평등을 문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로 ④의 벌칙이 없는 규정만으로는 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형벌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훈시규정만으로는 조례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조례의 목적이 본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양호한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그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업자의 자주적인 규제에 위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있다. 유해환경의 규제를 관련업자의 자주규제에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교토의 조례의 경우에는 자

신들의 지역의 유해환경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주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며, 또한 업계에서도 환경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벌칙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도록 어떻게 운용을 하여야 하는 가라는 곳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總理府靑少年對策本部, 1984 : 49-52).

이와 같이 일본의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 대해서는 그 운용상의 다양한 문제와 법적규제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종래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78년의 자유민주당의 문교부회에서 제기된 중앙입법의 필요성론 및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정례총회에 있어서 「청소년건전육성법(가칭)」의 제정요구결의 등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4년의 「소년비행과 유해환경」에 관한 청소년육성국민회의환경문제전문위원회에서도 중앙입법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0년에 「청소년사회환경대책기본법」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많은 검토과정의 결과로서 2004년에 「청소년건전육성기본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관련업계의 반대운동⁹³⁾과 법률내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심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폐안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종래부터 이러한 중앙입법화와는 반대견해로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종합적입법의 필요성은 정치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형식적인 이유는 어떻든 간에 실질적인 견지에서는 전무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견해도 있다(久世公壺, 1967 : 64).

이와 같이 일본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입법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방적인 행정수요는 지역행정기관에 의하여

93) 반대의견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즉, 제9조는 단순한 노력규정으로 공권력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구제조치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는 인정되지만 가정 및 지역, 업계가 자주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유해정보의 정의가 애매한 것으로 성표현 및 폭력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가 조문으로부터는 판명할 수 없으므로 창작활동의 축소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

지역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육성조례가 자치입법으로서 갖는 의의를 인식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하여 지역적 요청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행정수요를 감안한 상태에서 규제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방식이 현재의 일본의 청소년보호행정의 현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V.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2. 정책 제언

V.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법상에 제시된 유해업소의 법률적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둘째, 신종 및 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고용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대한 구조적, 내용적 특성에 따른 공통적인 유해성을 분석하며 셋째,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적 접근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장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장조사는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지역은 대도시(서울, 부산), 중도시(창원, 구미)의 유해업소 집중지역(중심상업지구)을 중심으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는 유해업소에 고용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 30명(여20명, 남10명)을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형태와 내용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유해업소의 개념과 분류체계, 신종·변종 유해업소의 운영실태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얻었다.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념적 분류체계 및 분류유형은 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 분류체계

분류체계		주요 내용	
1차적 (주요) 유해요인	물리적 유해요인	실체가 명확한 유해요인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등	
	내용적 유해요인	실체의 내용이 유해한 요인 - 음란 비디오물, 폭력 비디오물, 선정 만화 등	
	행위적 유해요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조장시키거나 동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요인 - 음란행위, 호객행위, 성적 접대행위 등	
2차적 유해요인	청소년에게 유해업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하거나 유해요인과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유해행동을 매개 또는 강화하는 요인 - 밀실(칸막이), 심야영업, 접객서비스 등)		
청소년 문제 유발 가능성	이용도	업소를 청소년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정도(경험)	
	접근성	업소의 위치가 청소년 생활환경과의 물리적 거리 (밀접도)	
	유해강도	업소의 유해성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도	
		중독성	업소의 유해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정도
		음란성	업소에서 영업내용이 외설적이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정도
		업소에서 폭력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정도	
		정신적·신체적 건강침해성	업소의 활동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
반윤리성	업소의 영업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도		

유해성 분류체계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유형

구 분	직접유해요인 (1차적 유해요인)		간접 유해요인 (2차적 유해요인)		청소년의 문제 유발 가능성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유형 1	●		●		●
유형 2	●		●			●
유형 3	●			●	●	
유형 4	●			●		●
유형 5		●	●		●	
유형 6		●	●			●
유형 7		●		●	●	
유형 8		●		●		●

위의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형1은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도 높은 업종이다.
- ② 유형2는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은 낮은 업종이다.
- ③ 유형3은 1차적 유해요인은 많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적는데 비해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은 높은 업종이다.
- ④ 유형4는 1차적 유해요인은 많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적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도 낮은 업종이다.
- ⑤ 유형5는 1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많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은 업종이다.
- ⑥ 유형6은 1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2차적 유해요인은 많고, 청소년문제 유발성은 낮은 업종이다.
- ⑦ 유형7은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은 적으나 청소년문제 유발가능성은 높은 업종이다.
- ⑧ 유형8은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은 적고, 청소년문제 유발 가능성도 적은 업종이다.

둘째, 신종 및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종 및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 내용

업소명	시설 및 설비 구조	서비스 내용
호스트바	5~30인용 밀실, 전용화장실, 특수조명(싸이키, 나이트, 서포 트라이트 등)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쇼, 신체 접촉, 요구따라 2차 성매매
나이트클럽	노래방 시설이 갖춰진 밀실, 어두운 조명 및 특수 조명, 홀 상황 중계 모니터	심야영업, 술, 담배, 남녀 고객 만남 주선

티켓다방	일반적 커피숍 분위기, 은은한 조명과 음악	심야영업, 전화 예약 고객에 찾아가 차배달, 잔심부름, 성파트너 역할 등
대딸방	1인용 밀실, 욕실, 다양한 조명	24시간, 담배, 신체일부 성서비스(삽입제외)
단란주점	5~30인용 밀실, 전용화장실, 특수조명(싸이키, 나이트, 서포 트라이트 등)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쇼, 신체 접촉, 요구따라 2차 성매매
안마시술소	1인용 밀실, 직간접 조명 목욕 및 샤워시설, 간이침대	심야영업, 담배, 안마, 성파트너/ (신중) '술상' 서비스
보도방	5~30인용 밀실, 노래방 시설, 특수조명, 음향장비 이동수단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신체 접촉, 요구 따라 2차 성매매
일반음식점	일반적 음식점 분위기, 은은한 조명과 음악/개인 밀실(일반 가정집 방), 같은 건물에 모텔	06:00~24:00, 담배, 전화 예약 고객에 찾아가 즉 배달, 성파트너/홀서빙, 노래, 춤, 성매매
성인 전용 비디오방	1인 전용 노래방 시설, 유리너머 또 하나의 밀실, 어두운 조명, 붉은 조명	담배, 성적 흥분행위를 보여주어 자위를 도움
여인숙	숙박시설, 샤워실, 어두운 조명, 간접 조명	술, 담배, 직접적 성행위
남성전용 휴게텔	숙박시설, 샤워실, 어두운 조명, 스탠드	술, 담배, 흥분제, 포르노 비디오, 성서비스
비디오방+만화방+체험방	개인 밀실, 유리 칸막이 방	대화, 여성 나체를 보며 자위
프리존	원룸형 밀실, 컴퓨터, DVD	애무 및 유사 성행위, 성관계 가능
대딸방 - 하드방	칸막이로 구분, 방음 대신 잔잔한 음악	마사지, 자위를 돕는 '핸즈 서비스', 성매매
유리방	1평 남짓한 2개의 방(유리로 구분)	성인영화, 성적 흥분행위를 보여주어 자위 도움, 실제 성매매
남성티켓다방	일반 카페	차 배달, 심부름, 성매매
남성전용 뷰티샵	룸형태, 대기실, 샤워실, 대형 거울, 아로마 향로, 간접조명	성관련 대화, 유사 성행위 서비스, 성행위

성인 PC 체험방	밀실, 컴퓨터	성관련 대화, 포르노 감상, 유사성행위(자위도움)
누드바	20~25개 테이블, 업소 중간 무대, 붉은 조명	스트립쇼, 유사 성행위, 요구 시 2차 성매매
멀티방	밀실, 방음, DVD	음란 동영상, 성행위
호래방	노래방 밀실	심야영업, 술, 춤, 노래
인형체험방	3평 정도 밀실, 샤워시설,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 유사성기	리얼돌 이용 자위도움, 음란 동영상
플스텔	모텔형 밀실, 욕실, 게임기	음란 동영상, 술, 담배, 성행위
핑크살롱	부스타입 좌석, 어두운 카페같은 분위기	술, 유사성행위, 구강성교
페티시클럽	밀실, 지하철, 사무실 등 사실적 세트	역할극, 유사성행위
여성전용 애무방	오피스텔	마사지, 성매매
에인대행알바(‘스폰 등)	인터넷 교제 사이트 이용	성행위, ‘스폰’의 경우, 지속적인 성행위
스트립방	1평 남짓 밀실, 붉은색 조명	자위 도움, ‘홀딱쇼’, 성행위쇼 연출
성인폰팅업소 전화방	1평 크기 밀실, 전화기, 재택 가능	‘폰섹스’ 제공
비키니이발소	마사지 침대, 기구	구강성교, 유사성행위
여관바리업	밀실, 대형 거울, 대기실	24시간, 성매매
여성전용 증기탕	일부 가정집 내부(빌라)	픽업 서비스, 호스트가 성적 서비스 제공
누드카페	기존 카페 활용	심야영업, 술, 신체 접촉 및 유사 성행위, 파티 및 게임
노래연습장	노래방 밀실	도우미 알선, 술, 담배, 유사성 성매매
무도장	-	-
무도학원	-	-
비디오감상실	밀실, 어두운 조명	성행위, 성인용 비디오물 시청
사행행위영업	게임설비	도박, 사행행위 영업

유흥주점	노래방시설, 춤 위한 무대, 밀실	홀딱쇼, 유사 성행위, 요구시 2차 성매매
PC방	컴퓨터, 밀실	여성도우미의 유사 성행위, 사행행위
만화대여업	만화책, 일반 상점 구조	청소년 이용불가 만화 대여
비디오물 소극장업	어두운 조명	성인용 비디오물 감상, 성행위
소주방	일반 음식점 구조, 어두운 조명	술, 담배
이용업	밀실, 샤워시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카페	칸막이 시설, 은은한 조명	유사 성행위, 술, 담배
호프	일반 음식점 구조	술, 담배, 불건전 이성 만남 주선

위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은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① 1차적 유해요인으로서는 술, 담배 등 유해물질을 제공하거나 성 접촉 또는 유사 성행위 제공, 그리고 성인매체물 접촉 및 감상 등 유해매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2차적 유해요인으로서는 1차적 유해요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과 1차적 유해요인을 매개하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요인으로 밀실(칸막이) 등 개인 및 소집단 단위 영업, 심야 또는 24시간 영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성에 의한接客서비스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청소년 유해업소 이론적 분류모형과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분석 결과는 1차적 유해요인인 술, 담배,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유해매체 접촉 등 4종과 2차적 유해요인인 밀실(칸막이), 심야영업(24시간영업 포함), 이성接客서비스 등 3종이 유해업소의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유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7종 유해요인을 대상으로 개별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유해성을 제시한 결과 평균 4.6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위에 제시된 7종 유해요인에 대한 청소년 문제 유발가능성(접근성, 이용도, 유해강도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별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유해등급화가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 유해업소별 유해요인 포함정도

구 분	업소종류	1차적 유해요인				2차적 유해요인			종합 건수
		유해 약물	유해 물건	유해 매체	유해 행위	밀실	심야 영업	접 객 서비스	
1	단란주점	1		1	1	1	1	1	7
2	유흥주점	1		1	1	1	1	1	6
3	비디오감상실업			1	1	1	1		4
4	노래연습장	1		1	1	1	1	1	6
5	무도학원업					-			-
6	무도장업					-			-
7	사행행위영업		1				1		2
8	음성대화(성인폰팅 업소-전화방)	1			1	1	1		4
9	화상대화	1		1	1	1			4
10	퇴폐적안마 (안마시술소)	1	1		1	1	1	1	6
11	티켓다방(남여)				1		1	1	3
12	소주방	1				1	1	1	4
13	호프	1				1	1	1	4
14	카페	1			1	1	1	1	5
15	숙박업(여인숙)			1		1	1	1	4
16	이용업	1			1	1	1	1	5
17	비디오몰소극장업	1		1	1	1	1	1	6
18	만화대여업 (만화방)			1			1		2
19	인터넷게임시설제 공업(PC방)	1		1	1	1	1		5
20	증기탕	1			1	1	1	1	5
21	영화상영관			1			1		2
22	프리존			1	1	1	1	1	5

23	대딸방	1	1		1	1	1	1	6
24	유리방	1		1	1	1	1	1	6
25	남성전용뷰티샵	1			1	1	1	1	5
26	성인 PC 체험방	1		1	1	1	1	1	6
27	누드바	1			1		1	1	4
28	멀티방	1		1	1	1	1	1	6
29	호래방	1		1	1	1	1	1	6
30	인형체험방		1	1	1	1	1		5
31	플스텔	1		1	1	1	1		5
32	페티시클럽	1	1	1	1	1	1	1	7
33	핑크살롱	1			1	1	1	1	5
34	비키니이발소	1	1		1	1	1	1	6
35	여성전용 애무방	1			1	1	1	1	5
36	에인대행 알바 (신중 보도방)				1		1	1	3
37	스트립방	1			1	1	1		4
38	여관바리업	1		1	1	1	1	1	6
39	여성전용증기탕	1			1	1	1	1	5
40	누드카페	1			1		1	1	4
41	보도방				1		1	1	3
42	호스트바	1			1	1	1	1	5
43	나이트클럽	1			1	1	1	1	5
44	성인 전용 비디오방	1			1	1	1	1	5
45	남성전용 휴게텔	1		1	1	1	1	1	6
업소평균 유해요인 보유수준									4.6

넷째, 일본사례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는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공안위원회 운영과 조직,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법, 그리고 지방중심의 청소년문제심의회의 운영과 그 내용 및 지방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문과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한다.

1) 신종·변종 유해업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류기준 마련

본 연구결과에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상의 분류기준인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행위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의 분류 기준은 변화하는 청소년 주변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해업소의 유해등급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출입/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유해업소의 등급화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유용화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유해요인의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 즉, 유해요인항목과 청소년문제유발 가능성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며, 주관부서인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위의 분류유형과 판단기준을 통하여 신종·변종 및 청소년생활환경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심의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2) 신종유해업소에 대한 제도적 체계 구축

위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업소의 유해정도를 심의, 의결, 고시할 가칭 ‘유해업소 심의위원회’를 국가차원에서 운영토록 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제시되듯이 민간전문가와 기관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유해업소에 대해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점검사항이 위생, 소방, 건축, 전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유

해행위에 대한 심의 및 단속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위의 연구 결과와 추가 연구를 청소년보호법에 중앙 및 지방의 청소년업무담당자가 청소년유해성을 판단하여 이를 단속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의 1차적 유해요인과 2차적 유해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그 유해성을 판단하고 이것의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을 심의 판단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생활구역(학교정화구역, 주거지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등록 금지 및 취소 방안 마련

본 연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등급화 함으로써 청소년 생활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유해업소의 유해수준과 유해등급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별 청소년 유해업소의 허가·등록 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4)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제 실시

본 연구 결과 유해업소의 유해관련 영업행위나 청소년의 이용접근이 대부분 심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소주방, 호프집, 여관, PC방, 노래방등에서 심야업소의 경우 대부분 유해물질이나 유해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야간 10시이후와 12시이후부터 오전 5시 또는 6시까지 청소년통행금지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시 청소년은 물론 부모도 청소년보호감독 소홀에 따른 교육 및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5) 성인업소와 청소년(가족)이용 업소의 구분 필요

본 연구결과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등은 공간분할을 통하여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실질적으로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가족) 전용업소와 성인 전용 업소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5년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김 민,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인지도 조사연구,” 주성 대학 논문집(주성대학) 제8집, 1999. 12.
- 김광목,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공법적 연구, 연구보고 2000-20,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 김문조·이성식,(1994.12), “유해업소와 청소년 비행,” 민족문화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27호.
- 김영한·이명진·이승현(2005),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연구Ⅲ,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이춘화·서정아(200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옥경·양윤선,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경희행정논총(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2권 제1호, 1999. 2.
- 김준호(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 제3권.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1995).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 제3권.
- 김진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실태 및 평가,” 동의논집(동의대학교) 제40집 인문·사회과학편(Ⅱ), 2004. 2.
- 김형청,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풍속영업에 대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공안행정학회) 제7호, 1998. 11.
- 도종수·이광호·임상숙·김영아(1991)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 박선규(2002).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형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우·김용학·권장희·조명현(1997).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 및 대책등에 관한 연구.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 신명희(2002). 한국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과 교육적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 연구소. 한·일교육문제세미나. pp. 93-148.
- 신미식(2000). 10대 여자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관한 연구, 주성대학 論文集 9, pp.231-243
- 유진이 외(2005).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경제인문사회 협동연구 총서(05-16-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강효(2000). 청소년 유해환경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1992). “청소년유해환경과 규제의 정당성” . 한국청소년연구, 제9호, 193-207.
- 이기숙·김수연(1999).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인지수준과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연구 6(1), 49-71.
- 이민희 외 2인(2004).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II,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조(1997).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화·윤옥경(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성택·김혜진(200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대양(1997). “한국 소년경찰의 활성화 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호, p.27.
- 전대양, “한국 소년경찰의 활성화 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호, 1997, p. 27.

- 전혁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유해환경 감시,” 수사연구(수사연구사) 제218호, 2001. 12.
- 차훈진(2004).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보호백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보호법해설.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선진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청소년보호법 해설집, 청소년보호 2004-09
- 최인섭·강석구·김혜경(2005).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경제·인문사회 협동연구 총서(05-16-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학 용어집.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편(2004), 청소년환경론, 서울: 교육과학사.
- Amodei, N. & Scott, A.(2002). Psychologists'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 Vol. 39, pp. 511-526.
- Anderson J. K.(2001).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 50, No. 1, pp. 21-26.
- Farrington, D. P(1999), Implications of criminal career research for the prevention of offending. *Journal of Adolescence*, 13, 93-113.
- Bonanno, G. A.(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9, pp. 20-28.
- Corder, B. E.(1990). A pilot study for a structured, time-limited

therapy group for sexually abused pre-adolescent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14, 243-251.

Moore, M.R. & Chase-Lansdale, P.L.(2001). Sexual intercourse and pregnancy among african american girls in high-poverty neighborhoods: The role of family and perceived community environ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3, 1146-1158.

Myles, S. B., & Simpson, L. R.(1998). Aggression and Violence By School-Age Children and Youth: Understanding the Aggression Cycle and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Vol. 33, No. 5, p. 259-264.

西村芳秀(2004) . 「 「出会い系サイト」 をめぐる現状と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爲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の概要について」 『警察學論集』 第57卷第5号.

松井茂記(2004) 「青少年健全育成基本法案」 『法律時報』 76-9号
(2004) / 園田壽 「コミック性表現と刑法175條」 『法律時報』 76-9号.

田宮裕(2001). 横瀬健二 『注釋少年法「改正版」』 有斐閣.

鮎川潤(2002). 『新版少年非行社會學』 世界思想社.

『青少年白書』 2002年版

『青少年と有害環境』 (社) 青少年育成國民會議

小野政博 (1985) 「風俗營業等取締法一部改正の概要」 『警察公論』 39-12 (1984)

總理府青少年對策本部(1984) 『青少年保護育成條例の現状等について -青少年保護育成條例研究會調查研究報告書-』

久世公壺(1967) 「青少年保護育成條例と表現の自由」 『ジュリスト』 378号

- 藤本哲也(1993) 『刑事政策20講』 青林書院
- 東京都 (2002) 『東京都青少年の健全な育成に関する条例の解説』
- 奥平康弘 (1981) 「青少年保護条例の沿革」 『青少年保護条例・公安
条例』 學陽書房
- 高須一弘(2001)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の経緯及び概要」 警察學論集』 54-11
- 加藤伸宏・佐野裕子(2001)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
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逐條解説」 『警察學論集』
54-11
- 屋久哲夫・鈴木達也・長村順也(2006)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
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制定について」
『警察學論集』 59-4
- 鈴木達也(2006)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
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ジュリスト』 1306
- 内山純子(1986) 「有害環境と少年非行(一) -青少年保護育成條例に見
る有害性の概念-」 『警察研究』 57-11
- 清水英夫=秋吉健次 (1997) 「青少年保護育成條例の役割と今後の展
望」 『月刊自治フォーラム』 449号17
- 右崎正博(2004) 「青少年保護條例の過去・現在・未来」 『法律時報』
第76卷 第9号
- 「風俗営業等にかかわる人身取引を防止し、性風俗關連特殊營業の禁
止地域營業、ビラ配布行爲等の規制を強化するための法改正」
『時の法令』 1761 (2006)
- 園田壽 (2004) 「コミック性表現と刑法175條」 『法律時報』 76-9号
- 内閣府政策統括官(總合企畫調整担当) (2002) 『「青少年を取り巻く環
境の整備に關する指針-情報化社會の進展に對応して-」 に基づ
く取組等の實施狀況について』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강경래 강원도립대학 해양경찰과 교수

◆ 자 문 진 ◆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천상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장

유진이 팽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문성준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김동철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관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 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산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 지표 결과부문 / 김산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규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해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a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07

신중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신중 및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02)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95-9(93330)